

연구보고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이유진

공동연구원

이창훈 강지명

IN

Y

P

II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창훈(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이상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관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관계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피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피해학생의 용서를 통한 가해학생의 치료,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회복적 정의모형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을 개발하였고, 학교차원에서의 도입방안과 사법절차에서의 도입방안,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육부 및 사법기관 관계자와 학교폭력 및 회복적 정의 관련 현장전문가, 공동연구자로 수고해 주신 이창훈 교수님, 강지명 박사님과 그 외 자문위원 및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담당한 이유진 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피해학생의 용서를 통한 가해학생의 치료,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회복적 정의모형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을 개발해 제안하고, 학교차원에서의 도입방안과 사법절차에서의 도입방안,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델파이조사 방식의 전문가 의견조사(1차조사 28명, 2차조사 26명)와 심층면담(8명)을 실시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행 제도 중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순서는 또래조정, 화해권고, 형사조정, 분쟁조정,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특별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 중에서는 화해권고가 가장 회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 적용을 확대해야 하고, 소년사법절차의 가해학생은 가정환경 등 전제조건이 회복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 학교내 대응체계 중에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인데, 모든 학교폭력사건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회복적 처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학교로부터 독립된 중재기구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 조치결정과 연동하여 불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회복적 정의모형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중재센터 설립이 필요하고, 갈등해결 등 조정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예방법에 예산수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심층면담 결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은 상담교사가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의 대화모임에서 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사건 발생 초기에 상담교사가 인지함으로써 가피해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있었고, 가피해학생 모두 갈등 없이 지금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은 상담교사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양쪽 모두 대화의 시간에는 화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치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이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상담교사의 조정이 자치위원회 심의보다 회복적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으로써 제시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목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상처,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대상별로 가해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반성과 사과 및 원인치료'이고, 피해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용서와 치유 및 피해회복'이며, 이들을 둘러싼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표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목표는 '안전한 환경조성'이다. 이러한 대상별 목표를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이라는 회복적 정의모델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둘째, 학교차원의 도입방안으로써 예방활동 단계에서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빈도를 늘리고, 학생 자치활동의 기본교육 내용에 회복적 갈등해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갈등조정 단계에서는 또래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담임종결사안을 확대하고, 또래조정의 전면 확대를 위해 '또래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조정 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 조치결정 단계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조치인 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을 철회하고, 가해학생 조치와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의 회복적 운영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회복적 생활지도를 병행해야 하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담임 및 상담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사법절차상의 도입방안으로써 경찰 단계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회복적 훈방' 제도를 도입하고, 촉범소년에 대해 회복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대상사건에 학교폭력 사안을 확대 적용하고, '회복적 기소유예'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법원 단계에서는 화해권고에 따라 화해가 되면 학교 자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결정을 면제하고,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은 '사법형 그룹홈'을 설립해 가해학생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 교정 단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관찰을 통해 회복적 절차에 따른 협의결과 이행을 감독하고,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가해학생에 대해 회복적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써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회복적 지원기구인 지역중심 '갈등중재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조정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통일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회복적 정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연구목적

-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음.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학생의 자살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그 동안의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2012년에 수립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과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13년에 수립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에서도 엄벌주의와 분리주의 정책기조는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음.
- 하지만 엄벌주의와 분리주의 정책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학교폭력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피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이 되어야 함. 따라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이 회복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사법기관 모두 회복적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회복적 정의모델의 적용에 소극적임. 둘째, 관계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이 회복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해학생의 원인치료를 통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회복적 선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응보적 처벌에 치우쳐 있음. 셋째, 포괄조정이나 분쟁조정과 같이 회복적 관점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정의 결과가 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나 사법기관의 처분결정과 연동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들의 연계를 도와줄 허브기관도 없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회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넷째, 회복적 정의는 사건발생 초기에 개입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현재의 소년사법은 마지막 단계인 소년심판에서만 화해권고를 하고 있어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필요성 및 문제의식에 따라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피해학생의 용서를 통한 가해학생의 치료,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회복적 정의모형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을 개발해 제안하고, 학교차원에서의 도입방안과 사법절차에서의 도입방안,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1)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은 학교폭력이나 갈등해결 관련 전문가임. 교육분야 12명, 사법분야 6명, 민간분야 12명, 총 2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교육분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및 교장, 교육부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법분야는 경찰, 검사, 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분야는 비영리단체의 갈등해결 및 회복적 정의 관련 전문가와 대학 및 연구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가 의견조사는 2차에 걸쳐 델파이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루어졌음. 2차 조사는 1차조사를 토대로 구성한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루어졌음. 1차조사에 참여했던 28명 중에 26명이 2차조사에도 참여했음.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통화나 심층면담을 통해 보완하였음. 수집된 자료는 1차조사 결과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했고, 2차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SPSS/WIN(ver.20.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했음.

2) 심층면담

- 심층면담의 대상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4명, 가피해 학생의 부모 2명, 또래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1명,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교사 1명 등 8명임. 화해를 통해 관계가 회복된 사건과 회복되지 못한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모두

같은 학교에서 대상자를 섭외하였고, 갈등의 내용도 비슷한 사안을 선정하였음.

- 조사는 2014년 10월 중에 1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대상자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음.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음.

3. 주요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또래조정(61.5%), 화해권고(60.0%), 형사조정(41.7%), 분쟁조정(34.6%),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특별교육(26.9%)의 순으로 회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회복적 또래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등당사자의 적극적 참여와 조정자 및 지도교사의 역량 등 관계자 모두의 역동성이 중요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또래조정 결과를 토대로 사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회복적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처리의 절차적인 합리성보다는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고,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며, 특히 가해학생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동기부여가 되려면 조정결과가 조치결과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가해학생 조치가 회복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이러한 반성이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프로그램은 서면사과나 봉사 및 특별교육 내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회복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회복적인 형사조정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이미 당사자 간에 감정을 많이 다친 상태에서는 회복적 형사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 경우에는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 중에서는 화해권고가 가장 회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경찰단계, 소년형사사건, 당사자 신청사건 등 여러가지 절차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화해권고가 실효성이 있으면 가해학생의 가정환경 등 전제조건이 회복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행 학교내 대응체계 중에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음. 모든 학교폭력사건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회복적 처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따라서 학교로부터 독립된 중재기구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 조치결과와 연동하여 불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에 개입하여 회복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굳이 사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고,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결과를 사법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단계에서부터 회복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 회복적 정의 실무유형 중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로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는 확장론(66.7%)이 순수론(33.3%)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얻었음.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는 상담, 코칭, 중재, 조정, 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54.2%),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25%) 등 회복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79.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와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됨.
- “회복적 정의” 라는 용어가 사법적 개념이라 학교내 처리절차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학교내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를 알아본 결과, 회복적 갈등해결(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우관계회복(12.0%), 관계회복 절차(10.7%), 회복적생활교육(10.7%) 등에 관한 의견이 많았음.
- 전문가들은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시설 인프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중재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인력 확충방안은 갈등해결 등 조정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방안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예산수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한편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을 거점으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등 소규모 단위의 지역 중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2) 심층면담 결과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어떠한 절차로 대처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탐색하기 위해 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내용의 사건 2건을 담당교사로부터

추천받아 각 사건의 당사자들과 담당교사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여 차이점을 비교해보았음.

-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은 상담교사가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의 대화모임에서 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졌음. 사건 발생 초기에 상담교사가 인지함으로써 가피해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있었음. 가피해학생 모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 없이 지금 정도라도 지낼 수 있는 것은 상담교사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양쪽 모두 대화의 시간에는 화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치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이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함. 이러한 평가는 당사자 모두가 일치하고 있음. 가해학생은 징계를 받고 학급교체까지 되었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굳이 화해하고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졌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사과를 한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가해학생의 어머니는 피해학생도 1학기에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으면서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지나치게 강경했다고 서운해 하였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자치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딸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 상급기관에 고발을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다고 함.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부모 모두 자치위원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또래조정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임. 결과적으로 상담교사의 조정이 자치위원회 심의보다 회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줌.

4. 정책제언

1)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의 목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상처,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 대상별로 가해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반성과 사과 및 원인치료’이고, 피해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용서와 치유 및 피해회복’이며, 이들을 둘러싼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표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는 ‘안전한 환경조성’임. 이러한 대상별 목표를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이라는 회복적 정의모델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

- 회복적 정의모델의 적용 방법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갈등해결을 위해 개입하고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임. 그리고 갈등해결의 과정은 교사의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대화를 통해 화해의 결과를 도출해나가야 함.
- 학교폭력을 해결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의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회복적 정의를 좁은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확장론의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램 유형 역시 한가지로 제한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담당기관의 특성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프로그램과 서클프로그램, 피해자-가해자 조정, 가족집단협의, 또는 새로운 어떤 유형이라도 회복적 정의의 목표인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학교폭력 처리단계에서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 예방단계에서부터 학교에서의 처리단계, 사법절차 및 교정 단계까지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등 모든 기관들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점과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학교차원의 도입방안

(1) 예방활동 단계

- 회복적 정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기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내면화되어 생활습관으로 굳어짐으로써 평소에 평화적인 갈등해결이 가능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기별 1회 이상’ 규정은 최소기준으로 보아야함. 따라서 적어도 한달에 1회 또는 학급회의 때마다 짧은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회복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학급 단위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어야 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인 토래조정을 비롯해 토래상담, 자치법정, 블루밴드 등의 기본교육으로 회복적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갈등해결과 의사소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교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갈등조정 단계

- 지난 3년간 또래조정 시범실시로 인해 조정과 화해의 가치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가 회복적인 절차로써 실효성을 가지려면 또래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담임종결사안’을 확대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래조정은 특별교부금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중단될 상황임. 또래조정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교육청에 따라 시행학교의 양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든 학교가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래조정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래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중앙센터와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각 학교에 대한 컨설팅과 교사연수 및 학생교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의 결과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조치 없음’이나 ‘조치결정 유예’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내에 회복적 정의모델이 정착되려면, 학생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전환하기 위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학교내에 회복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조치결정 단계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피해학생의 화해와 관계회복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회복적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조치인 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재학 중에 중간 삭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면사과의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편지 뿐 아니라 행동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학교 및 사회 봉사 역시 처벌의 목적보다는 공동체의 회복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병행해야 함. 한편 특별교육은 행동수정을 통한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의

효과도 있고,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가해학생 자신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는 관계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회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비록 양당사자의 화해를 위한 제도이더라도 진정한 화해의 관건은 피해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회복적 생활지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가해학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경우 피해학생의 치유효과가 빠르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형식적으로 사과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피해자에 대해 무신경해 지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함.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담임 및 상담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하나로 '학급교체'가 있는데, 2012년 개정에서 전학권고를 삭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학급교체는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음.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급교체를 원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급교체를 시행하면 될 것임.

3) 사법절차상의 도입방안

(1) 경찰 단계

-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져 회복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건발생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초기개입 기관인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년법을 개정하여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훈방할 수 있도록 '회복적 훈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촉법소년에 대해 적절한 처우를 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이 초범이고 경미한 범죄라서 소년사건 처리실무 관행에 따라 훈방조치했기 때문이므로 회복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비행소년에서 건강한 소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2) 검찰 단계

- 범죄피해자보호법 상의 형사조정 대상사건에는 신체적 폭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운영체계를 회복적 절차로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절차를 신설하고, 가해자의 합의이행을

위한 소송지원이나 가중처벌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회복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경찰 단계의 회복적 훈방과 같은 맥락에서 ‘회복적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제49조3 조건부 기소유예 규정에 ‘화해조정 참여’와 같은 회복적 조건을 신설하거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회복적 조정자로 양성하거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의 운영을 회복적 정의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회복적 상담이나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법원 단계

- 소년법 상의 화해권고에 따라 법원에서 화해가 되어도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별도로 이루어져 화해를 위한 자발적 동기부여에 장애가 됨. 따라서 화해가 되면 자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결정을 면제하고, 조치결정이 집행된 이후라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회복적 화해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행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장기간의 관리지원이 필요함.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 회복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으므로 화해권고를 위해서는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은 ‘사법형 그룹홈’을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산하에 확충해 대안가정을 마련해주어야 함.

(4) 교정단계

- 가해학생이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복적 절차에 따른 협의결과를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불이행시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가해학생에 대해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써의 회복적 대화모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 개입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가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알게 됨으로써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반성은 회복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귀에 효과적일 수 있음.

(5)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회복 강화

- 소년사법은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소년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형사사법보다 더욱 피해자에 대한 소외현상을 낳고 있음. 소년사법은 역할범위를 가해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이를 위한 공동체의 구축까지 포섭해야 함.

4) 지원체계 구축방안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복적 지원을 담당할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회복적 지원기구인 지역중심갈등중재센터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첫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하는 기구이고 학부모와 학생생활지도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중립성에 한계가 있어 분쟁조정까지 함께 담당한다는 것은 또다른 갈등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둘째, 학교폭력에서 화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규명이 안 되기 때문이므로 사실규명과 함께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재기관이 필요함. 셋째, 학교절차와 사법절차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호 정보공유나 결정사항의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와 사법기관을 연계해줄 허브기관이 필요함.
- 학교가 학교폭력 발생시 갈등중재센터에 분쟁조정을 의뢰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조문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4항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학교폭력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년법에도 경찰과 검사, 판사가 화해를 위해 조정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폭력 회복적 지원기구 설립법’의 제정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회복적 정의모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정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갈등해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양성한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해 교육지원청별로 30-50개 학교당 1명씩 조정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국고예산을 책정하여 기본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안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학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함.

-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열린 형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특히 형사조정이나 화해권고와 같이 외부위원 위촉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일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회복적 정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회복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회복적 정의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의 진정한 철학적 목적과 이론적 내용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국내에 회복적 정의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의 주체,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복적 정의에 관한 종합적 고찰을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5
4.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7
1. 개념	9
1) 학교폭력의 개념	9
2) 회복적 정의의 개념	14
2. 회복적 정의의 실무유형	17
1)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17
2) 공동체 참여여부에 따른 분류	18
3)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류	20
4) 회복적 정의 실무의 운용영역	23
3. 회복적 정의의 관계자	24
1) 가해자	24
2) 피해자	24
3) 공동체	25
4.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26
III.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	29
1.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관련 정책현황	31
1)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회복적 정의	31
2)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35
3)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관련 제도	39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분석	46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7
2) 범죄피해자보호법	55
3) 소년법	57
IV. 외국사례	59
1. 호주	61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61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62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63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64
5) 우수사례	64
6) 요약 및 시사점	66
2. 뉴질랜드	68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68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68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70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72
5) 우수사례	72
6) 요약 및 시사점	75
3. 미국	77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77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80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81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83
5) 우수사례	84
6) 요약 및 시사점	85

4. 영국	87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87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89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89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91
5) 우수사례	91
6) 요약 및 시사점	92
5. 독일	93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93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94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97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103
5) 우수사례	104
6) 요약 및 시사점	106
6. 외국사례의 종합비교	107
V.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조사	109
1. 조사개요	111
1) 전문가 의견조사	111
2) 심층면담	113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15
1) 1차조사 결과분석	115
2) 2차조사 결과분석	162
3. 심층면담 결과분석	196
1) 사건 1 : 상담교사의 조정을 통해 종결된 사건	196
2) 사건 2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된 사건	199
3) 소결	204

Ⅵ.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모델 도입방안	205
1.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207
1)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의 목표	207
2) 회복적 정의모델의 적용 방법	208
3) 학교폭력 해결모델로서의 회복적 실무유형	209
4)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단계	210
5) 개념 및 용어의 정립	213
2. 학교차원의 도입방안	214
1) 예방활동 단계	214
2) 갈등조정 단계	216
3) 조치결정 단계	225
3. 사법절차상의 도입방안	231
1) 경찰 단계	232
2) 검찰 단계	233
3) 법원 및 교정 단계	236
4. 지원체계 구축방안	241
1) 지원인프라 구축방안	241
2) 사회적 인식도 제고 및 저변 확대	246
참 고 문 헌	251
부 록	261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1차 조사)	263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2차 조사)	271
부록 3 심층면담 조사지	290
부록 4 회복적 정의 관련 프로그램	293
부록 5 독일의 가해자-피해자 조정일지	300

표 목 차

표 II-1-1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비교	16
표 III-1-1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현황	35
표 III-1-2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37
표 III-1-3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38
표 III-1-4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	38
표 IV-3-1	균형적 및 회복적 정의의 원칙	79
표 IV-3-2	회복적 정의 유형별 프로그램	81
표 IV-5-1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의 주체	104
표 IV-6-1	각국의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 비교	107
표 V-1-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112
표 V-1-2	심층면담 대상자의 특성	114
표 V-2-1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163
표 V-2-2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164
표 V-2-3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165
표 V-2-4	회복적 분쟁조정에 성공한 요인	166
표 V-2-5	회복적 분쟁조정에 실패한 요인	166
표 V-2-6	또래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168
표 V-2-7	또래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168
표 V-2-8	또래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169
표 V-2-9	회복적 또래조정에 성공한 요인	169
표 V-2-10	회복적 또래조정에 실패한 요인	170
표 V-2-11	서면사과봉사교육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171
표 V-2-12	서면사과봉사교육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171
표 V-2-13	서면사과봉사교육 조치의 개선방안 중요도	172
표 V-2-14	회복적 서면사과봉사교육에 성공한 요인	173
표 V-2-15	회복적 서면사과봉사교육에 실패한 요인	173
표 V-2-16	형사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174

표 V-2-17 형사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175
표 V-2-18 형사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176
표 V-2-19 회복적 형사조정에 성공한 요인	176
표 V-2-20 회복적 형사조정에 실패한 요인	177
표 V-2-21 화해권고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178
표 V-2-22 화해권고가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178
표 V-2-23 화해권고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179
표 V-2-24 회복적 화해권고에 성공한 요인	180
표 V-2-25 회복적 화해권고에 실패한 요인	180
표 V-2-26 학교내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중요도	182
표 V-2-27 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 중요도	183
표 V-2-28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	184
표 V-2-29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단계	184
표 V-2-30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	186
표 V-2-31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187
표 V-2-32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 도입 필요성	188
표 V-2-33 미국, 영국의 제도 도입 필요성	189
표 V-2-34 독일의 제도 도입 필요성	189
표 V-2-35 시설 구축방안 중요도	190
표 V-2-36 인력 확충방안 중요도	191
표 V-2-37 예산 확보방안 중요도	192
표 V-2-38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정방안 중요도	192
표 V-2-39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중요도	193
표 V-2-40 학교절차와 사법절차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194
표 V-2-41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195
표 V-2-42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 중요도	196

그림목차

그림 I-2-1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	6
그림 III-1-1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흐름도	32
그림 III-1-2 사법기관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흐름도	34
그림 III-1-3 회복적 정의 실무의 회복적 정도	40
그림 IV-1-1 청소년 사법 회의(Youth Justice Conferencing)의 주요 단계	65
그림 IV-1-2 청소년 사법 회의(Youth Justice Conference) 좌석 배치도	67
그림 IV-2-1 왕거누이 지역사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전환절차	75
그림 V-2-1 분쟁조정의 회복적 제도 여부	162
그림 V-2-2 또래조정의 회복적 제도 여부	167
그림 V-2-3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회복적 제도 여부	171
그림 V-2-4 형사조정의 회복적 제도 여부	174
그림 V-2-5 화해권고의 회복적 제도 여부	177
그림 V-2-6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해결모델	185
그림 V-2-7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해결모델	186
그림 VI-1-1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대상과 목표	208
그림 VI-1-2 교사의 엄격성과 관심도에 따른 학교폭력 해결모델	209
그림 VI-1-3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모델의 도입단계 흐름도	211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자살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 동안의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2012년에 수립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과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13년에 수립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에서도 엄벌주의와 분리주의 정책기조는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방향은 가해학생에 대한 온정주의가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벌주의와 분리주의 정책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해학생을 엄벌하거나 격리한다고 해서 피해학생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 중심의 대응을 하다보면 피해학생의 치유와 피해회복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데, 피해학생의 치유는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반성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처벌의 피해자로 생각하게 되고 원망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가해학생의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들 역시 피해자이다. 따라서 이들도 피해학생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데,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서만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다(이유진, 2012: 59).

뿐만 아니라 가해-피해 학생의 주변 관계자들은 법이나 제도라는 비인격적인 처리절차에 학교폭력 사건을 맡겨놓음으로써 자신들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학교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회피하게 된다.

1) 제1장은 이유진이 집필하였음.

학교폭력은 관계성과 지속성, 공개성, 집단성의 특성²⁾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므로 학교폭력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피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주디 H. 물렛, 2011: 6, 10).

현재 학교폭력에 대해 회복적 정의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분쟁조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형사조정, 소년법의 화해권고가 있고,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 또래조정과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폭력은 그다지 회복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회복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사법기관 모두 회복적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회복적 정의모델의 적용에 소극적이다. 둘째, 관계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이 회복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해학생의 문제 원인을 치료하여 피해학생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회복적 선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응보적 처벌에 치우쳐 있다. 셋째, 또래조정이나 분쟁조정과 같이 회복적 관점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정의 결과가 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나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들의 연계를 도와줄 허브기관도 없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회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회복적 정의는 사건발생 초기에 개입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현재의 소년사법은 마지막 단계인 소년심판에서만 화해권고를 하고 있어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필요성 및 문제의식에 따라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피해학생의 용서를 통한 가해학생의 치료,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수

2) 관계성이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이고, 지속성은 매일 반복되는 특성이며, 공개성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고, 집단성은 가해가 집단적인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동조자나 방관자가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말한다.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을 개발해 제안하고, 학교차원에서의 도입방안과 사법절차에서의 도입방안,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추진체계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1단계 실행계획	자료수집 분석	1-2월	○ 선행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실행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2월	○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서 제출
	연구자회의 개최	3월	○ 연구진 회의
	문헌연구	3-5월	○ 이론적 배경 ○ 정책현황 ○ 외국사례
	조사계획 수립	5월	○ 조사계획 수립
↓			
2단계 중간보고 및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제출	6월	○ 중간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서 제출
	조사도구 개발	6월	○ 조사도구 개발 ○ 연구진 회의(수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8월-10월	○ 교사 등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1차 개방형, 2차 선택형 조사 실시
	심층면담 실시	10월	○ 가피해 청소년 및 학부모 심층면담 실시 ○ 상담교사 및 학교폭력 전담교사 심층면담 실시
↓			
3단계 최종보고 및 인쇄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0월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심층면담 결과 분석
	정책협의회 개최	11월	○ 연구결과 검토 및 정책대안 모색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제안
	최종보고서 인쇄	12월	○ 보완 및 최종보고서 인쇄

【그림 I-2-1】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

3. 연구내용

첫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유형을 탐색한다.

둘째,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책의 현황과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독일 등 학교폭력 해결모델로써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가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수집해 분석한다.

넷째,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복적 정의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학교폭력 해결모형을 제시하고, 학교차원 및 사법절차 상의 적용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4.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로서 학교폭력 및 회복적 정의모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및 공식 통계자료 등을 분석한다. 또한 외국의 관련 정책과 입법례 등에 관한 문헌자료를 살펴본다.

둘째, 조사연구³⁾로서 델파이조사와 심층면담을 사용한다. 먼저 전문가 의견조사로써 델파이조사방법을 사용해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실제 사례와 이해 관계자들의 욕구 및 문제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이 외에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문제점 및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을 받는다.

3)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4장 제1절 조사개요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1. 개념
2. 회복적 정의의 실무유형
3. 회복적 정의의 관계자
4.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제 II 장 이론적 배경⁴⁾

1. 개념

1) 학교폭력의 개념

(1) 개관

학교폭력의 개념은 연구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내연구진은 학교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신체적·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행동”(권이중, 1996: 13), “학교 내·외에서 서로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생들 간의 신체·물리적, 심리적, 및 언어적 공격행위”(조성호, 2000: 49), “학교교내, 주변, 등하교길, 집 주변, 학원 주변 등 물리적 장소는 물론이고 교육과 관련된 장소 및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학생에게 행사한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유무형의 모든 폭력”(김준호, 2006: 33) 등으로 개념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약칭)의 제정이 후 국내 학교폭력의 개념은 법률상의 학교폭력 정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정의는 현재 국가의 개입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개입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학교폭력 개념정의 분석 과정은 현행 학교폭력의 법률적 개념 정의가 현실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 개입의 범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2장은 강지명이 집필하였음.

(2)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가. 2004년 제정 당시 학교폭력예방법

2004년 제정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 개념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였다. 제정당시 시행령에 의하면 제2조에 정의된 학교폭력의 종류에는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라고 규정되었다.

학교폭력의 개념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만 포함되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었던 특징이 있었다. 학생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조기입학을 고려한다면 적용연령의 하한은 만5세이며 상한은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⁵⁾

나. 2008년 법률개정: 시행령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문구삭제

2008년 3월 14일 전부개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동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범주에 성폭력이 추가되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라는 규정을 통해서 사이버세계에서의 폭력행위도 포함되었다.

가해학생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여,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들인다면 학교폭력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법 시각은 개정과정에서 삭제 되었다.

5) 만6세에 도달하는 해의 초등 1학년으로 조기입학할 수 있으므로 12월 말일생인 경우 초등1학년 생활의 대부분을 만5세에 다니게 된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한 연령이 없으며 입학연령상한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다. 2012년 일부개정법률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1월 26일 일부개정 과정도 가해행위의 추가가 주된 내용이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강제적인 심부름' 행위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따돌림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마련하였다. 동법 제1의2에 규정된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과정을 통해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학생 간의 행위로 규정하였던 학교폭력 개념 규정은 '학생을 대상으로'로 수정되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사이버따돌림의 경우에는 가피해자 모두 학생이어야한다. 동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학교폭력개념과 학교폭력대응정책의 문제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정의는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행 학교폭력의 법률적 개념 정의가 현실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 개입의 범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행 법률상 학교폭력은 가해행위를 중심으로 기술되어있고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범위가 설정된다. 즉, 교육기관의 개입범위와 정도가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지원과 보호받게 개정되었다는 자체가 가해학생의 가해행위를 중심으로 동 법률과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해행위 중심의 학교폭력 개념정의는 엄벌화 정책의 반영을 위해 가해행위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는 법률의 개정이 이어졌다. 이렇게 가해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행위의 명확한 규정과 그에 따른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지만, 학교폭력의 정의에 '피해자의 의사반영'이라는 제정 당시의 피해자 관점의 시행령내용이 삭제된 것은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반영이라는 내용의 삭제는 학생들 간의 장난을 더 이상 장난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만 5세부터 적용될 법률에서 장난을 장난으로 볼 여지는 없어지고, 징계부과의 과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꼭 시행되어야한다는 옹보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징계절차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부과와 같이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여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한 것이다. 그러니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징계의 범위나 유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엄벌화의 여론에 의해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히는 옹보적인 시각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실무과정에서 더욱더 덧칠이 되었다. 형사사법의 개입을 통한 엄벌화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엄벌화를 적용하려 다보니, 교육기관이 형사사법도 아닌데 '행위책임에 상응하는 옹보'를 통한 선도와 교육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조치의 유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징계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으로 학생의 인권침해를 정당화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의 검토에서 살펴보겠지만 징계조치의 내용은 전학,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이수, 퇴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학이나 교내봉사와 같이 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불가피한 조치이외에도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의 이수와 같이 조치유형의 범위가 형사제재인 보호처분과 중복되어 있다. 이미 형사사법은 소년사법내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형사사법은 소년에 대한 응보적 형벌부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응보적 형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교육적 조치의 도입을 통한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후발 정책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들은 형벌부과의 기본원칙인 응보의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년보호직렬을 마련하여 교육학전공자를 교정기관 인력으로 채용하였고 전국의 소년원을 각급학교로 개편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등 교육적 조치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징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징계를 위한 전문인력의 도입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사에게 집행을 전가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한다고 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인권침해, 아니면 교육적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의결기구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아야한다.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입되지 말아야할 응보적 시각이 교육기관의 학교폭력대응책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실무적으로 만5세에게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이수가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만5세에게도 자신의 행위를 전제로 한 징계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선도와 교육'을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응책으로 삼는 것은 학교폭력대응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폭력대응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한 후, 기존의 제도 및 인프라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학교폭력대응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제도(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징계조치, 분쟁조정)의 목적에 해당하는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학생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내용이 동 제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어야한다.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서 형사사법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복지제도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고, 분쟁조정을 위해서 형사합의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현실은 현행 학교폭력의 개념정의 방식과 정책의 무게중심이 가해학생의 선도에 경도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가해자의 감형과

피해자의 보상금 보전을 위한 형사합의의 범죄해결원리가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대응책의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현황을 직시해야한다. 가해자를 중심으로 가해자에 대한 응보의 과정에서 소외된 피해자의 처우를 보완하기 위한 형사사법의 피해자보호 제도의 도입, 가해자의 감형과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합의와 같이 서로 대립적이며 모순적인 지향점을 지니고 있는 제도들을 그대로 교육현장에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형사사법에서는 이러한 틀이 문제가 있음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모색된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학교폭력 대응책에서는 ‘처벌과 보호, 합의’로 대변되는 과거지향적 응보원리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운영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의 보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구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념이 ‘회복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학문적 분과에서 연구되고 있다.

회복적 정의의 도입은 전면적인 수정과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징계조치, 분쟁조정’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구조를 지향점만 바꾸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원칙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도 각각의 제도가 대립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이라는 하나의 원칙으로 조화롭게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각 제도의 운영원칙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징계조치, 분쟁조정’의 방향성이 재정립될 수 있으며 동 제도들의 개입을 위한 국가 기관의 범위와 개입의 정도가 재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회복적 정의의 개념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는 용어에 대해 웰그레이브 등과 같이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정의를 이루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모든 행동(강지명, 2011: 17; Lode Walgrave, 2000: 255, 재인용)”이라 정의하기도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없다. ‘Restorative justice’는 회복적 정의 또는 회복적 사법정의, 회복적 사법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회복적 정의가 ‘갈등’에서 오는 넓은 의미에서의 피해의 회복을 다룬다면 회복적 사법은 사법기관이 관여할만한, ‘범죄로 인한 갈등’에서 오는 피해의 회복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다루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Restorative justic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갈등만을 다루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을 형법상의 '범죄로 인한 갈등'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사법기관이 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실무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회복적 정의는 1977년 알버트 애글래쉬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Lode Walgrave 2004: 543). 하지만 그 때는 일반적으로 '회복적 정의'가 통용어는 아니었고, 1985년 하워드 제어가 '피해자-가해자-화해/조정'의 실무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정착되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Carolyn Hole & Richard Young, 2002: 529). 사실, 회복적 정의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relational justice, positive justice, reintegrative justice, transformative justice, reparative justice, satisfying justice, community justice, social justice' 등과 같이 다양하게 있으나(이백철, 2002: 142), 회복적 프로그램의 사용을 권장하는 비엔나 선언에서도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2000년 비엔나에서 열린 제10차 UN 범죄예방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에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비엔나 선언에서도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회복적 정의의 요소인 목적과 결과,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들, 실무에서 강조하는 절차와 프로그램 등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어려움은 회복적 정의가 실무에서 제도로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식이나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창조적 유기체임을 나타낸다. 회복적 정의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되어서는 실체가 파악될 수 없고, 실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동반되어야지만 정의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의 연구자들은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기 보다는 기존의 패러다임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거나 프로그램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워드 제어는 회복적 정의의 핵심원리들에 대해서, 응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형사사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Zehr, 1990: 211).

응보적 정의는 일련의 고통을 부과하여 범죄라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정의관을 기초로 운영되는 사법기관은 문제해결과정에서 범죄자와 국가라는 대적관계를 성립시키고, 결과보다는 규칙과 의미에 더 비중을 두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의 작용과정에서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국가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간의 관계의 문제로 바라본다. 그래서 사법의 작용도 가해자의 피해회복책임과 피해자의 요구를 확인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도록 촉진하고 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법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므로 '피해자의 요구가 충족되고 개인 및 관계의 치유가 어느 정도로 장려되었는가'라는 결과가 중요시된다.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전체 당사자들의 피해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해 피해 당사자가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지 않고 모두 승자가 된다.

표 II-1-1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비교**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문제해결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문제해결
초점	비행행위	관계
범죄에 대한 대응	징계, 형사제재	회복
목적	예방	회복
피해자의 지위	이차적	중심적
사회적 맥락	권위적	민주적
청소년의 반응	분노	책임

*M. Wernham, 2005:125의 표 재구성.

응보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은 '청소년'이 아니라 '나쁜 행위, 금지된 행위인 비행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학교폭력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응법은 교육기관에서의 징계 또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형벌이다.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통해서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학교폭력행위에 대응하는 징계 또는 형벌이 부과되어 징계에 대한 청소년의 반작용은 소위 '나만 꾸중한다'라는 분노로 나타나기 쉽다. 여기서 분노는 '교정시설에서의 구금이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경우 '비행유발적 태도'를 강화하는 '부당한(injustice) 감정'을 가지게 된다(김용우, 2007: 93)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본인이 가해행위를 하였지만 그에 대한 반성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분노를 타나낸다. '나만' 징계나 형사제재를 부과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관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의 관계 회복이 문제해결방법이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게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이다. 본인의 학교폭력행위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징계나 형사제재만으로는 가해학생의 선도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그 단순한 장난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장난으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의 회복을 위한 책임으로써의 노력이 자발적으로 부과되는 문제해결방법이 회복적 정의이다.

2. 회복적 정의의 실무유형

1)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순수론과 확장론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천모델에서, 기존의 응보적 정의를 통한 문제해결방법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립적인 정의개념이다.

먼저 순수론은 절차에 중점을 둔다. 마샬이 제시한 “특정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당사자가 그 범죄가 미친 영향 및 그 범죄가 장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절차”라는 정의가 있다(Marshall, 1996: 37). 이 입장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핵심원리로 ①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 ②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화해의 절차 ③ 사회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들고 있다(이호중, 2004: 501-503).

확장론의 입장에서는 순수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의 정의방법이 회복적 정의의 핵심을 단순한 ‘절차’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핵심원칙인 ‘대화과 대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회복적인 제재들을 회복적 정의에 넣지 않고 있어서 회복적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순수론자들은 회복적 정의조치가 당사자들이 모여서 대화과 대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에 비해서 확장론의 입장은 가해자가 참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서비스의 일부도 회복적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Walgrave, L. 2000: 255). 그래서 확장론자의 회복적 정의의 개념의 너비는 순수론의 입장보다는 더 넓어지게 되고 이런 정의의 방식을 광의의 회복적 정의의 개념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김용세, 2010: 226-227).

순수론자나 확장론자 모두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와 같은 범죄관련 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대화를 통한 합의점 모색과정을 통해 회복적 정의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이호중, 2007:312). 하지만 과정 또는 절차를 강조하는 순수모델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정의개념 자체에는 회복적 정의의 핵심인 피해회복이 언급되지 않는다. 특정범죄의 이해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협력하여 합의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회복적이지 않으면 회복적 정의의 개념에 들어갈 수 없다.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특별예방적 처우거나 가해자에 대한 치료중심적 처우, 가해자에 대한 비난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확장론의 맥락에서는 자발성이 축소될 수도 있다. 결과가 회복적 정의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한다면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는 논리가 허용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절차가 결과에 이르기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 회복적 결과의 실현이라는 결과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의 한 요소인 자발성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회복적 가치체계와 모순되지 않는다(김성돈, 2008: 121-122).”

순수론의 입장이든, 확장론의 입장이든 회복적 정의의 개념정의는 회복적 정의의 핵심원칙에 대해서 공통된 의문을 낳는다. ‘가해행위로 인해 야기된 피해’란 무엇인지, 그 피해를 누가(무엇이)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 피해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결국 이러한 피해, 피해자, 회복, 정의의 달성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Walgrave, L., 2000: 260).

2) 공동체 참여여부에 따른 분류

닐 크리스티는 그의 논문에서 국가가 갈등을 빼앗아갔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가 빼앗아간 대표적인 갈등이 ‘범죄해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해결권의 공동체로의 이양은 공동체만에 의한 범죄의 해결이 아니라 ‘기존의 범죄해결권’을 행사하는 국가사법기관과 공동체의 연계 및 협동을 뜻한다. 범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서 주장된 해결권의 이양요구이지만,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권을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부여해달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참여여부는 타기관의 개입가능성을 의미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은 학교 공동체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노력해야 할 일이다. 학교가 속한 공동체의 개입 필요성은 조성호(2000: 59)가 제시한 학교폭력의 통합적 접근 모형에서도 나타난다. 교육기관이외의 개입가능성은 교육기관과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뜻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가족집단협의, 양형서클, 보상위원회 등이며 가장 낮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참여를 필수전제로

하는 회복적 정의 실무유형을 공동체주의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핵심적 참여자로 참여하고 양자에 대한 권한부여와 피해회복을 위한 치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조정모델들과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는, 공동체주의적 모델들은 공동체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절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와 경찰 등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된 행동계획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을 독려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에게 보상계획이나 사회봉사의 이행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둘째는 조정프로그램이 실무를 기반으로 이론을 발전시킨데 비해서 공동체주의 프로그램은 범죄학이론인 '재통합적 수치심주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호주의 존 브레이스웨이트에 의해서 주장된 것으로 두가지 수치심의 구별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하나는 기존의 응보적 처벌의 패러다임과 연관되는 수치심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적 정의의 가치나 철학과 조화를 이루는 수치심이다. 응보적 정의에 의한 수치심은 범죄자의 인격에 대한 가치절하를 통해서 지울 수 없는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그럼으로써 범죄자는 결국 일탈적 자기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낙인화 과정으로 인해 범죄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되는 낙인이론에서의 수치심이다. 이와는 달리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기초로하는 재통합적 수치심주기는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와 가해자의 상호존중관계가 유지되게 된다. 궁극적으로 수치심을 통해서 사회에서 격리,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재통합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재통합적 수치심주기는 제한된 기간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재통합시키는 일종의 의식으로 마무리되고, 이것은 결국 재범을 억제하는 긍정적 실효성을 내재하게 된다.) 브레이스웨이트의 이러한 이론이 나온 그해 1989년 뉴질랜드는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오늘날 가족집단 협의라고 불리우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하였다.⁶⁾ 그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의 와가와가타운에 경찰주도의 소년경고 프로그램이 실험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뉴질랜드의 동법률과 브레이스웨이트의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⁷⁾ 뿐만 아니라 영국 테임즈밸리의 경찰에 의해 실험되었던 '회복적 경고' 프로그램도 이 이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Goody, 2005: 200). 1995년 이래 미국의 많은 주에서 약물범죄,

6) 가족집단협회가 등장함과 동시에 브레이스웨이트는 '재통합적 수치심주기'에 관한 그의 아이디어가 협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응답이라고 소개하였다.

7) 뉴질랜드에서는 협의를 소집하고 주선하는 책임자가 사회복지부에 의해 고용된 소년사법 코디네이터이지만 와가와가에서는 이 역할이 경찰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물과손범죄, 절도, 방화, 경미한 폭행, 아동학대, 유기 등과 같은 범죄유형에 적용되고 있는 가족집단 협의 프로그램도 공동체주의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의 가족 집단협의 프로그램은 범죄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기회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준다.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를 비롯한 공동체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서포터인 공동체는 가해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개입할 수 있다(Bazemore, G.& Umbreit, M.,2001:5).

3)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류⁸⁾

회복적 정의의 실천 프로그램은 유럽과 북미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해조정,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용되는 보상위원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용되는 가족집단협의,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이용되는 양형서클 등을 가장 대표적인고 전형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밖에도 피스메이킹, 치유서클 등과 같이 원주민의 특성에 따른 실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진행방법, 형식 등을 검토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합의과정에서 보상과 가해자의 회복책임을 위원회가 부과하는 ‘보상위원회’,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집단협의’, 양형과정에서 공동체가 참여하는 ‘양형서클’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1) 피해자-가해자 조정

또래조정부터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형사조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것이 조정위원회에 의한 ‘가해자-피해자, 1:1조정’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바탕에 두고 운영되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각급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또래조정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조정형식은 현재 북미 및 유럽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장 활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8) 이 절은 ‘Bazemore, G. and Umbreit, M., A Comparison of Four Restorative Conferencing Models, Juvenile Justice Bulletin(U.S.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 Delinquency Prevention, February 2001), pp1-11을 요약한 것이다.

있다. 적용범위도 직장내 갈등에서부터 중범죄에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형사사법에서는 대부분 다이버전이나 보호관찰이 조건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범죄의 경우에는 수형 중에도 이용하고 있다.

도서관, 교회, 자치센터 등의 중립적 장소에서 조정자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형사법적인 대상사건은 주로 다이버전에 의한 사건과 재산범이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중한 폭력범의 경우에도 화해조정이 진행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먼저 진술한 후 조정자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대화를 돕고 독려하지만 대본이나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고, 참여자도 조정자와 피해자, 가해자가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도 참여한다.

조정에서 피해자는 범죄에 관한 감정표현을 하고 회복을 위한 계획의 내용과 가해자의 의무에 관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정의 준비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은 열리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조정자는 사전에 대면 준비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전화로 접촉해서 개시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주요목표는 피해자가 범죄의 영향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그의 감정과 요구를 표현할 기회를 가지고, 피해자가 절차에 만족을 하고, 가해자는 해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감하고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합의하는 것이다.

(2)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의 경우 1995년 이후 버몬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청소년패널의 경우는 1920년대 이후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보통 보호관찰 조건의 하나로 시행되며 청소년패널은 대부분 다이버전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비폭력범죄, 보호관찰 대상사건의 경우 보상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주로 보호관찰관인 배상 코디네이터가 공공건물 또는 자치센터에서 진행한다. 피해자-가해자와의 대화보다는 보상을 통한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참여자는 질문을 받는 경우에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체 보상위원, 가해자, 지원자가 참여한다. 피해자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위원들의 보상계획 마련에 의견을 제공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적극적 역할부여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보상위원회의 회부는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저위험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의 하나로 적용된다. 위원회가 가해자의 보상계획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원은 훈련을 받게 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심리나 사전 준비는 없다. 의사결정절차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회복적 계획을 결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 양형서클

1992년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미네소타나 콜로라도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형서클은 사법절차의 다양한 단계에서 유죄임을 시인한 모든 종류의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해 다이버전이나 형사제재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사법 코디네이터는 자치센터나 학교 등의 공공건물이나 교회에서 양형서클이 열리게 준비를 하지만 개회후 대화는 발언표를 얻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중범죄의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지원단체 등이 참석하고 이 과정은 공동체 전체에 공개된다. 피해자는 서클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치유협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클 개최 전에 절차와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지역사법위원회에서 양형서클에 사건을 회부하고 있으며 판사는 가해자의 계획준수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양형서클은 공동체의 분쟁해결 및 범죄예방, 보상과 재사회화를 발전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문제를 고려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포터해야 할 그룹에 책임을 부과하고 공동체 자원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4) 가족집단협의

가족집단협의는 1989년 뉴질랜드에서 도입된 이후 1991년 호주에서도 도입되었다. 이외에 미국의 미네소타, 펜실바니아, 몬타나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살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소년사법시스템에서 전면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와가와가지역에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 다이버전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재판후에도 시행할 수 있다. 지역사법 코디네이터가 사회복지기관, 학교공공건물, 경찰시설 등지에서 진행한다. 호주의 와가와가 모델의 경우는 코디네이터가 대본에 따라 가해소년이 먼저 진술하고 피해자 등이 진술하게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대본은 없고 가족구성원들의 협의후 협의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회부기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뉴질랜드의 경우 법원 및 지역사법코디네이터가 회부하는데 비해서 호주 및 미국에서는 경찰에서 회부하며 미국의 경우 학교에 의한 회부도 가능하다. 가족집단협의를 시행하는 호주와 미국의 지역은 주로 경찰 주도 절차이기 때문에 사법통제망의 확대라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경우 경미범죄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상점절도사건이 많이 회부된다.

코디네이터가 주요 참여자를 정하는데, 피해자, 가해자, 친척, 경찰, 사회복지기관종사자, 기타 지지자도 참석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체가 폭넓게 참여하지는 않는다. 코디네이터는 모든 참여자에 대해 전화접촉으로 참여를 장려하고 절차를 설명하는데,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 친척에게는 대면방문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다. 피해자는 가족집단협약에 참석하여 범죄에 관한 감정을 표현하고 보상계획에 의견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참여한다.

가족집단협약의 협의에서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지원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하며 가해자의 재통합을 촉진하지만 가해자의 재사회화나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범죄로 인한 해악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경우에는 집단적 책임이 강조되기도 한다.

4) 회복적 정의 실무의 운용영역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은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될 수 있다. 조정, 보상위원회, 서클, 협의 등의 유형은 모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범주에 대화를 통한 합의의 과정만을 포함시키는 순수론의 입장뿐만 아니라 결과의 회복도 회복적 정의라고 보는 확장론의 입장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소년의 규범위반에 대한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운영영역은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회복적 정의의 목적과 초점에 따른 실무와 그 운용단계에 관한 표이다. 사법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예방, 평화만들기, 소년발달, 공동체 구축, 가족과 학교의 징계'를 목적으로 '학교와 주민 협의, 소년발달 서클, 피해자 인식 교육, 회복적 징계, 가족지원과 토의 집단'에서 회복적 정의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 회복적 프로그램들은 '경찰과 공동체 다이버전, 법원단계의 다이버전, 보호처분과 형선고의 대안, 수강명령과 같은 대안적 처분, 갈등해결, 갱생단계의 후기-수강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 회복적 영역프로그램들은 공식적인

소년사범의 영역이다.

3. 회복적 정의의 관계자

1) 가해자

회복적 정의도입이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회복적 정의의 프로그램은 “소년의 규범내면화를 증진시키는 이상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진국, 2009: 358)”, 소년사범에서의 회복적 정의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소년의 건전육성, 적정절차의 보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위의 향상과 범죄의 방지라는 중요한 가치와 목적 모두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실시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회복만이 아니라 소년 자신의 회복도 고려되어야 한다(강경래, 2009: 262-263)”는 주장이 있다.

2) 피해자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문제해결의 중점을 두는 태도는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회복적 정의를 기존의 문제해결방법의 바탕이었던 응보주의로부터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회복적 정의를 사범의 영역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는 범죄가 야기한 피해를 통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주된 반작용기능은 처벌도 재사회화도 아닌, 피해의 회복 또는 보상이라고 한다(Walgrave, 2000: 260).”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은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의 책임있는 회복적 활동들을 통해서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은 더욱더 회복적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피해는 범죄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상해, 심리적인 이상결과, 사람간의 관계의 문제까지 피해의 회복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어야한다.

3) 공동체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서는 피해를 누가 입었다고 봐야하는가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범주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피해자와 주변인에게 가해진 범죄피해자의 회복이 회복적 활동의 중핵에 위치해야한다는 것은 회복적 정의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Walgrave, L., 2000: 260). 피해의 확정이 어려운 영역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피해이다. 공동체를 정의내리거나 공동체가 입은 피해를 구체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에서의 공동체 역할은 피해회복을 해야 하는 피해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통합을 도와줄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에서 어려운 일 중의 하나는 현실의 회복적 프로그램의 자발성이나 대화라는 절차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규범 강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또는 정부)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에만 중점을 두고 이것만을 목적으로만 운영된다면 범죄는 두 당사자만의 갈등이 된다. 범죄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교환만으로 해결될 두 당사자사이의 갈등이라면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어진다.

회복적 정의의 연구자들은 실천프로그램의 참여자로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제3자인 공동체를 당사자로 포함시키지만, 국가는 공동체의 범주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공동체와 국가, 또는 사회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동체의 정의와 관련하여 하워드제어는 2011년 이화여자대학교 회복적 사법센터에서 이루어진 방한 강연에서 이미 그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를 공식적인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범죄의 해결책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회복적 정의의 실천 절차,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실천기관과 공식적인 국가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한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1997년 루벤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Walgrave L., 2000: 268).

“범죄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야한다. 우선, 범죄에 대한 회복적 대응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절차의 정확성과 개인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자발적인 회복적 행위들이 성공적이지

못하여,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강제를 부과하거나, 사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제도(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징계조치, 분쟁조정)의 운영목적에 해당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내용이 담길 수 있는 학교폭력 대응철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갈등해결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색을 지니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철학이 회복적 정의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과정에서 회복적 정의의 원리로 도입하여 실현하여야 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이다. 가해자, 피해자, 그 어느 하나도 등한시 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복적 정의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철학으로 충분하다.

회복적 정의의 실무 모델은 형사사법과의 관계, 공동체의 참여여부,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학교폭력에 적용할 회복적 정의의 실무모델은 학교폭력의 개념에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사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륙법계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특성과 기준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 및 화해권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운영되는 또래조정을 고려한다면 조정프로그램이 가장 알맞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 및 피해자가 소년이므로 보호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피해회복의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의 선도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모든 지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공동체의 참여가 가능한 유형이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 도입될 회복적 정의는 ‘피해학생 중심적 접근, 가해학생 중심적

접근, 공동체 중심적 접근' 그 어느 하나만의 접근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균형적인 회복적 정의'이다. 지난 2007년 소년법 개정과정에서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균형적인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이 논의되었다(원혜옥, 2007: 5).

균형적 회복적 정의는 균형잡힌 접근계획과 회복적 정의의 철학에 근거하여 소년범죄자에 대한 공동체의 감독을 보다 발전시키려는 모델이다. 회복적 정의의 철학과 공동체사법원칙을 결합하여 그 가치를 소년사법체계에 적용시키는 일종의 통합모델로 미국 법무부의 소년사법 및 범죄예방정책국(OJJDP, 1999)에서 제시한 소년사법의 모델이다. 균형적 회복적 접근에 기초한 소년사법체계는 소년사법에서 더욱더 소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비롯하여, 가해소년의 자질을 개발하고, 가해소년에게 회복책임을 지게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소년사법 체계와는 다르다. 피해자의 피해를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소년사법의 개입범주에 넣고 있다. 그리고 균형적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간의 상호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실행과 공동체 감독실행을 통해서 범죄를 해결하려고 한다.

OJJDP에서 강조된 세 가지 개입목표는 다음과 같다(OJJDP, 1999: 4).

균형적 회복적 정의의 이념은 특별예방적 소년사법의 이념과 잘 결합될 수 있다. 가해소년의 회복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개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공동체의 안전도 핵심요소로 두고 있다.

(1) 회복책임(accountability)

책임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회복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책임과 공동체의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의 간접적 책임을 말한다. 회복책임은 가해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양산한 피해에 대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가해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해행위가 낳은 해악에 대한 공감과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가해청소년은 회복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와 공동체에 봉사하며 회복적 정의 실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 자질개발(competency development)

가해청소년이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가해청소년이 속한 공동체에서 낙인찍혀 비난 받는 것이 아니다. 특별예방적 소년사법에서는 가해청소년의 문제점을 확인하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균형잡힌 회복적 정의의 실천프로그램에서는 가해청소년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무게중심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피해회복과정에서 가해청소년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공동체는 가해청소년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 공동체의 안전(community protection)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응보적 사법제도는 범죄자의 격리를 기본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 중심의 가해청소년 관리 감독 및 처우 시스템을 통해서 가해청소년의 시간과 역량을 공동체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서 가해청소년은 지역공동체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회복적 정의 개념이 소년사법의 작동원리나 범죄해결과정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복적 정의의 이념은 갈등을 해결하는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정 내, 직장 내, 사람과 사람사이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갈등해결 원리이다. 교육학에서도 회복적 학생생활지도의 원리나 평화교육의 형태로 연구되어 있다. 다만, 학교폭력은 범죄와 중첩되며,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개인 간의 생활원리가 아닌, 공식적인 제도 구현을 위해서 제도화의 원리로 정비된 사안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Ⅲ 장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

1.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관련
정책현황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분석

제 III 장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률 분석⁹⁾

1.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관련 정책현황

1)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회복적 정의

(1)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현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전예방과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사후조치의 5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각 단계별 사안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인 사전예방단계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또래활동, 체육·예술활동 등 예방활동과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회복적인 절차로는 또래활동의 하나인 또래조정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또래조정은 초기대응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사전예방 활동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2단계인 초기대응단계에서는 인지 및 감지 노력을 통해 징후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나 상담, 순찰을 실시한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호자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교육청에 보고한다. 인지 및 감지나 신고접수의 다음 절차로는 초기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관련 학생의 안전조치와 보호자 연락, 폭력유형별 초기대응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회복적인 절차가 없지만 폭력유형별 초기 대응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인 사안조사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전담기구에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해 보고한다. 이 단계에서도 회복적인 절차는 없지만 긴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회복적인 프로그램으로 가피해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제3장의 경우, 1절 1)과 2)는 이유진이 집필하였고, 1절 3)은 이유진과 강지명이 함께 집필하였으며, 2절은 강지명이 집필하였다.

4단계인 조치결정단계에서는 먼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는 자치위원회 소집과 조치 심의·의결, 분쟁조정이 이루어진다. 결정사항에 따라 학교장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조치결과를 서면 통보하고 교육청에 보고한다. 이 단계에서 회복적인 절차로는 분쟁조정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회복적인 절차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금전적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교육부(2014: 9) 재구성

【그림 III-1-1】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흐름도

5단계인 사후조치단계에서는 조치에 대해 수용이 된 경우 조치이행을 한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를 시행한다. 가해학생과 함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절차로는 조치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한다. 이후에는 사후지도로써 피해학생 적응지도와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회복적인 절차는 없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사후지도를 함에 있어 회복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2) 사법기관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현재 사법기관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선도대상 사건과 처벌대상 사건으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고, 처벌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소년법원으로 송치되는 소년보호사건과 검찰을 거쳐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드림팀’이 구성된다. 이 팀의 구성원은 생활안전과장과 형사과장, 정보과장이고 간사는 여성청소년계장이 맡고 있고, 여기서 사건을 선도대상과 처벌대상으로 분류한다. 분류기준을 보면, 선도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자진신고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처벌대상은 일진회나 폭력조직과 연관된 경우, 성폭행, 보복폭행 등 선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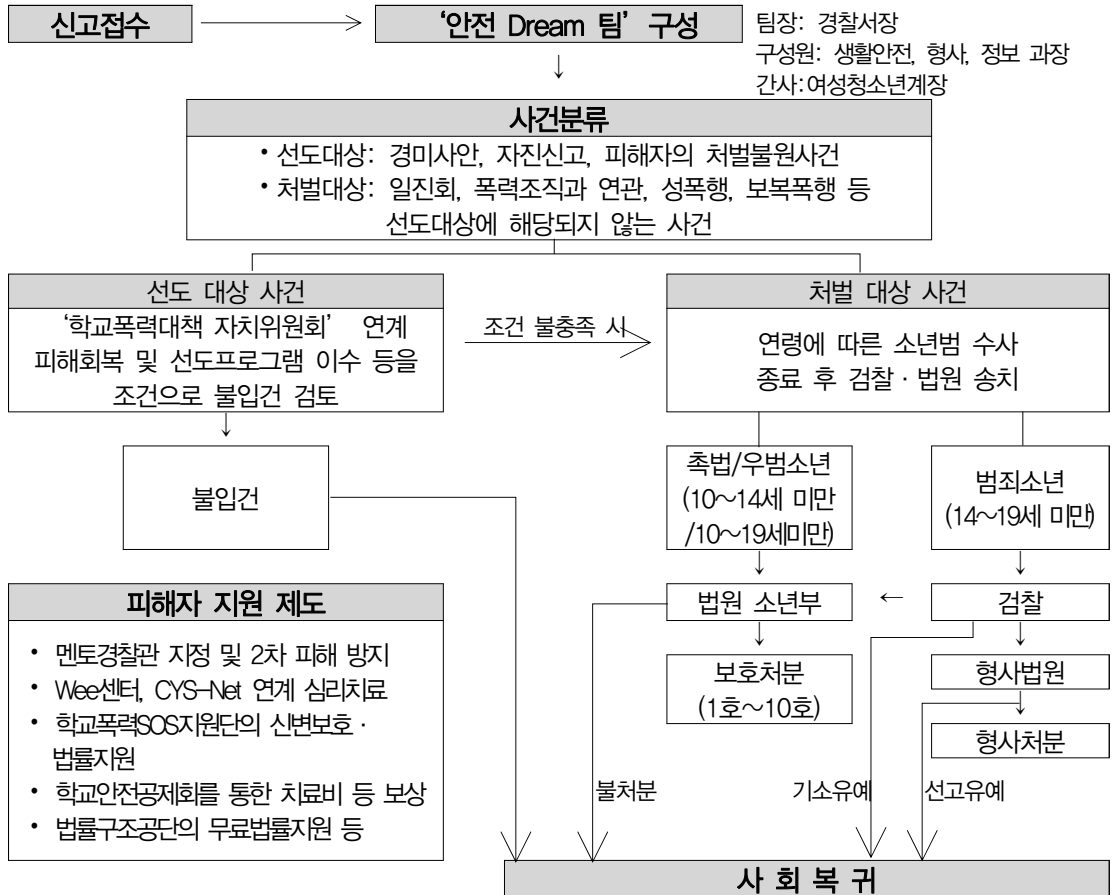
선도대상 사건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피해회복 및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불입건¹⁰⁾할 수 있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처벌대상 사건으로 전환된다. 처벌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촉범소년¹¹⁾과 우범소년¹²⁾의 경우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소년부에서는 심리불개시, 불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린다. 범죄소년에 대해서

10) 경찰에서 불입건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는 입건유예라 하고, 학계에서는 훈방이라고 한다. 실무에서 이를 훈방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소년사건의 불입건 대상이 일반적인 훈방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학교 폭력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춘화, 2010: 99).

1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12)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등의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는 검찰에 송치하는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고, 형사법원에 기소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 예산교육지원청(2012: 5) 재구성

【그림 III-1-2】 사법기관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흐름도

사법기관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중에서 회복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검찰에서의 형사조정과 법원 소년부에서의 화해권고가 있다. 하지만 경찰의 불입건 결정 시에 피해회복 및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고, 검찰의 기소유예도 소년법상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있으므로 그 조건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가.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현황

표 III-1-1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학교급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합계
2010	초	231	657	222	70	150	24	12	102	13	15	-	608
	중	5,376	14,179	1,176	547	5,444	2,393	80	2,366	1,157	784	-	13,947
	고	2,216	5,113	451	199	1,617	1,071	43	969	225	330	93	4,998
	소계	7,823	19,949	1,849	816	7,211	3,488	135	3,437	1,395	1,129	93	19,553
2011	초	299	1,199	415	128	96	145	89	30	95	22	-	1,020
	중	5,229	20,077	3,105	2,188	1,764	2,644	2,065	910	3,175	1,848	-	17,699
	고	1,897	5,649	790	527	611	975	646	327	682	617	94	5,269
	특각	18	96	19	3	1	15	11	11	16	9	9	94
소계	7,443	27,021	4,329	2,846	2,472	3,779	2,811	1,278	3,968	2,496	103	24,082	
2012	초	2,441	2,747	1,513	515	502	70	713	120	101	85	-	3,619
	중	15,449	28,919	8,202	4,625	8,206	4,645	8,167	4,507	426	2,078	-	40,856
	고	6,758	10,527	2,540	1,300	2,427	1,801	3,014	1,450	248	658	182	13,620
	특각	61	39	9	5	9	2	9	4	9	1	-	48
소계	24,709	42,232	12,264	6,445	11,144	6,518	11,903	6,081	784	2,822	182	58,143	
2013 상반기 (~8월)	초	982	1,167	657	276	218	33	222	45	52	33	-	1,536
	중	5,911	11,191	4,638	2,906	3,571	1,119	2,964	1,338	288	679	-	17,503
	고	2,787	4,289	1,529	842	1,177	457	1,101	500	111	278	68	6,063
	특각	33	43	25	11	13	3	13	1	1	2	1	70
소계	9,713	16,690	6,849	4,035	4,979	1,612	4,300	1,884	452	992	69	25,172	

* 교육부 내부 통계자료를 제공받음.

** 2013년 통계는 2014년 11월중 학교에 공시하여 12월말 발표되고, 현재까지는 상반기 통계만 잠정 집계되어 있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폭력 사건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급증하다 2013년에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2012년의 심의건수는 24,709건으로 2010년 7,823건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의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학교에서 은폐한 폭력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사의 재량의 폭이 줄었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의건수가 증가하면서 심의에 회부된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증가했는데 2010년 1,994명에서 2012년 42,23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심의건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한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결정의 추이는 지난 몇 년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9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결정된 것은 서면사과이고, 다음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학급교체, 퇴학처분의 순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미조치'규정이 없어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반드시 결정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서면사과'가 경미한 사안이나 가벼운 처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교육'이나 '학교봉사' 역시 처음 회부된 가해학생인 경우에 관대한 처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정건수 상위 3순위에 들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회복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복적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중에서 전혀 회복적이지 않은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은 결정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회복적 절차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결정의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나. 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건수가 증가하면서 피해학생의 숫자도 2010년 26,505명에서 2012년 41,368명으로 증가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숫자가 차이가 컸었는데, 2012년부터는 가피해학생의 숫자가 엇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추이는 지난 몇 년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타 조치를 제외한 4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결정된 것은 심리상담 및 조언이고, 다음은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의 순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지만 학급교체의 경우에도 회복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이다.

특히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로써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만약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6호 조치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결정하면 될 것이다.

표 III-1-2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학교급	심의 건수	피해학생수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	기타	합계
2010	초	231	3,887	1,522	99	144	20	192	1,977
	중	5,376	17,809	13,691	935	709	62	776	16,173
	고	2,216	4,809	3,640	405	493	45	277	4,860
	소계	7,823	26,505	18,853	1,450	1,353	128	1,253	23,086
2011	초	299	475	332	37	29	3	86	487
	중	5,229	10,487	8,092	577	290	47	1,353	10,359
	고	1,897	2,779	1,999	215	185	40	295	2,734
	특/각	18	22	20	1	8	1	10	40
	소계	7,443	13,763	10,443	830	512	91	1,744	13,620
2012	초	2,441	4,384	1,605	110	96	19	241	2,071
	중	15,449	29,034	21,315	2,016	728	87	1,388	25,534
	고	6,758	7,910	4,920	684	530	63	446	6,643
	특/각	61	40	25	4	4	-	16	49
	소계	24,709	41,368	27,865	2,814	1,358	169	2,091	34,297
2013 상반기 (~8월)	초	982	2,628	587	39	54	13	57	750
	중	5,911	10,656	7,875	537	357	44	400	9,213
	고	2,787	3,135	2,450	258	285	33	140	3,166
	특/각	33	33	25	4	1	1	3	34
	소계	9,713	16,452	10,937	838	697	91	600	13,163

* 교육부 내부 통계자료를 제공받음.

** 2013년 통계는 2014년 11월중 학교에 공시하여 12월말 발표되고, 현재까지는 상반기 통계만 잠정 집계되어 있음.

다. 사법절차 상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사법절차에서는 경찰단계에서만 학교폭력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찰통계연보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2008년에 25,301건이 학교폭력이 검거되었는데, 2009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지만 2012년에는 23,877건으로

2008년에 비하면 감소된 상태이다.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의 유형은 폭력과 금품갈취,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1-3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폭력		금품갈취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08	25,301	184	16,295	35	6,961	30	2,045	119
2009	24,825	131	16,039	45	6,017	17	2,769	69
2010	25,175	143	15,537	28	5,992	31	3,646	84
2011	21,957	103	14,837	28	3,902	24	3,218	51
2012	23,877	333	14,637	97	5,912	127	3,328	109

* 경찰청, 2012: 117.

또한 경찰청 ‘경찰백서’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표를 보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자진 신고한 건수와 단속 및 피해 신고 모두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해마다 운영시기와 기간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통계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자진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입건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4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기간	합계	자진신고				단속 및 피해신고		
			계	조치			계	조치	
				불입건	입건	소년부 송치 등		입건	소년부 송치 등
2008	6.2~8.31	13,614	7,515	6,901	498	116	6,099	5,041	1,058
2009	3.16~6.15	11,579	5,682	4,348	931	403	5,897	5,074	823
2010	3.15~5.14	6,472	3,504	3,076	335	93	2,968	2,445	523
	9.1~10.31	5,532	3,108	2,794	243	71	2,424	2,107	317
2011	3.14~5.15	5,466	3,205	2,933	206	66	2,261	1,882	379
	9.1~10.31	2,479	2,479	864	715	115	1,615	1,318	297
2012	3.19~4.20	2,811	744	693	68	56	2,037	1,197	840
	10.22~11.30								

- * 1. 불입건은 훈방, 즉결심판이 포함됨
- 2. 입건은 구속, 불구속이 포함됨
- 3. 소년부송치 등에는 소년부 송치와 기타 등이 포함됨.

**여성가족부, 2013: 362(원자료: 경찰백서).

한편 학교폭력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입건단계에 해당하는 경찰의 사안처리에 관해서는 통계가 있다. 학교폭력전담 신고센터인 117센터의 일차적인 사건처리 결과¹³⁾를 보면 2012년 경찰과의 연계가 2.9%, 상담종결이 86.0%이고 2013년에는 경찰과의 연계가 10.1%, 상담종결이 81.%, 2014년에는 경찰과의 연계가 27.1%, 상담종결이 64.0%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는 학교폭력사건이 점점 심각해져 사법처리를 위한 경찰연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 연계와 상담종결’이라는 117센터 사안처리의 의미가 해마다 달라졌음을 고려하고 보아야 한다.

경찰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매년 강화하였다. 상담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14년 학교폭력 신고 30,965건 중 26,950건에 대해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646건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했다. 긴급출동 29건, 수사지시 16건, 전담경찰 연계 189건 등 학교전담 경찰관 연계를 통한 사후모니터링도 여러 가지 처리절차를 담고 있다. 현재의 학교전담 경찰관 연계는 사법처리를 의미하던 과거의 경찰연계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과 2013년, 2014년의 117센터 ‘경찰연계와 상담종결’ 통계자료에 대해 시계열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관련 제도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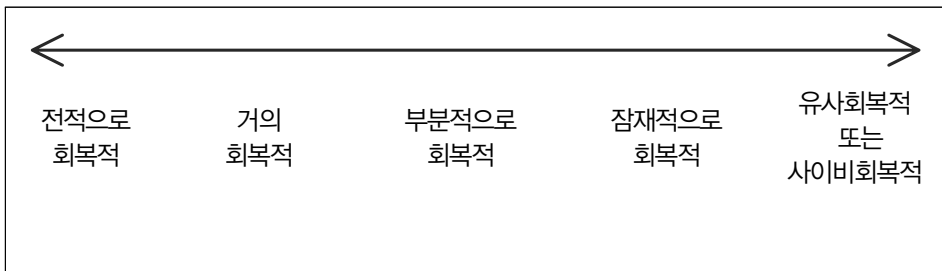
(1) 개관

회복적 정의 관련 제도에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정의의 개념 설명에서 순수론과 확장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확장론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범주는 매우 넓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는 별개이다.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나 수단들은 평가기준에 따라서 등급화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맥클드·윅첼과 같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공동체의 참여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완전히(fully) 회복적’인 것, ‘거의(mostly) 회복적’인 것, ‘부분적(partly)으로 회복적’인 것으로 등급화 할 수도 있고

13) 117센터는 2011년까지 경찰청(117), 교육부(1588-7179), 여성가족부(1388)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여, 2012년 6월 18일 전국 지방경찰청(17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2014년 6월 경찰청 보도자료, ‘117신고센터 개소 2년, 학교폭력 신고 22% 감소’).

14) 이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련제도들은 법제화된 제도인 경우 법령과 지침을 주로 참고해 작성하였고, 법제화되지 않은 제도는 관계부처의 사업보고서와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하였다.

(McCold and Wachtel, 2003: 3)”, 제어의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전적으로 회복적인 것, 거의 회복적인 것, 부분적으로 회복적인 것, 잠재적으로 회복적인 것, 그리고 유사 회복적 내지 사이버 회복적인 것(Zehr, 2002: 55)”으로 등급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출처: Zehr, 2002: 55

【그림 III-1-3】 회복적 정의 실무의 회복적 정도

제어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이 피해자와 당사자들의 요구, 그리고 학교폭력의 원인에 주목하는가? 2. 당해 프로그램의 내용이 피해학생의 관심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3. 가해학생이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4.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가? 5. 대화 및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6. 당해 프로그램이 모든 당사자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공동체나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어떤 조합을 통해서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실천하느냐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어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모델이나 회복적 절차도 완전할 수 없고, 회복적 정의 실무프로그램은 실제로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연속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Bazemore, G. & Umbreit, M, 2001: 14-15).

학교폭력사안에서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법제화된 제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조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 소년법상의 ‘화해권고’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회복적 정의이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가는 별도로 평가해야할 문제이지만,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제화된 제도 외에도 회복적 운영의 가능성이 있는 정부부처¹⁵⁾의 관련제도들을 확장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5)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 관련 프로그램들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학교의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

가. 또래조정제도

“또래조정이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 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및 활동이다(양계민, 김지경, 맹영임, 조혜영, 2012: 7; 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재인용)”. 이 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라기 보다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발전하기 전에 대화와 토론 같은 합리적 절차에 의해 해결한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되었다(양계민, 김지경, 맹영임, 조혜영, 2012: 3-4).

교육부 시범학교를 기준으로 2012년 79개교, 2013년 90개교가 또래조정을 운영하였다. 또래조정자의 수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수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2년까지 또래조정 운영을 위해 육성된 지도교사는 총202명, 학생 또래조정자는 총1,304명이었지만 2013년의 일반학교 또래조정 학교 교사연수 이수자는 406명, 또래조정교육이수학생은 39,000명이었다(양계민·김지경·김지연·이종원, 2013: 39-40).¹⁶⁾

또래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폭력의 사후적 조치인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가해학생 징계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와 연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징계조치나 피해보호와 지원은 자치위원회와 관련이 되어 있을 뿐, 학생자치와는 관련이 없다.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기존의 소년사법이나 갈등해결 기제와는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갈등의 민주적 해결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래조정이 회복적 정의의 실현프로그램으로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또래조정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뿐, 제도화된 프로그램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는 권한을 학생들에게는 나누어줄 수 없다는 고정관념, 즉, 기존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황에서 분석하지 않고 부록에서 소개하였다.

16) 2014년 통계는 학교수만 잠정 집계되어 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시범학교는 123개가 있는데, 이중 초등학교가 28개교, 중학교가 60개교, 고등학교가 35개교이다. 시범학교 외에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735개교가 있다.

나. 분쟁조정제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 약칭)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분쟁조정의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분쟁조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분쟁조정의 명시적 목표가 금전적인 합의라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분쟁조정 합의서의 예시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폭행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치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배상금을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책임질 것을 상호 원만히 하였음. 이후 재심요구, 행정심판 등 추후절차나 민사상 소제기, 형사상의 고소나 고발 등 일체의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 합니다.'

학교폭력특별법 상의 분쟁조정제도가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지고(김은경·이호중, 2006) 시범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제도가 '가해자의 감형과 피해자에 대한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던 관습적 형사합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법규정과 학교폭력처리 가이드북(교육과학기술부, 2012: 261)¹⁷⁾의 '예시문(양식39)'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 4월 15일 사용된 제주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연찬회 교재(112-113)에서도 이러한 문구가 양식으로 제공되었고, 함께 기재된 분쟁조정 신청서에도 금전적 합의가 대표적인 예시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너무 과도한 경제적(혹

17) 금년도에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 개발되어 본 연구에서도 참고를 하였으나, 아직은 공식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부에서는 최종검토를 거쳐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은 사후대책)요구를 하여 본 가정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여건이 못돼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안 돼 이렇게 분쟁조정을 신청하오니 부디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와 같이 금전적 합의를 전제로 제시된 합의서의 문구는 학교의 분쟁조정을 학교에서 주관해 주는 형사합의로 변질시키고 있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갈등해소를 위한 과정이 어느 정도로 관철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합의 결과로 형사상 고소나 고발이 불가능한 듯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일부 범죄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가해학생에게는 불리하다. 민형사상의 합의를 중용하는 합의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교육기관의 역할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치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징계결정과 분쟁조정 of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제기된다.

그리고 ‘가해학생 가정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의 요구’가 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행간의 전제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해학생 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을지 없을 지가 결정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될 대응책이 될 수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모된 입장에서 보호와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대상이다. 가해학생 가정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의 요구는 별개로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다. 피해학생 전담기관

피해학생 전담기관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기관으로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상담사 등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금년내로 17개시도에 21개의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는 중고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점차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전담기관으로는 2013년에 설립된 강원사임당교육원과 인천피해자전담지원기관 등이 있다. 한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기숙형의 장기위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에는 ‘해맑음센터’라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도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치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이승현 외 5인, 2013: 123-125).

라.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는 교육부가 2013년 7.23대책에서 도입한 제도들이다.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관계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하였는데, 가피해학생들에게 4주간의 시간을 주고 이들의 교우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자치위원회 개최→교우관계 회복기간→교우관계 회복활동→자치위원회 결정시 고려'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러한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의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우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피해자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교우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따돌림 사건에 대해 일정기간의 회복기간을 두어 가피해자 모두의 심리적 성장을 돕고 양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자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은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이 손상된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효과적인 심리 기능 상태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박완성, 차명호, 정구철, 2014 : 51, 129). 전자는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고, 후자는 피해자의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들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 정책연구가 진행되었고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통해 내년에 프로그램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는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17개시도에 지역수행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통한 심리, 정서적 건강 회복을 돕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갈등 발생시에 객관적이고 중립적,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학생들이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화해조정 프로그램과 분쟁조정 프로그램, 갈등관리·코칭 프로그램이 있고,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컨설팅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자문, SOS긴급출동, 학교폭력 법률상담, 학교폭력 솔루션 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¹⁸⁾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에서는 분쟁조정 전문가를 양성해 학교현장의 분쟁조정에 개입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회복적 처리에 많은 기여를

1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 안내 <http://svmedi.net/sub/introduction2.php>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도별로 1개소에 불과해 모든 학교폭력사안에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 사법절차상 관련제도

가. 형사조정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는 화해중재라는 이름으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를 모범으로 하여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들 대부분이 화해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6년 들어서는 대검찰청이 사건처리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년 4월 1일부터 대전지검과 부천시청에서, 5월 1일부터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시범적인 화해조정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 8월 이후 대검찰청의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에 따라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실시되었다(김용세, 2010: 254). 시행초기에는 형사화해중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2007년 1월 개정된 지침에서 형사조정이라는 용어가 확정되었다. 검찰단계에서의 실무운용지침을 통해서 운영되던 형사조정은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신설되어 법률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형사조정은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가해학생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 제도는 전문가의 조정을 통해 처벌 대신 피해회복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복적인 취지를 갖고 있으나 현재는 금전적 보상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 화해권고

소년법 제25조의3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이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의 화해권고에 따라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화해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화해권고제도는 소년보호절차에만 적용되고 소년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해권고가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 정의이념이 반영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도입 취지는 회복적 정의라는데 이견이 없다(원혜옥, 2007: 6-7, 오영근, 2008: 10,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576, 김성돈, 2008:97, 이진국, 2009: 359). 하지만 화해권고는 법원의 심리단계에서의 화해권고만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소년의 피해자와의 대화참여가 결국은 강제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 정의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박미숙, 2007: 63)도 존재한다. 또 일부에서는 화해권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적 정의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초기단계에서 회복적 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요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아야한다(한인달, 2008: 385)고 한다. 하지만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25조3의 제2항에 따라서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지만 “참고인으로 피해자를 소환할 때 피해자의 소환불응에 대한 동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발적인 화해절차에의 참여가 보장된다(이진국, 2009: 359)”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현재 판사의 화해권고에 따른 화해절차는 법원에서 위촉한 화해권고위원 3인이 진행하고 있다. 화해권고위원은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보호처분을 고려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효과는 양형인자의 하나로 해석될 뿐이다. 화해의 성립시 실무에서는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도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다.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시 뿐만 아니라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시에도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분석

현행 법령 중에서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소년법이 있다. 이들 법률 중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관련 조문이 많은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소년법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법적 성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법이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고 교육기관의 관할이라는 측면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성격이 교육법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개념에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법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의 징계조치가 사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이중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성격은 교육법으로서의 징계법(조상제, 2013: 333. 이승현, 2012: 161. 정현미, 2012: 251. 박찬걸, 2010: 97. 이진국, 2007: 105), 형사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오경식, 2009: 182), 분쟁조정을 담고 있는 조정법(김혜경, 2013: 260) 등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징계법이라는 시각이 다수이다. 학교폭력이라는 범죄행위를 행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폭력행위 제외) 교육기관의 징계와 형사사법기관의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형사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가해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법과의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학교폭력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보호법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2004년 제정당시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행위를 명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희롱을 규정하는 방식과 같이 피해자중심적인 정의규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가해자의 고의보다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우선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희롱의 개념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통해서 일부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조정법적인 성격도 지닌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분쟁조정을 통해 ‘징계법, 피해자보호법, 조정법’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제도들에 각각 경도되어 징계법적, 피해자보호법적, 조정법적 역할을 드러내기 보다는 교육적 목적을 향해서 작용하는 교육제도의 테두리 역할을 분명하게 하여 교육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나. 학교폭력 개념 규정의 개정과 정책의 변화

학교폭력으로 인한 일련의 충격적인 자살 사건¹⁹⁾은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범정부대책’이라는 유래없는 강력한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상황을 가져왔고, 이후 2013년 7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까지 발표되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화 여론은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을 가져왔고, 학교폭력 관련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극단적인 정책까지 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행위 규정의 명확화가 점점 중요해졌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다가 2012년 피해학생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피해학생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2004년 제정당시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였다. 제정당시의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학교폭력의 종류에는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라고 규정되었다. 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행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징계보다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적 학교폭력 개념정의는 ‘장난이었다는 가해학생과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해학생의 갈등’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의견차이를 풀어낼 수 있는 제도로 분쟁조정

19) YTN 『한나라당,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현장조사』 기사입력 2011-12-30 11:57,

[http://www.ytn.co.kr/_ln/0101_201112301157247581\(2014년8월10일방문\)](http://www.ytn.co.kr/_ln/0101_201112301157247581(2014년8월10일방문))

연합뉴스 『대전서 같은 반 여고생 잇단 투신·학교 '폐닉'』 기사입력 2012-01-17 01: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5470554\(2014년 8월 10일 방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5470554(2014년 8월 10일 방문))

연합뉴스 『자살 중학생 댄 "용서하려고 매일 기도한다"』 기사입력 2011-12-27 19:08, 최종수정 2011-12-27 19: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2/27/0200000000AKR20111227181000053.HTML?did=1179m>

(2014년8월1일방문)

머니투데이 뉴스 『광주 자살 중학생 가해 학생 전원 사법처리한다』 기사입력 : 2012.01.05. 16:0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0515518234150&outlink=1\(2014년8월10일방문\)](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0515518234150&outlink=1(2014년8월10일방문))

제도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3월 14일 전부개정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위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문구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장난’은 학교폭력의 개념범주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가해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2008년 개정을 통해 동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라는 이원적인 학교폭력대응책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2012년 1월 26일 일부개정 과정에서는 ‘강제적인 심부름’ 행위를 추가하고 따돌림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가해행위의 추가가 주된 개정내용이었다. 개정이후 가해행위 명확화에 치중해있던 학교폭력 개념 개정은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과정을 통해서 학생 간의 행위로 규정하였던 학교폭력 규정을 ‘학생을 대상으로’로 수정하였다. 이로 인해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동법률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이버따돌림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어야 한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장애학생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의 징계를 위해서 학교폭력의 개념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왔지만, 최근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상 규정된 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비학생 아동·청소년의 피해에 대해서는 학생 아동·청소년수준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을 수 있고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은 피해학생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장애학생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의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준용한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여러개의 조치가 병과될 수 있다. 퇴학처분의 경우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유형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징계처분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과 유사하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교육적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교정기관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와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밖의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봉사를 할 대상지는 많지 않다. 또한 아동·청소년 비행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인력풀도 풍부하지 않다. 모든 것이 학교밖 지역공동체에서 구해지고 이루어져야한다는 측면은 사법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다시말해서 학교밖에서 사회봉사를 하거나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사법기관의 보호처분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형사제재의 일환인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학교폭력예방방법상의 징계처분에 규정한 것은 적정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사법기관에서는 피의사실의 공표와 관련하여 신중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자치위원회가 열린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17에 신고되는 모든 학교폭력사건이 해당학교로 통보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적 조치라는 미명하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학생의 범죄행위를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호자도 아닌, 학교가 꼭 알아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기도 전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것은 엄벌화의 여론에 등떠밀린 결과였다. 전과사실은 아무나 조회할 수 없고, 더구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판사의 허락이 없으면 열람등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비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지나친 조치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학교현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조치인 전학이나 사과, 교내봉사 등과 같은 교육적 처분이나 교내 조치를 제외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는 법률에서 삭제될 필요성이 있으며, 가피해학생의 관계를 망치고 가해학생에게 반회복적인 정책인 생활기록부 기재는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다.

(4)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분쟁조정

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구성원 및 운영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의 경우 자치위원회의 역량으로 가능한 업무의 범위인지 의문이 든다. 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결정권한은 법률상 규정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들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들에 있다. 결정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들이 필요한지는 전문상담사 등의 조언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의 경우, 만성비행에 젖어있거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치위원회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는 학생이 폭력성이나 분노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치위원들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나. 분쟁조정 과정과 운영

분쟁조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의해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동 조항에는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분쟁조정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권한을 가진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합의서의 현실

분쟁조정이 자치위원회에 신청되어 자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고자하면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물론 거부의를 밝히면 조정이 중단되거나 개시되지 않는다.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분쟁조정이 중지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것은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조정제도가 갈등을 해결하여 학교생활을 원만하기 하기 위함이 아니고 배상금 협의를 위한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분쟁조정은 가해학생에 대한 사법적 처분과 동시에 진행될 수 없게 장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법대체적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예시 합의서의 문구와 같이 합의했다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나 이후 재심요구, 행정심판 등의 일체의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게 되어,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추후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중단시킬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즉,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중에서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간주하기 힘든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친고죄인 모욕죄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시 작성한 합의서의 ‘형사상의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법예의 호소권한을 심리적으로 박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는 별개로 사법절차가 진행되게 될 수 있으며 이때 분쟁조정시 작성한 합의서는 양형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피해학생에게는 합의를 했으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오명이 씌워질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은 갈등해소를 통한 학교공동체의 정상화가 아닌,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배상금 합의와 가해학생의 사법처리를 막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형사조정예 관해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형사조정예 회부할 수 있다. 이 법률에 특별히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에 관한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이 소년형사사건이 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형사조정예 회부될 수 있다. 학교생활 이외의 가정생활 등 복지나 법률 서비스는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범죄피해자 지원도 가능하다.

이 법률에서는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형사조정예 관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예 회부할 수 있다. 시행령 제46조에서는 형사조정 대상사건 4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폭력은 2호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채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이 해당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예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의 결과는 검사가 고려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결과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3) 소년법

학교폭력사건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이외에 소년사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적용하며, 우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

소년사법은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와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로 나뉜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죄질이 나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검사는 소년형사사건처리절차로 회부하게 된다. 이때, 검사는 선도를 조건으로 소년을 기소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보호사건은 판사의 심판에 의한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심리불개시, 불처분, 화해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판사는 화해가 성립되면 보호처분을 부과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²⁰⁾. 보호처분에는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에서 현재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도입된 부분은 보호처분 결정단계에서의 화해권고 뿐이다.

화해권고에 관해서는 제2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20)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보호처분에만 고려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제 IV 장

외국사례

1. 호주
2. 뉴질랜드
3. 미국
4. 영국
5. 독일
6. 외국사례의 종합비교

제 IV 장 외국 사례²¹⁾²²⁾

1. 호주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1990년에 존 맥도날드(John MacDonald)가 호주의 회복적 정의 제도를 처음 제안하였다(Daly & Hayes, 2001: 2). 1989년 뉴질랜드에서는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호주에서는 존 브레이스웨이트(John Braithwaite, 1988)가 ‘범죄, 수치심 그리고 재통합(Crime, Shame and Reintegration)’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맥도날드(MacDonald)는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과 뉴질랜드(New Zealand)의 보상적 접근(reparative approach)을 결부시켜서, 뉴 사우스 웨일즈 경찰 서비스(New South Wales Police Service) 산하에 경찰의 주도로 진행되는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를 시작하였다.

경찰 주도형 회복적 정의 제도(police-run family group conferencing, Wagga model)는 초기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지만, 호주의 다른 주로 급격히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회복적 정의 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에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주가 대부분이었다. 최초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행 및 범죄 청소년 문제에 접근한 것은 청소년 범죄자 법(Youth Offenders Act 1993)을 기초로 회복적 정의 제도를 시행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지역이었으며,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 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과 빅토리아(Victoria)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회복적 정의 관련 법안이 마련되게 되었다.

21) 제4장의 경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창훈이 집필하였고, 5절은 박상원이 집필하였음.

22) 각국의 사례는 문헌과 인터넷자료, 법률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고, 별도의 주를 달지 않은 부분은 법률을 소개한 것임을 밝혀둔다.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 청소년 사법(Youth Justice Act 1992, 1997): 타스마니아(Tasmania) 지역의 회복적 정의 관련 제도를 뒷받침 하는 법률로서 Part 1, Division 1, Section 4(g)에 “균형적 접근은 청소년의 필요, 피해자의 권리, 지역사회 이익을 위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a balanced approach must be taken between the needs of the youth, the rights of any victim of the youth’s offence and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라고 규정하여, 균형적 정의(balanced justice)의 철학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반드시 회복적 정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소년범죄자법(Young Offenders Act 1993, 1994, 1997):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지역의 회복적 정의 관련 제도를 뒷받침 하는 법률로서 Section 34에서 회의(cenferencing)의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목적은 “회의의 대상인 어린이에 대한 결과에 관한 계획 및 제안사항을 의결하고 권고를 하는 것(make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about, and to determine an outcome plan in respect of,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conference)”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형(회복적 정의) 법(Crimes (Restorative Justice) Act 2004): 이 법률에는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회복적 정의 제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복적 정의의 원칙, 주요 개념, 적용 가능한 범죄유형, 회복적 정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회의(conference)와 합의(agreement) 등의 절차 및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족 법(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2005):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1) 청소년과 그 가족에서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s)를 제공하고, 2) 청소년을 보호하며, 3) 범죄행위로 기소를 받은 청소년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하고, 4) 빅토리아(Victoria)주의 소년 법원(Children’s Court)이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Chapter 1, Part 1.1, Section 1. Purposes). 또한, Section 415에서 그룹 회의(group conference)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회복적 정의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호주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환(diversion) 제도의 실효성과 청소년의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나타나게 되었다(Strang, 2001: 5-6). 비록 피해자-가해자 중재(victim-offender mediation)이나 형의 선고 씨클(sentencing circle)과 같은 프로그램은 용인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은 적극 활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학교 환경에서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1994년 퀸스랜드(Queensland)에서 처음 시도 되었고, 대략 89회의 회의(conference)가 개최되었다(Strang, 2001: 29). 하지만, 퀸스랜드 교육부(Queensland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지 않아 학교 환경에서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사장되게 되었다. 1997년에는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부(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정학 대체 프로젝트(Alternative to Suspension project)를 시행하고 대략 20회의 회의(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는 학교의 모든 직원들이 회의(conference)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시드니(Sydney)나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 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학교들에서는 행동 관리 프로그램(behavioral management programs)이 운용되어 지고 있다.

셋째, 돌봄과 보호(Care and protection) 환경에서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가족이 치료 및 보호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형태로서 가족 그룹 의사 결정(family group decision-making)으로 알려져 있다 (Strang, 2001: 30-31). 1992년 빅토리아(Victoria) 주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가족들만 문제 및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3) 전문가가 다시 참석하여 가족들과 문제 및 문제해결방안의 결과들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의 보호 법(Children's Protection Act 1993), Division 1에서 규정하는 가족 돌봄 미팅(family care meeting),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법(Children and Young Person (Care and Protection) Act 1998)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이 이러한 프로그램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환경에서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은 경찰이나 법원의 개입 없이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뉴 사우스 웨일즈 교정서비스 부(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Corrective Services)는 회복적 정의 부서(Restorative Justice Unit)를 신설하고 선고(sentencing)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회의(conferencing)를 개최하기도 하였다(Strang, 2001: 34).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은 형사사법 내에서 운용되는 것과, 그 외 학교, 치료 및 보호기관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이 존재한다.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운용되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다시 크게 경찰이 운용하는 프로그램과 법원이 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경찰이 운용하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비행 및 범죄 청소년이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할 경우 경찰은 청소년 사법 회의(Youth Justice Conference)로 전환(referral)하여 청소년이 정규 형사사법 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운용하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법정에서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경우 선고(sentencing) 이전 혹은 이후에 전환(referral)을 유도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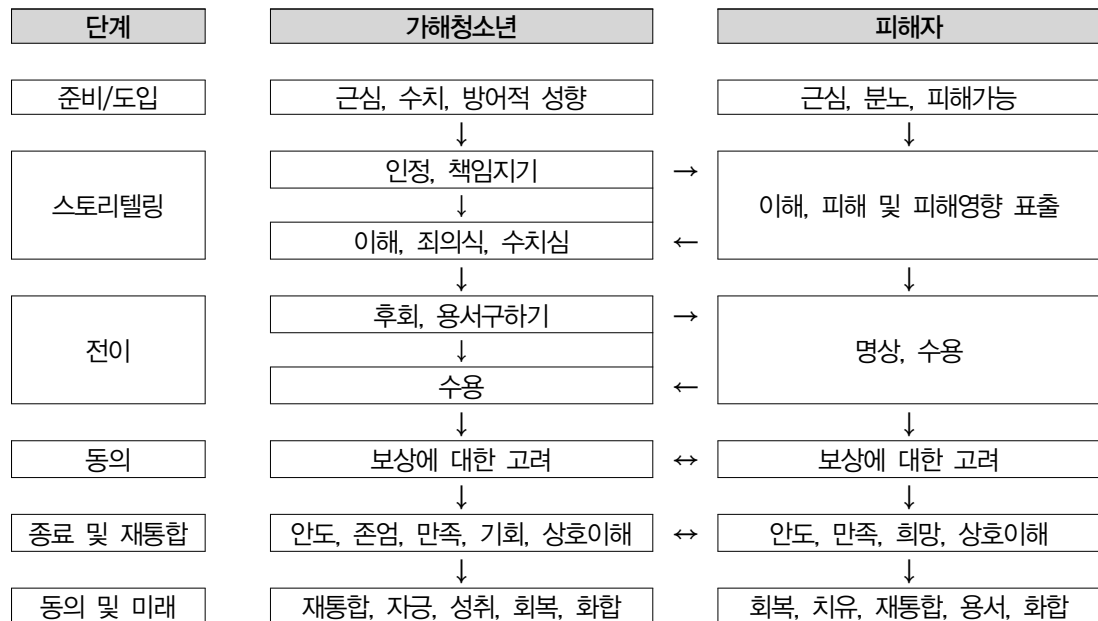
이상의 두 독립적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것은 호주에서는 초기 경찰 주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법원 주도 프로그램과 양립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형사사법 제도에 진입하기 이전 경찰단계에서부터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이루어진 이후에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용 주체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소 다르게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5) 우수사례

퀸스랜드(Queensland) 청소년 사법 회의(Youth Justice Conferencing)²³⁾: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며, 가해 청소년이 1)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게 하고, 2) 잘못을 인식하게 하고, 3)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듣고 알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책임성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역사회 부(Department of Communities), 2010: 10). 특히, 이 프로그램은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1989))의 재통합적 수치(reintegrative

23) Department of Communities,(2010). Youth Justice Conferencing Queensland: Restorative Justice in Practice. Queensland Government.

shaming) 이론에 충실히 근거하여 회의(conference) 동안에 가해 청소년이 비난의 과정을 통해 감정적으로 수치심(shame)을 경험하게 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얘기하고 피해회복을 요청하여 합의함으로써 가해자를 재통합(reintegration)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IV-1-1>은 주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 Department of Communities(2010: 59) 재구성

【그림 IV-1-1】 청소년 사법 회의(Youth Justice Conferencing)의 주요 단계

첫째, 준비/도입 (setting-up stage and introduction)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진행자(convenor)가 좌석 배치, 음료 및 다과, 인사 및 접수 등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다음의 <그림 IV-1-2>는 회의 (conference)의 좌석배치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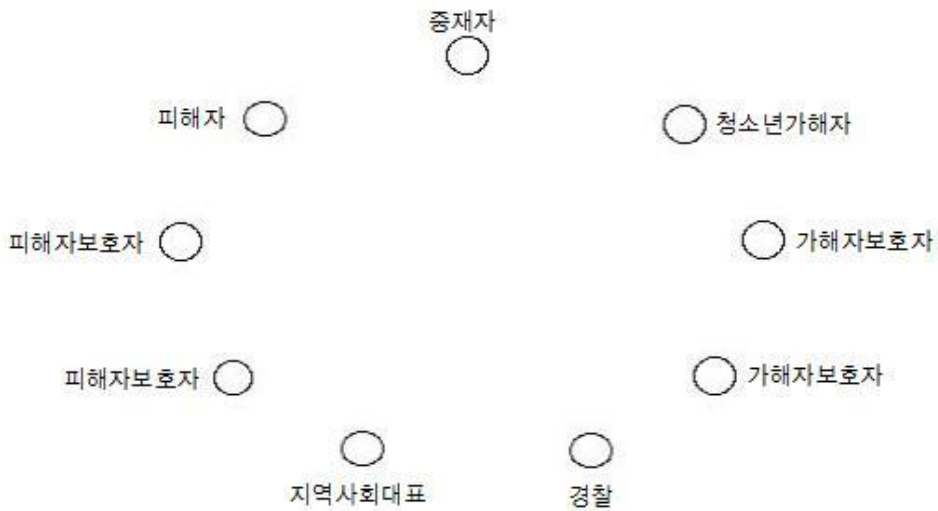
둘째, 스토리 텔링 단계(telling the story stage)에서는 진행자가 각 참석자를 소개하고, 회의 (conference)의 목적과 규칙을 설명한다. 이때 경찰관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 및 사실을 읽어주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도록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의 보호자, 가해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혹은 기관 대리인, 경찰관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가해 사실과 관련한 감정과 의견을 피력한다.

셋째, 전이 단계(transition stage)에서는 논의 초점을 과거(가해사실)에서부터 현재(피해 및

결과)로 옮겨 간다.

넷째, 동의 단계(agreement stage)에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다섯째, 종료와 재통합 단계(close and reintegration stage)에서는 참석자들이 각자 회의(conferece)를 평가하게 하고, 다과 및 음료를 먹으면서 합의서(agreement)에 서명을 하도록 하며, 상호간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한다.



* Department of Communities(2010: 114).

【그림 IV-1-2】 청소년 사법 회의(Youth Justice Conference) 좌석 배치도

6) 요약 및 시사점

1989년 뉴질랜드에서는 최초의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e)가 진행되었고, 동년 호주에서는 존 브레이스웨이트(John Braithwaite)가 재통합적 수치 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을 제시하였다. 실증 사례와 이론을 결부시켜 회복적 정의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한 호주는 초기 경찰 주도형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운용하다가 이후 경찰 및 법원의 이원화된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되었다. 호주의 회복적 정의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경찰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청소년 사법(Youth Justice Act 1992, 1997), 청소년 범죄자 법(Young Offender Act 1993, 1994, 1997),

형(회복적 정의)법(Crimes (Restorative Justice) Act 2004) 등을 통하여 회복적 정의 제도를 구체화 하였고, 법원의 역할도 강조하게 되었다.

영국의 검사 주도형 회복적 정의 제도와 비교하여, 호주의 제도는 경찰 주도 형이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비행 및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형사사법제도로 진입하기 전에 보호하고 처분하려는 시각이 담겨있다. 즉,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이전에 전환전문 경찰관(Police Diversion Officer)이 스스로 판단하여, 청소년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부 및 형사사법 당국의 정책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국내의 경우 최근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가 신설되었고, 교육부는 해마다 학교폭력 등과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청소년의 문제는 경찰에게 떠넘김으로써 전과를 가진 청소년을 양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오히려, 호주의 경우처럼, 가급적이면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비행 및 경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고 처분하는 방안으로 회복적 정의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범 청소년을 양산하지 않고 대신 가해에 대한 책임성을 경험하게 하여 재범을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다만, 회복적 정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사법 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당사자 주도형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뉴질랜드²⁴⁾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뉴질랜드의 회복적 정의 제도는 마오리(Maori) 부족의 갈등 및 문제 해결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청소년이 문제를 유발하였을 때, 마오리(Maori)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 및 부족 모두의 참여하에 피해 및 가해 행위에 대한 해결을 논의한다(Morris & Maxwell, 1998: 4). 특히, '와나우 (whanau, 공동의 조부모)', '하푸 (hapu, 이웃사촌)', '이위 (iwi, 부족)'을 포함하는 공동체가 가해 및 피해에 대해 의논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풍습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행위는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Morris & Maxwell, 1998: 5).

이러한 전통적인 제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시작되면서 소멸하였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마오리(Maori)의 전통적 제도는 영국의 형사사법제도와 혼합되어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 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²⁵⁾에 포함되게 되었다(Maxwell & Morris, 2006). 동법은 뉴질랜드의 청소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O'Driscoll, 2008: 55), 청소년 법원>Youth Court),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e), 가해청소년에게는 책임감(accountability)을, 피해청소년에게는 보호와 피해회복을 강조한다.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24) 뉴질랜드 사례는 문헌연구와 국외출장 방문기관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특히 뉴질랜드를 국외 출장 대상국가로 선정된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실천모형을 적극적으로 적용(약 70%)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심층면담 대상자는 NZ Police/ Counties Manukau Police District/Youth Services의 District Coordinator(Senior Sergeant), Prison Fellowship New Zealand의 facilitator, Ministry of Education/Sector Enablement and Support의 Manager, Hopsonville Point Secondary School의 Principal 등 4명이다.

25) 이 법률의 제정 동기는 당시 마오리전통을 존중하는 진보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영국의 사법제도가 마오리족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현 정권에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복적 정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전건 회복적 사법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 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이 법률은 마오리(Maori) 부족의 전통적 제도를 융합하여, 뉴질랜드의 청소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제공한다. 특히, 1) 토착부족의 권리와 필요를 고려해야 함, 2) 가족이 가해/피해 청소년에 대한 결정의 중심임, 3) 가해 청소년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4) 피해자는 가능한 처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5) 의사결정은 공동체의 합의제에 따름 등의 특징은 전형적인 공동체적 대응 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O'Driscoll, 2008: 56). 또, 이 법령은 가족집단 협의(family group conference)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며(Section 20 - 38), 소년 법원(Youth Court)의 판사가 갖는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의 권리 법(Victim's Rights Act 2002): Section 9(1)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기 용이한 자 (경찰, 가해자의 변호사, 법원 직원, 보호관찰관, 검사 등)가 피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함 (Meeting to resolve issues relating to offence if a suitable person is available to arrange and facilitate a meeting between a victim and an offender to resolve issues relating to the offence, a judicial officer, lawyer for an offender, member of court staff, probation officer, or prosecutor should encourage the holding of a meeting of that kind)”이라고 규정하면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Section 9(2)에서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Section 10에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판결 법(Sentencing Act 2002): Section 8에서 “가해자를 처분하는 판결의 원칙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회복적 정의 절차 및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principles of sentencing in sentenc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an offender, the court must take into account any outcomes of restorative justice processes that have occurred, or that the court is satisfied are likely to occur, in relation to the particular case)”라고 규정함으로써, 판사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처벌 및 피해회복 등의 결과들을 판결에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교정 법(Corrections Act 2004): Section 6에서 수형자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가석방 법(Parole Act 2002): Section 7에서 “가석방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guiding principles when making decisions about, or in any way relating to, the release of an offender, one of the principles that must guide the Parole Board’s decisions is that the right of the victim are upheld, and victims’ submissions and any restorative justice outcomes are given due weight)”라고 규정하여, 재소자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보상 및 회복적 정의를 통한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Section 35(2)에서는 가택 연금 (Home detention) 처분 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고려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1) 학교절차에서의 프로그램

뉴질랜드 학교의 회복적 정의는 교육부의 PB4L(Positive Behavior for Learning) Team에서 추진하고 있는 PB4L Program의 일환이다. PB4L은 학교교육이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PB4L은 학생, 부모, 교사, 리셉셔니스트, 청소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PB4L팀에서는 위기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성적인 문제나 폭행, 기물파괴 등의 사건이 있으면 바로 투입되고 있다. 어느 학교나 언제나 전화해서 위기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위기팀은 학교지원과 학생지원의 2개 섹션으로 나뉘는데, 학교지원섹션은 발견, 법적지원, 가이드라인 제시·감독(가이던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학생지원섹션은 심리학자와 행동장애전문가가 학생 개개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섹션은 상호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 투입하기 전에 사회개발부(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아동청소년가족국(Child, Youth and Family) 및 경찰과도 사전에 협력하고 있다.

PB4L은 기존의 처벌적 처우에서도 긍정적 처우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회복적 정의 또한 PB4L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법처우 단계에서는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²⁶⁾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

26) 회복적 실천의 의미에 관해 심층면담 대상자인 중학교 교장에게 질문한 결과, ‘회복적 문제해결방식’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는 나름대로 회복적 실천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²⁷⁾ 진행방법이 제각각이라 교육부에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웰링턴 인근의 1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사법절차에서의 프로그램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절차의 프로그램은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e)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협의에는 피해자 및 가족, 가해자 및 가족, 청소년 지원 공무원(Youth Aid Officer)가 반드시 참석하고, 경우에 따라 학교 교사가 참석하기도 한다. 사회개발부(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아동청소년가족국(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에 소속된 공무원인 청소년 사법 조정자(Youth Justice Coordinator)가 가족회합의 진행을 담당해 조정자 역할을 한다. FGC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첫째,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인정함(plea guilty)

둘째, 판사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전환(referral)

셋째, 회복적 정의 촉진자(Restorative Justice facilitator)²⁸⁾의 가해자 평가

넷째, 회복적 정의 촉진자의 피해자 평가

다섯째, 회복적 정의 conference 개최

여섯째,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결과 보고

뉴질랜드에서 중재(mediation)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Ministry of Justice, 2011: 19). 첫째, 중재(mediation)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둘째,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중립적 절차이다, 셋째, 가해자가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해자가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넷째,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27) 뉴질랜드에서 방문한 중학교에서는 회복적 절차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단계: 경계 → 2단계: 간단 대화(Mini Chat) → 3단계: 회복적 정의 미팅 → 4단계: 학습그룹 미팅 → 5단계: 회복적 회합”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2단계까지는 어떤 교사나 다 진행할 수 있지만, 3단계~5단계까지는 소수의 훈련된 교사만 가능하다고 한다.

28) 사법절차에서의 회복적 정의 진행자는 사회개발부에서 양성하는 청소년 사법 조정자(Youth Justice Coordinator)이지만, 학교에서의 갈등중재나 재판에서도 가피해자 평가와 같은 실무는 주로 민간교육자가 양성하는 회복적 정의 촉진자(Restorative Justice facilitator)가 담당한다.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미국, 영국, 호주와 비교하여, 뉴질랜드에서 회복적 정의는 전환(diversion)의 일환(Ministry of Justice, 2011: 17)으로 형사사법제도(특히, 법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 및 범죄 청소년 적발 시 전환전담 경찰(PDO, Police Diversion Officer)은 다음의 조치를 치할 수 있다: 1) 경고(street warning), 2) 청소년 지원 부서>Youth Aid Section)로 이첩, 3) 가족집단협의로 청소년 지원>Youth Aid for a family group conference)(Morris & Maxwell, 1998: 2). 첫 번째, 경고의 경우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초범 청소년에 적용 되며, 두 번째, 보다 중요한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청소년 전담 경찰부서인 청소년 지원 부서>Youth Aid Section)로 해당 청소년을 이첩한다. 청소년 지원 부서>Youth Aid Section)는 경고를 줄 수도 있고, 부모 참여하에 공개적 사과나 사회봉사 같은 처벌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서 해당 청소년이 법원의 처벌을 받기를 원할 경우, 경찰은 가족집단협의로 청소년 지원>Youth Aid for a family group conference)을 선택한다. 이 경우 반드시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e)가 진행된 이후에만 법적 처벌 절차가 시작된다. 즉, 경찰은 청소년을 현장에서 체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 청소년을 법원으로 인계할 수 없고, 판사는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e)가 개최되기 이전에는 가해 청소년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비행 및 범죄 발견 시 경찰은 독자적으로 전환(diversion)을 시행하여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가해 청소년을 이첩할 수 있고, 판결 법(Sentencing Act 2002)에 따라 판사는 판결 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 교정기간 동안 교정 법(Corrections Act 2004)에 따라 교정기관은 재소자에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정 후 가석방 법(Parole Act 2002)에 따라 가석방자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형사사법 제도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특징이 있다.

5) 우수사례

(1) Prison Fellowship New Zealand의 속죄나무(Sycamore Tree) 프로그램²⁹⁾

수형자들을 원조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Prison Fellowship New Zealand의 속죄나무 프로그램은 뉴질랜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은 선고 후에 교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게 됨으로써 반성을 하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도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린 시절의 나쁜 환경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적 해결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게 되고, 프로그램 진행은 교도소에서 가해자 한명과 피해자 여러 명이 참석하고 이 단체의 자원봉사자인 회복적 정의 촉진자(Restorative Justice facilitator)가 진행을 하게 된다. 30년 전 어린 아이를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살인자가 출소를 1년 앞두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과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자신이 출소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바로 회복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왕겨누이 지역사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Wanganui Community-Managed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³⁰⁾)

1999년 7월 경찰,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대표자들과 함께 회복적 정의 위탁 사업체(Restorative Justice Trust)를 결성함으로써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패널(communitiy panel)을 포함한 티마루의 프로젝트 회귀 모델(Timaru's Project Turnaround model)을 기반으로 하였다. 초기에는 17세부터 25세 사이의 가해자를 중점으로 운용되다가 이후 나이 제한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JR 맥켄지 신탁(JR McKenzie Trust), 왕겨누이 지역사회 신탁 은행(Wanganui Community Trust Bank Trust), 왕겨누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 의회(Wanganui Safer Community Council)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2000년에는 뉴질랜드 국무총리와 내각의 부

29) Prison Fellowship New Zealand의 facilitator와의 인터뷰 및 내부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30) Paulin, Judy., Kingi, Venezia, & Lash, Barb.(2005). The Wanganui Community-Managed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An Evaluation. Ministry of Justice.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산하 범죄예방 부서(Crime Prevention Unit (현재는 Ministry of Justice 산하 기관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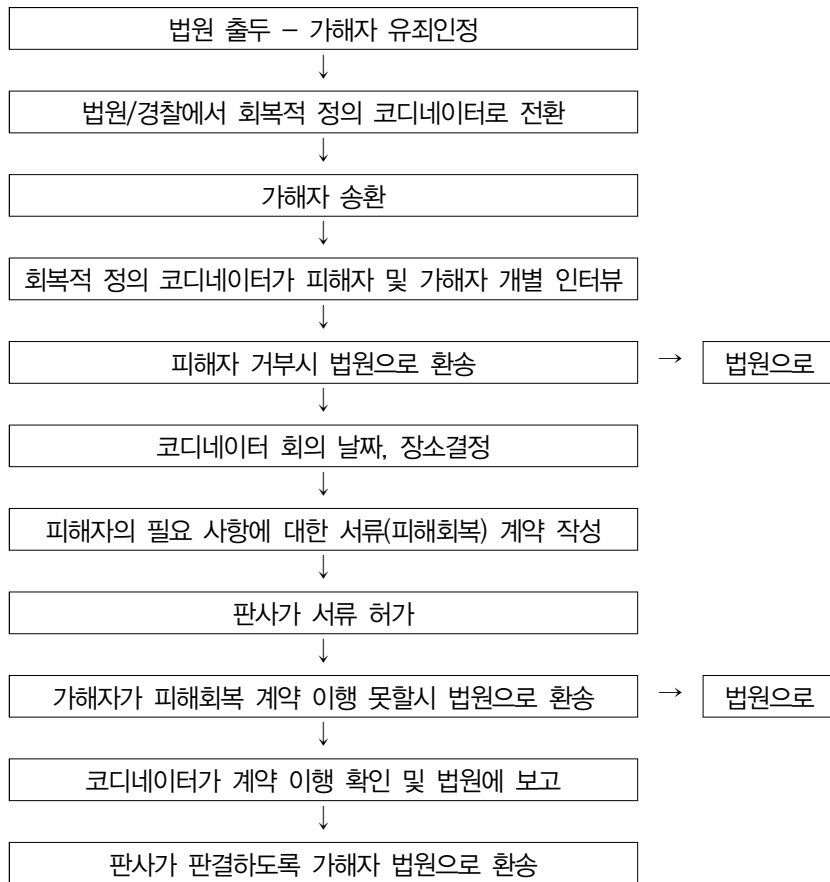
-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 (혹은 대리인)가 참여할 경우에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셋째, 지역사회의 의견을 고려한 피해자-가해자의 피해회복 협상이 회복적 기능을 갖도록 한다.
- 넷째, 프로그램이 형사사법기관(경찰, 법원, 피해자지원 기관 등)로부터 수용되도록 한다.
- 다섯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의 재범율이 낮아지도록 노력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역사회패널(community panel)이 갖는 역할이다. 지역사회패널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미팅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며,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서 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를 위한 재활, 상담, 직업 프로그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지역사회패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첫째,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의 복지(welfare) 유지/개선
-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도출된 결과를 수궁하고 받아들이도록 유도
- 셋째, 프로그램 전반이 건설적이며 편안하게 진행되도록 함.
- 넷째, 모든 참여자들의 개인신상정보 보호

비록, 지역사회패널 구성원의 선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사회의 행정 및 현황을 잘 알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사회단체, 교육단체, 형사사법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발한다.

다음의 <그림 IV-2-1>은 위탁(referral) 과정과 구체적인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 Paulin, Judy., Kingi, Venezia., & Lash, Barb. (2005: 20)

【그림 IV-2-1】 왕겨누이 지역사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전환절차

6) 요약 및 시사점

마오리(Maori) 부족의 전통적 문제 해결 제도는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행위에 대응함에 있어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마을의 공동 조부모, 이웃사촌, 부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체조직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행위가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판단에 의거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며, 따라서 공동체가 직접 대응한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뉴질랜드 역시 청소년 비행 및 범죄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청소년 형사사법제도의 비효과성이 비판되어졌다. 결국 1989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 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에 전통적인 마오리(Maori)

부족의 형사사법제도가 가미됨으로써 회복적 정의 제도 구축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권리 법(Victim's Rights Act 2002), 판결 법(Sentencing Act 2002), 교정 법(Corrections Act 2004), 가석방 법(Parole Act 2002) 등을 통하여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회복적 정의 제도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문가 집단의 개입보다는 가족 구성원(크게는 부족)에 의한 의사결정이 강조 된다는 것이다(Morris & Maxwell, 1998: 4). 즉,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청소년 및 청소년의 가족, 가족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지역사회 패널리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사회패널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담당하거나, 주요 의견 제시 등을 통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대신 지역사회패널은 피해자나 가해자,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한 보호 조치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즉, 청소년 개인이 저지른 비행이나 범죄 행위는 가해 청소년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가정과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청소년은 가정과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애착(attachment)은 재범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패널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피해자나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결국 가해 및 피해 청소년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결국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국내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가해자, 피해자, 그들의 가족, 선생님, 경찰 등이 참여하여 학교폭력 행위에 대응하지만, 결국 그 위원회의 가장 큰 무기가 전학조치라는 것을 볼 때, 국내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시각은 공동체의 재통합적(reintegrative)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 청소년을 제거(cast away)하는 거부적인(rejective) 대응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국내에서도 과거 동네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어른들과 공동체가 직접 나서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현대화라는 물결 속에 우리 고유의 공동체 의식과 제도가 희석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겠다. 국내 회복적 정의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뉴질랜드의 마오리(Maori) 부족의 전통적 제도가 현대화된 영국의 형사사법제도와 통합되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제도로 탄생되는 과정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3. 미국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해당하는 2006년에 최초의 피해자-가해자 회의(confERENCE)가 개최되었다.³¹⁾ 피해자는 코너 씨(Ms. Connors)로 자신의 딸이 두 괴한에 의해 사망하였다. 피해자-가해자 회의 이후 코너 씨(Ms. Connors)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뉘우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매사추세츠 주에는 다양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당시까지만 하여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 대면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었다(Berastain, 2013: 1).

비록, 현재까지도 미국의 연방법(U.S. state codes)에는 회복적 정의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Clute, 2011: 1),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은 주법(statutes)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협의와 논의과정을 통하여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개선한 결과, 2008년경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주법(statutes)에 균형적 정의(balanced justice), 회복적 정의, 혹은 균형/재통합적 정의(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형 조항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범죄 및 비행행위에 대응하고 있다(Pavelka, 2008: 110).

회복적 정의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 또는 균형적 정의(balanced justice)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 회복적 정의는 범죄나 비행에 있어서 다소 관대한(lenient) 사법적 대응으로 여겨지지만(Taylor, Fritsch, Caeti, 2007: 36-43), 범죄 및 비행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처벌적(punitive) 접근이라고 하겠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청소년형사사법제도(juvenile justice system)는 비행 청소년과 청소년범죄에 대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비행 및 범죄청소년에 대한 몇 가지 전제(assumption)와 시각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급증하고 있던 청소년 범죄 및 비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음의 기존 전제와 시각들이 거부되어졌다(Taylor, Fritsch, Caeti, 2007: 40).

31) 본 사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restorativejustice.org/RJOB>

- ① 청소년은 범죄의도(meas rea, guilty mind, criminal intent)를 가질 수 없다,
- ② 청소년은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다,
- ③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 요인들에 기인한다,
- ④ 국가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parens patriae),
- ⑤ 청소년 비행 및 범죄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적법절차(due process)가 덜 중요하다,
- ⑥ 청소년 형사사법제도는 다양한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의 원인을 고려하기 위해서 더 큰 폭으로 자유재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형사사법제도는 청소년 범죄 및 비행에 대한 기록을 완벽하게 비밀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청소년 형사사법제도의 목표는 비행 및 범죄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시각 변화는 1996년에 만들어진 균형적인 청소년 정의 그리고 범죄 예방 법(Balanced Juvenile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Act)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청소년형사사법 모형에서 적법절차모형(due process model)으로 전환된 시기 동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전제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바라보고 처리하였다면, 1996년의 균형적인 청소년 정의 그리고 범죄 예방 법(Balanced Juvenile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Act)는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처벌적 청소년형사사법 모형(punitive model)을 기초로, 청소년의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며 나아가 피해회복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균형적 정의(balanced justice)는 청소년을 지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성숙한, 범죄의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은 근원적으로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해야 함을 강조한다.

균형적 정의(balanced justice)는 범죄 문제를 손익(cost & benefit)분석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최대의 이익(benefit)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Rosenberg & Mark, 2011: 1-2). 이러한 시각이 미시적으로 개별적 청소년 문제에 적용될 경우에는,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행위는 자기 자신들의 선택에 기인하여, 그 행위에 따른 피해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들이 지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균형적 정의(balanced justice),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이전의 전통적 청소년형사사법 모형이나 적법절차 모형보다 더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실질적인 처벌은 지역사회기반 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 봉사(social service) 등과 같은 개방형 처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재활(rehabilitation) 및 재통합(reintegrative)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다음의 <표 IV-3-1>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IV-3-1 균형적 및 회복적 정의의 원칙

균형적 및 회복적 정의의 원칙
1. 범죄는 피해이다.
2. 범죄는 피해자,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에 피해를 주며, 회복을 위한 의무를 가져온다.
3. 원하는 피해자,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은 범죄에 대응하는 일부분이어야 한다.
4. 피해자의 관점은 범죄로부터 야기된 해에 대해 어떻게 회복할지를 결정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
5. 청소년 범죄자의 책임은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6. 지역사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웰빙에 대한 책임이 있다.
7.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
8. 해에 대한 복원 또는 회복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은 청소년 정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다.
9. 결과는 얼마나 많은 처벌이 가해졌는지 보다 얼마나 많은 회복이 되었는지로 측정된다.
10. 범죄통제는 사회의 참여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11. 청소년 정의 과정은 문화와 배경의 차이(인종, 민족, 지리적, 종교적, 경제적, 나이, 능력, 가족 지위, 성)를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보호와 적법절차를 받게 해야 한다.

*Pranis, K. (1998: 5). Guide for Implementing 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Model.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이상의 원칙에서 나타나듯이, 범죄는 피해(injury)로 이해되고, 이러한 피해의 회복은 반드시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회복시키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균형적 및 회복적 정의는 이 중에서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피해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회복적 정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균형적 및 회복적 정의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청소년 가해자의 인격과 이성성(rationality)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성 인식(taking responsibility)을 강조하며, 청소년 형사사법의 핵심 목표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 회복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예를 들어, 인종, 지역, 종교, 경제적 상태, 나이, 능력, 가족관계, 성적 지향 등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보호와 적법절차를 적용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 형사사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은 피해가 얼마나 회복 되었는지로

측정된다.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이처럼, 새로운 철학적 법정신 및 시각이 청소년 범죄 및 비행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각 주법(statutes)에는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회복적 정의 모델이 포함되게 되었다.³²⁾ 첫째, 균형적 접근(balanced approach), 둘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셋째, 회복적 프로그램(restorative program), 넷째, 균형적 및 회복적 정의(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첫째, 균형적 접근(balanced approach)의 내용이 포함된 7개 주의 주법들은 공통적으로 균형적 사법이 강조하는 세 가지 원칙, 책임성(accountability), 지역사회 안전(community safety), 자기 개발(competency development)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리건(Oregon)주의 주법은 균형적 사법의 원칙은 “개인의 책임, 그리고 공공안전의 맥락 안에서의 개혁 그리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personal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reformation within the context of public safety and restitution to the victims and to the community) (419C.001)”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코네티컷(Connecticut) 주법 Section 46b-121h는 청소년 형사사법의 목적은 “법을 위반한 청소년에게 공공의 안전과 일치하는 관습 안에서 개별화된 감독, 돌봄, 책임, 그리고 치료의 제공(provide individualized supervision, care, accountability and treatme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public safety to those juveniles who violate the law)”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모델을 포함하는 8개 주의 법령들은 대체로 회복적 정의관련 용어들을 포함하는데,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사법 절차에 포함,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 지불하는 의무,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는 능력 개선 (holding juvenile offenders accountable for their offense, involving victims and the community in the justice process, obligating the offender to pay restitution to the victim and/or a victims' fund, improving the juvenile's ability to live more productively and responsibly in the community and securing safer communities” 등이 있다 (Pavelka,

32) 네 가지 형태에 따른 주 법령 분석은 Pavelka (2008)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함.

2008: 100)). 대표적인 주들은 콜로라도(Colorado) (CRS Section 19-2-102), 몬타나(Montana) (MCA 2-15-2013) 등이 있다.

셋째, 회복적 프로그램(restorative program)에 중점을 둔 주법들은 특정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Minnesota)의 주법 Ch. 611A.775에는 피해자-가해자 중재(mediation)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고, 버몬트(Vermont)의 Title 28910a에는 회복 위원회(Reparative Boards)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메인(Maine)주의 Title 17-A:1204-A에는 지역사회 회복 위원회(Community Reparative Boards) 규정이 있다.

넷째, 균형적 및 회복적 정의(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모델을 동시에 포함하는 16개 주의 주법들은 청소년 범죄 및 비행과 관련하여 가장 폭넓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법 42 PA CSA Section 6301의 경우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to provide for children committing delinquent acts programs of supervision, care, and rehabilitation that provide balanced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community, the imposition of accountability for offenses committed,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ies to enable children to become responsible and productive members of the community”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감시·감독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균형적 방안을 제공하며, 가해 청소년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책임감 있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법령은 뉴 저지(New Jersey)(P.L. 2002 Title 2A:4A-21), 알래스카(Alaska)(Sec. 47.12.010) 등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표 IV-3-2 회복적 정의 유형별 프로그램

유형	구체적 프로그램 및 활동
써클(Circle)	이 유형에 속하는 활동들은 모든 구성원(예를 들어, 학교, 반 등)들이 특정 문제(issue)와 관련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통하여 합의점(consensus)을 찾아가는 활동을 말한다. 학급(반), 학교위원회, 교직원 등의 구성원들이 지정된 장소(예를 들어, peace area)에서 사안에 대해 솔직한 심정과 의견을 제시함. 다음의 단계를 거침: 범죄자 서클에 지원(application by the offender to the circle) 피해자를 위한 치유 서클(a healing circle for the victim)

	<p>범죄자를 위한 치유 서클(a healing circle for the offender)</p> <p>양도 동의를 요소에 대한 합의를 발전하기 위한 양도 서클(a disposition circle to develop consensus on the elements of a disposition agreement)</p> <p>follow-up circle to monitor</p>
관계연습(Relational Practices)	<p>이 유형의 활동들은 학생, 교사, 부모 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학교교실, 학교에서 상호관계를 형성해 나가느냐에 중점을 둠. 따라서 학생들 사이, 교사들 사이, 학부모 및 직원들 사이의 관계형성에 주의를 기울임.</p>
또래중재, 또래배심원(Peer Mediation /Peer Jury)	<p>이 유형의 활동들은 피해-가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소년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가해 사실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하는 활동들을 포함함. 대표적인 형식이 Peer Jury 혹은 Teen court라고 불러 짐. 이러한 활동으로 도출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음:</p> <p>피해자에 재정 보상(Financial restitution to victims)</p> <p>피해자에 개인적 서비스(Personal services to victims)</p> <p>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p> <p>글 또는 말로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사과(Written or verbal apology to victims and other affected persons)</p>
회복적 대화 및 회의(Restorative conversation and conference)	<p>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형태로, 가해자, 피해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가해사실과 피해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말함.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음:</p> <p>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FGC))</p> <p>피해자-가해자 중재와 대화(Victim-Offender Mediation and Dialogue)</p> <p>피해자 또는 지역사회 영향 패널(Victim or community impact panels)</p>
후속활동(Follow-up / Continuing activity)	<p>가장 중요한 유형중 하나이지만 가장 많이 간과되고 있는 유형인 follow-up 프로그램들의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음:</p> <p>follow-up circle</p> <p>follow-up conference</p> <p>또, 지속적인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그룹이 직접 참여하여 피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을 교육함으로써 범죄에 따른 피해의 해악을 교육함. 대표적인 프로그램은:</p> <p>피해자 공감 그룹(Victim Empathy Groups or classes)</p>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1998)과 Ashley, Jessica., & Kimberly Burke.(2006)을 전체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복적 정의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확일적으로 전국단위에서 실시되거나 법령으로 정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혹은 피해의 유형에 맞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이 임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특정한 회복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 사례는 없고, 대신 활동의 중점 사항들을 기준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IV-3-2>는 회복적 정의 관련 프로그램과 그것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물론, 이 표에 나타난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의 유사점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기존의 전통적 형사사법 모델은 범죄나 비행행위를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간주하였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형사사법 모델은 범죄나 비행행위가 한 개인(혹은 다수)에 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가해자에 의한 개인(혹은 다수)의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형사사법 제도가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에 앞서 가해 및 피해 당사자간의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형사사법체계와 병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보편적으로, 청소년 형사사법 절차가 판결(선고, adjudication) 직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재량에 따라 가해자를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킨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절차는 주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가장 포괄적으로 회복적 정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콜로라도(Colorado)의 주법 Title 19, Art. 2, Part 2, Sec. 19-2-213은 회복적 정의 운용 위원회(Restorative Justice Coordinating Council)를 설립하고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 위원회를 주법원행정처(Office of the State Court Administrator) 산하 주법원(State Judicial Department)에 설립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위한 중앙 정보저장소, 관련분야 교육 및 훈련소, 회복적 정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연구소”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모든 정보를 기록·보관하며, 회복적 정의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며,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버몬트(Vermont) 주의 주법 Title 28. 910a, Title 3, 3085c는 회복적 정의 제도를 성립하고 운용하는 것을 경찰(law enforcement officials)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경찰이 가해 행위(criminal acts), 법원 처분(court diversion), 판결(sentencing), 교정기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대한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플로리다(Florida)의 주법 이웃 회복적 정의 법(Neighborhood Restorative Justice Act

Ch.985.155)는 주 검사(state attorney)에게 회복적 정의 위원회(Restorative Justice Boards)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원 5명 중 2명은 검사가, 2명은 변호사가, 1명은 순환법원의 판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초범 비폭력적 청소년 범죄자(first-time nonviolent juvenile offender)에 한하여 모든 법적 처리 절차에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이웃 회복적 정의 센터(Neighborhood Restorative Justice Centers)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초범 비폭력적 청소년범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집행하고 위원회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5) 우수사례

공동의 예술 프로그램(Mutual Arts Program) (Philadelphia, PA)³³: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모델 중 하나로 여겨지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 (Pavelka, 2008: 103),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시에는 공동의 예술 프로그램(Mural Arts Program)이 운영되고 있다. 공동의 예술 프로그램(Mural Arts Program)은 예술가와 지역사회 구성원을 전통적인 벽화 제작(mural-making) 방식(벽 쌓기, 상부상조와 유사)을 통하여 연결하고, 서로 협력하여 공공지역의 환경 및 개인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동의 예술 프로그램(Mural Arts Program)은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회복적 정의 제도를 사회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와 상호 융합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교정처우(특히, 개방형 처우)를 결합하여 실현한 사례이다. 즉, 프로그램 운영자는 교정당국과 협의하여 현재 수용자(inmates),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대상자(probationers and parolees), 비행 및 범죄 청소년(juvenile delinquents)에게 회화(painting) 기술을 교육시키고, 지역사회의 원조와 동의를 얻어, 허물어지거나 낡은 벽을 보수하고 그림(벽화)을 그리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 들과 협력하는데 대표적인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필라델피아 시 청소년 폭행 감소 파트너십(City of Philadelphia Youth Violence Reduction Partnership)

33) 공식 홈페이지: <http://muralarts.org/>

- 펜실베이니아 교도소 사회(Pennsylvania Prison Society)
- 필라델피아 인간 서비스 부(Philadelph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필라델피아 교도소 시스템(Philadelphia Prison System)
- 성 가브리엘 시스템(St. Gabriel's System)
- 그레이트포드 주립 교정 기관(State Correctional Institution at Graterford)

6) 요약 및 시사점

1980년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적법절차모형(Due process model)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청소년에 대해 보호적이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던 분위기는 청소년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가해행위와 피해 행위 사이의 손익분석을 통해 정당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균형적 정의(balanced justice)라고 일컬어지면서, 1996년 Balanced Juvenile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Act로 재정되게 되었다. 균형적 정의는 청소년을 지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성숙한, 범죄의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은 근원적으로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해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정책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정신과 시각을 바탕으로 미국의 각 주법(statutes)에는 균형적 정의, 회복적 정의가 독립적으로 혹은 혼합적으로 가미되어 재정되었고, 보편적으로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지역사회 안전(community safety),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 개발(competency development)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미국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방자치행정 특성 상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획일화 되지 않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 지역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 가해 및 피해를 바라보는 시각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획일화 되지 않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령에서는 회복적 정의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절차, 기구 및 참여인력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학교 및 형사사법기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은 국내의 회복적 정의 제도 구축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또한, 미국의 회복적 정의 제도에서 경찰이나 검찰, 판사의 역할은 중재자(mediator), 촉진자

(facilitator)이지 회복적 정의 제도 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자가 아니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즉, 모든 유형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서 형사사법 기관 혹은 형사사법기관의 대표자가 갖는 권한은 최초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가해 청소년을 전환(referral)하는 것뿐이다. 이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은 중재자 혹은 촉진자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인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 논의를 활성화하고 의견조율을 시도하며, 피해회복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판사나 검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들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의 권한이 막대하며, 또 교육부와 같은 국가 기관이 청소년 비행 및 범죄문제에 적극개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획일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개별적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지역별로 특성화되고 개별적이며 형사사법 기관 주도가 아닌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가족, 지역사회 등) 주도형 회복적 정의 제도는 국내 회복적 정의 제도 구축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4. 영국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영국의 청소년 형사사법제도와 법령들의 발전은 19세기 후반, 청소년(어린이를 포함한)이 피해입기 쉬운 사회적 그룹(vulnerable social group)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Lancey, 2012: 12). 당시 청소년들은 성인 교정기관에 수감되었었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이 성인 교정기관에서부터 청소년 교정기관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3년부터 1969년까지 보건성(Ministry of Health)은 청소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사법 정책(youth justice policy)을 확립하였다(Pitts, 2003: 50). 1969년에는 노동부(Labour government)가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를 만들어 청소년 법원(junvenile court)가 비행 및 범죄청소년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였고(Rutter & Giller, 1983: 34), 1994년 형사 사법 그리고 공공질서 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는 안전한 교육 센터(Secure Training Center)를 설립하여 12-14세의 비행 및 범죄청소년들을 수감하고 훈련시키도록 하였다(Hagell & Newburn, 1994: 78).

하지만, 1990년대에 경제적, 효율성 등을 강조하였던 신제도주의적 접근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들이 나타났는데, 1996년 회계감사 위원회(Audit Commission)은 영국의 청소년 형사사법제도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비경제적이라고 비난하였고(Audit Commission, 1996; 2-3), 1997년 Home Office는 청소년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였다(Home Office, 1997; 2-4). 특히, 1997년의 Home Office 보고서, No More Excuse 백서에서는 처음으로 회복적 원칙과 전환명령(referral orders)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제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에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이 재정되게 되었고, 이 법률은 경찰, 보호관찰,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연합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문제 팀(Youth Offending Teams(YOT))를 설립하게 하였다.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 검사 법규(Code for Crown Prosecutors 1985): 검사가 성인범 및 청소년범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의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Section 7-1에서는 “화해에 의한(재판에 의하지 않은) 처리는 만약 범죄의 결과, 심각성, 범죄자의 대응이 적절할 하다면 법원에서 기소를 대신할 수 있다.(An out-of-court disposal may take the place of a prosecution in court if it is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offender and/or the seriousness and consequences of the offending)”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7-2에서는 단순 경고 (simple caution) 혹은 조건부 경고 (conditional caution)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범죄 그리고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Labour Party)에 의해 제정된 이 법률은 다음의 세 가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1) 배상 명령(Reparation Order), 2) 행동 계획 명령(Action Plan Order), 3) 감독 명령(Supervision Order). 회복 명령(reparation order)은 법원이 비행 및 범죄 청소년이 피해에 대한 회복활동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행동 계획 명령(Action Plan Order)는 특정 상황에서 비행 및 범죄청소년이 피해 회복활동을 위해 특정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감독 명령(Supervision Order)는 비행 및 범죄청소년이 피해회복 활동을 하는지 감시/감독 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 청소년 사법 그리고 범죄 증거 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의무적 선고(mandatory sentence)로서 전환명령(referral order)을 제시하고, 법정출두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법정출두 대신 청소년 범죄자 패널(Youth Offender Panel)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청소년 범죄자 패널(Youth Offender Panel)의 구성원은 가해자, 가해자의 가족 혹은 보호자, 가해자에 대한 지지자,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그리고 3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이다. 청소년 범죄자 패널(Youth Offender Panel)의 구성원들은 가해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고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동법은 2002년 영국 및 웨일즈 지역 전역에 적용되었다.

○ 형사 법원의 권한 법(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동법에 2013년 범죄 그리고 법원 법(Crime and Courts Act)의 Part 2 of Schedule 16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판사가 재량에 따라 판결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형사 사법 그리고 이민 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청소년에 대한 조건부 경고(conditional caution)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수정된 피해자 법률(Revised Victims Code 2013): 기존의 피해자 법률인 Victims Code에 추가적으로 회복적 정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피해와 이에 대한 회복적 접근을 강화하게 되었다.

○ 조건부 경고(Conditional Cautioning): 형사 사법 법(Criminal Justice Act 2013): 조건부 경고(Conditional cautioning)는 보편적인 법원 처리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의 상황에 적합한 사법처리(suitable disposal)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이 실행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검사가 재활적(rehabilitative) 혹은 회복적(reparative) 조건(condition)을 선호할 경우, 조건부 경고(conditional caution)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가해자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원래의 처벌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법 2조 5항에는 회복적 정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면대면, 전화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한 상담 조치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회복적 정의 절차는 조기 처분에 반하여 회복적 방법들을 활용하는 장점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상담 및 회의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 회복적 정의 과정(direct or indirect restorative justice processes), 2) 지역사회 회의(community conferencing), 3) 전환 명령 패널(referral order panels), 4) 중재(mediation.³⁴⁾)

(1) 직접적 또는 간접적 회복적 정의 과정(Direct or indirect restorative justice processes)

대체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토론한다. 이때 촉진자(facilitator)는 경찰, 정부기관 관계자, 검사, 판사, 혹은 보호관찰관 등 누구든 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면대면(face-to-face)으로 만날 경우를 직접적(direct) 회복적 정의 절차라고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지만 촉진자가 둘 사이에서 셔틀 중재(shuttle mediation) 역할을 할 경우를 간접적(indirect) 회복적 정의 절차라고 한다.

(2) 지역사회 회의(Community conferencing)

이 형태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규모가 크며, 경찰이 주도하거나 법원의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 조직에 의해 진행된다. 이 형태는 피해자-가해자 중재(victim-offender mediation) 보다는 보다 폭넓은 목적을 갖는데, 가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

(3) 전환 명령 패널(Referral order panels)

법원으로부터 전환명령(referral order)을 받은 비행 및 범죄청소년은 패널 미팅에 참석하여 자신의 범죄/비행 행위와 원인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패널은 청소년 문제 팀(Youth Offending Team) 직원, 지역사회 구성원이 포함된다. 이때, 피해자 혹은 피해자 대변인이 패널 미팅에 참석하여 피해자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4) 중재(Mediation)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공정한(impartial) 제3자가 중재자로 개입하여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중재자는 적극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피해자

34)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www.cps.gov.uk

와 가해자가 주도한 피해회복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피해자-가해자 중재(Victim-offender mediation)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가 1)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2) 가해자와 피해자 공히 중재에 참여하길 원해야 하며, 3) 가해자 및 피해자가 공히 중재 절차 및 행위가 안전하다고 인식해야만 한다.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영국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형사사법 절차 중 어느 때이건 시행될 여지가 존재한다.³⁵⁾ 특히, 1985년의 검사 법률(Code for Crown Prosecutors)에 검사가 성인범 및 청소년범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다른 처분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사가 제시한 조건부 경고(conditional caution)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검사는 원래의 혐의(charge)를 바탕으로 기소(prosecution)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범죄 그리고 법원 법(Crime and Courts Act)의 Section 1ZA는 판사가 평결(유죄판결, conviction) 이후에도 판결(형에 대한 판결, sentence)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여,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활용될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5) 우수사례

Bristol RAI_S (Bristol, England)³⁶⁾: 학교에 대한 회복적 접근(RAI_S: Restorative Approaches in Schools)은 회복적 해결(Restorative Solutions)이라는 비영리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전학교적(whole school)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의 모든 직원에게 학교 내의 갈등과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회복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의 목적은 학교가 문제 발생 시 심각한 대응방법(extreme measures, 예를 들어 경찰 신고와 같은 형사사법 제도의 활용)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문제 상황을 근원적인 차원에서(grass-roots level) 해결하도록 권장된다. RAI_S 프로그램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35)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www.cps.gov.uk

36) Restorative Solutions. 공식 웹사이트: www.restorativesolutions.org.uk

- 심각한 왕따
-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형법 범죄
-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균열/불협화음/갈등
- 교실내의 갈등
- 결석/지각 등

6) 요약 및 시사점

19세기 후반 청소년에 대한 보호적 접근으로 활성화된 전환(diversion) 제도가 실효성을 의심 받으면서, 영국에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7년 Home Office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된 전환명령(referral order)은 회복적 정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더욱 발전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범죄 그리고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은 배상명령(reparation order), 행동 계획 명령(action plan order), 감독 명령(supervision order) 등을 포함하여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하게 하였다. 이후 청소년 사법 그리고 범죄 증거 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은 의무적 선고(mandatory sentence) 중 하나로 전환명령을 제시하였고, 청소년을 청소년 범죄자 패널(Youth Offender Panel)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수정된 피해자 법률(Revised Victims Code 2013)에는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에 대한 회복적 접근을 강화하기에 이르렀고, 2013년에는 조건부 경고(Conditional Cautioning): 형사 사법 법(Criminal Justice Act)가 발효되면서, 검사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검사 혹은 판사에 의해 개시, 운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조건부 경고(Conditional Cautioning): 형사 사법 법(Criminal Justice Act 2013)에는 검사가 재발적 혹은 회복적 조건을 선호할 경우, 조건부 경고를 부과하여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가해자가 조건부 경고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원래의 처벌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환 명령 패널(referral order panels)과 같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판사의 전환명령을 근거로 청소년 문제 팀(Youth Offending Team)직원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패널 미팅을 통하여 피해회복 및 가해 책임성 부여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이러한 특징들은 영국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이 형사사법제도에 종속적이며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형사사법제도의

개입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지만, 독자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검사나 판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전환명령(referral order)의 일부분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활용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분히 종속적이며 의존적이라고 하겠다.

미국과 영국이 영미법계의 중주국으로 판례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정의 제도의 실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동일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적 정의 제도는 해당 국가의 특수성과 법감정, 청소년에 대한 시각,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세 개의 회복적 정의 프로젝트를 평가하였다. Connet, Remedi, JRC(Justice Research Consortium) 등의 세 프로젝트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실험연구를 통하여 평가하고, 적용상의 문제점(prblems in implementation)이나 상황에 따른 절차 및 방법, 효과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동일한 법 체계에서 다른 성격의 회복적 정의 제도가 구축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국가적 정책 마련을 위하여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사전에 진행하였다는 점은 국내 회복적 정의 제도 구축에 큰 의미를 준다고 하겠다. 즉, 국내 회복적 정의 제도 구축도 해외의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국내의 특수한 성격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설계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증한 후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5. 독일³⁷⁾

1) 회복적 정의 연혁 및 목적

회복적 정의는 회복적 사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과거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응보의 형태로 형벌이 이루어진데 반해, 범죄의 예방과 당사자 간의 화해 및 원상회복에 중점을 둔 새로운 방식의 형사사법체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는 곧 “그 발현형식의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37) 이 부분은 박상원(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박사과정)이 집필하였음.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양식을 총칭하는 개념”(이진국, 2006: 74-75)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전의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해당 범죄에 책임을 지는 관련자로 이해되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서, 비단 범죄에 대한 화해 및 원상회복 뿐 아니라 범죄의 예방이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이전에 비해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회복적 사법을 실제 형사사법체계에 편입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과 실재를 결합시켜 실무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제도를 그들의 법체계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살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회복적 정의 또는 회복적 사법은 이를 대표하는 각 나라별 제도들을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도 회복적 사법을 대표하고 이를 실현 시킨 제도로서 회복적 정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을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보고 이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적 사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대인적 유대관계의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까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주가 되지 못했던 범죄피해자를 사법체계 중심으로 옮겨와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화해를 기초로 하는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자세나 피해자에게 있어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침해된 부분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침해 전 상태와 가장 유사한 상태로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이진국, 2006: 74).

2)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1) 소년법원법

가. 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소년법원법상 가장 약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양육처분은 주로 경미한 폭행이나 음주벌 등과 관련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양육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소년법원법 제9조부터 12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10조에서는 양육처분과 관련하여 지시이행해야 하는 처분들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 제1항 7호에 해당하는 조항이 가해자-피해자-조정과 관련된 규정이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 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무에서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법문언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소년법원법 제45조 규정은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열거해 놓고 있는데, 그 중 제2항의 경우에는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른 자발적인 가해자-피해자-조정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력에 대한 의향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조정이라 함은 하나의 제안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강제로 실행할 수는 없다. 소년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법상의 모든 보장수단들을 향유하게 된다. 이는 곧 조정을 선택하지 않고 당사자주의 절차를 선택했다고 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45조 제3항에서는 조정을 위한 노력으로 명령 또는 지시이행사항을 부과할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여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당해 소년이 판사의 명령 또는 지시이행사항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도 기소를 유예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다. 소년법원법 제21조 제1항

소년법원법 제21조는 집행유예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항에 따르면 원상회복과 가해자-피해자-조정은 “범행 후의 태도”로서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기간 중 지시이행 사항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2) 일반형법

가. 형법 제46a조

소년법원법상의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한 규정은 일반형법 제46a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보완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본 규정은 소년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적용에 많은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년사건에 대하여서도 범행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성사되면 소년사건에 있어 소년에 대한 형이 면제 될 수 있는 규정인 것이다. 즉 가해자-피해자-조정이나 손해원상회복이 성사된 사례에서 선고형이 1년 미만의 자유형 또는 360일 미만의 벌금일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할 수 있고, 예상되는 선고형이 1년 이상의 자유형이거나 360일 이상의 벌금일수일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김성돈, 2008: 42-45)

가. 형사소송법 제155a조

형사소송법 제155a조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이 적합한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조정합의를 인정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153a조 제1항 제5호

검사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와 조정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을 지시사항으로 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5호 규정을 통하여 검사는 제153a조 제1항의 2문의 조건하에서는 법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형사소송법 제115b조

법원과 검사가 가해자-피해자-조정이나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정의 실행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조정에 필요한 신원관련정보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이라 함은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 앞선 조정기관으로 될 수 있다. 더불어 이 규정으로써 조정이 위탁된 기관의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 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유형

(1) 유형

가. 사법절차상 관련제도

가)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

소년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자-피해자-조정 사례의 대부분은 수사절차에서 개시되고, 주된 개시자는 검사 내지 법원의 검사직무대리이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은 지난 십여년간 꾸준히 실무에 있어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최근 독일전체 가해자-피해자-조정 통계에 따르면 소년형법 분야에서 연간 약 20,000여건의 조정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범죄비율로 살펴본다면(Kerner, Hans-Jürgen/Eikens, Anke/Hartmann, Arthur, 2011: 27)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정이 이용된 범죄는 상해범죄 비율이 46.6%-53%로 가장 높았으며, 그밖의 범죄비율이 23.1%-30.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채물손괴비율이 11.6%-14.7%로 나타났으며 소유권과 재산에 반하는 범죄 비율이 5.8%-10%, 약취와 강요에 해당하는 비율이 1.2-33%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조정사례의 반 정도가 주로 폭력범죄에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이 조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84.1%-86.7%로 높게 나타났고, 피해자 측에서도 69.1%-72.8%로 조정에 협력하려는 용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Kerner, Hans-Jürgen/Eikens, Anke/Hartmann, Arthur, 2011: 35).

특히 이러한 경우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 피해자그룹이 합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조정 사례에서 분쟁당사자간의 조정대화가 이루어졌고, 조정대화의 끝 무렵에서는 사례의 80-90%정도의 비율이 조정합의가 이루어졌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조정의 합의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된 것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진심을 담은 사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과 치료비부담에 대한 논의가 뒤이어 이루어 졌다. 거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다양한 개개인의 합의된 내용이 약속되었다. 특히 소년법에 있어서 조정절차의 성공적인 종결은 90%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나. 학교의 관련제도

청소년기는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로 대변되어질 만큼 그 심리상태가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기도 하고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인과 같은 사고와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다. 범행의 가해자 연령을 보더라도(Kerner, Hans-Jürgen/Eikens, Anke/Hartmann, Arthur, 2011 : 22) 청소년기의 연령이 속해 있는 14-20세 사이의 가해자 비율이 34.2%-56.9%의 비율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는 것은 문제 상황을 대응함에 있어 정신적, 심리적 미성숙에서 오는 범죄 발생 비율도 무시할 수 없음을 나타내 준다.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문제행동은 비슷한 또래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다른 여타의 일반 폭력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형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동(예를 든다면 상해나 약탈과 관련된 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급생간의 싸움이나 경미한 폭행의 경우에도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이 우선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해자-피해자-조정은 형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였을 때, 이러한 조정의 결과는 향후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형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미미한 경미한 폭행이나 싸움의 경우에도 교내 교칙에 따른 징계에(퇴학이라든지 정학과 같은 처분에 영향을 미침) 조정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³⁸⁾

개별 학교에는 학교별로 상담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 폭력 전담 조정사무소³⁹⁾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학교로 통보받을 수도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선적으로 각각의 학교별로 학교 교칙에 규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각 주별로 제정되어 있는 주별 학교법 내에 교육적 징계조치와 관련된 조항에 가해자-피해자-조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주별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 내지 교육에 관련된 법률에는 가해자-피해자-조정 규정이

38) www.schillerschule-singen.de(2014.5.12)

39) 이는 이후 소개하고 있는 조정기관과는 다른,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정만을 담당하는 지역 내 기관이다.

모두 명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법조항과 세부 일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베를린 학교법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 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학교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

(가) 진행방법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실시 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결과에 대하여 이를 분명하게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앞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를 통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남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역할에서 벗어나 앞으로 학교에서의 폭력상황에 맞설수 있는 대응 능력을 기르게 된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원상회복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볼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야기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배우게 된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은 상담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지고, 다음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① 사전면담

사전면담을 통해 조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범행과 결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격자, 주위에 있던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접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가 개별로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을 실시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가해자-피해자-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진행 시킬지의 여부 등을 묻는 짧은 면담을 말한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된 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앞으로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침해에 대한 두려움 등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면담한다. 특히 두려움 없이 수업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앞으로 진행될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 단계에서는 원상회복과 관련된 질문도 함께 다루어 질 수 있다. 가해자와의 사전면담에서는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조정대화가 피해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의 원상회복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한다. 양측 당사자가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원하는 경우 양측의 시간을 조정해 조정기일을 잡는다.

② 조정

담당교사는 조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설명을 한다. 범행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상회복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과 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대질하게 된다. 담당교사는 이때에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조한다. 가해자에게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의 규모나 심각성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 역할 바꾸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대개의 경우 가해자는 이러한 인식과정을 통해 별다른 강제 없이 자신의 책임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핑계나 구실을 대고 상대방을 경시하거나 책임전가 등을 통한 방법으로 정당화하여,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결방법으로 적절치 않으며 용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 반작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원상회복과 관련한 문제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과 원하는 바에 달려 있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조정교사의 역할은 원상회복이 행위결과에 상응하는지, 균형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적절한 원상회복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는 원상회복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결정을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화 참가자들이 진행과정을 담은 서류에 서명하고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심의 기일 일정을 잡는다.

③ 원상회복여부의 재심의

학교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은 의무화된 학교처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여부의 재심의 과정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모든 대화 참가자들이 만족할 만한 원상회복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게 되면 가해자-피해자-조정은 성공적 종결된 것 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나) 학교 내 폭력과 관련한 지역별 조정사무소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독일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학교폭력근절"과 관련된 캠페인 및

이러한 폭력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이 존재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정을 돕는 지역별 조정사무소에서는 조정인교육을 마친 조정인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사법부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조정역을 담당한다.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문조정인에 의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받을 수 있다.⁴⁰⁾

나) 개별주 학교법의 규정

독일은 주별로 학교법을 제정하고 있고 관련내용은 법조문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어떠한 상황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주별 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⁴¹⁾

교육이 법에 우선하긴 하지만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 한계에 부딪힌 경우에는 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적 조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

- 문제 학생이 안정적인 수업 또는 교과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하는 경우
- 외부적인 학교업무의 지속적인 방해를 하는 경우
-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위태화를 초래할 경우
- 학교법에 따른 학생의무 위반
- 그 외 특별한 법률규정의 위반
- 반복적이고 근거를 대지 않는 결석에 의해 수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여기에는 지각 역시 포함될 수 있다)
- 학교장 및 각각의 교사 또는 그 외 학교의 교직원의 명령에 대한 불복
- 그들의 업무를 대변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 등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 서면에 의한 경고
- 자율적인 학교행사로부터의 배제하기
- 일정기간 수업시간에서의 배제하기
- 동학년의 다른 학급 또는 다른 수업그룹으로의 전반
- 동일한 교육목적(일반계면 일반계로, 직업학교면 직업학교로)을 가진 다른 학교로의 전학

40) www.toa-bremen.de(2014.5.12)

41) SchulG BLN § 63 Ordnungsmaßnahmen

- 학생이 이미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의 퇴학

위와 같은 규정적 징계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급위원회 또는 상급위원회(위원회의 의장은 교장)에 참석하여 해당 학교법에 따라 절차를 따르면 된다. 특히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실시하는 조정위원회의 개입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학생과 필요한 경우 학생의 학부모는 조정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야 한다.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대하지 않는 한, 조치의 방법을 결정하는 순간에 조정위원회의 개입이 요구된다. 위임을 받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또는 위원회의 의장을 통해서 해당 학생에 대해 심문하기, 그리고 위원회의 다른 참가자의 학생의 요청에 의한 심문. 결정은 해당 학생이 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결과에 대하여 모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사례를 통해 본 조정절차

16살인 A는 후트티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다가온 동갑내기 2명으로부터 갑자기 습격을 당했다. 그들은 A에게 아랫도리를 벗고 속옷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그 후 야구방망이, 쇠사슬 등을 이용해 A를 때리고 동시에 발로 구타했다. 이러한 폭행은 약 45분여가 지속되었고, 폭행을 멈춘 후 그들은 다친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로 자리를 떠났다. 폭행이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는 야구방망이에 머리를 수회 맞았고 그로 인해 뇌진탕 및 전신에 수개의 혈종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피의자는 피해자를 이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는 상태였다. 우선 양측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접촉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이루어진 조정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간략한 설명 후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갑작스레 이루어진 폭행상황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과제(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부여받았다. 각각의 가해자에게 잠시 동안 자신의 생각을 써보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피해자에게 그들이 폭행을 가하는 동안 느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다. 후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정확히 자신이 당시 느꼈던 공포감을 자신의 입장에서 잘 느꼈는지 자신의 입장을 알려왔다. 그리고 난후 다음의 대화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에 관한 부분으로 주제를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지금까지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했다. 첫 번째 힘들었던 면담이 지나고 난후 세 사람 모두 긴장이 다소 누그러지게 되었다. 세 사람은 그리고 난 후, 서로 활기차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정인에게

십분 동안 방을 떠나있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난후 어떻게 신체적 상해부분과 정신적 피해가 만족스럽게 조정 되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진심어린 사과와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으로 이제까지 피해자가 오랫동안 사고 싶어 했던 오디오 세트를 구매해 주는 것으로 합의 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각각이 200유로를 지급하고 앞으로 그들의 자유시간을 이용해 병원에서 20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후에 이렇게 약속했던 모든 의무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고, 본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종국적 기소유예를 내리게 된다(Meier, Bernd-Dieter/ Rössner, Dieter/ Schöch, Heinz, 2007 : 132-133).

4)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가. 경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이미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또는 이미 시작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서류에 기재한다. 그리고 경찰은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접촉을 근거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권장 할 것인지를 판단한 후, 만일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 결정된 사항을 즉시 소년부에 보고한다.

나. 검찰이나 법원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당해 사건이 가해자-피해자-조정이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화해조정기관에 조정을 의뢰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검찰은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실시에 앞서 이를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필수적 정보를 정해진 화해조정기관에 송달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인들은 이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검찰은 적절한 시기에 예정되었던 조정절차를 통보한다. 업무를 맡게 된 당해 조정기관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실시한다. 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조정기관은 가해자와 우선적으로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그 후에 피해자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갈등의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정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갈등해소방안 및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등이 논의 되게 된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후에 합의 결과의 이행 여부에 대해 해당 조정을 중재 했던 조정자가 심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조정인은 검찰과 법원에 조정의 실시에 따른 결과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검찰과 법원은 당해 결과와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중국적 기소유예나 중국적 절차중단 또는 형감면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느 쪽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해 과정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조정기관의 조정인은 이러한 과정을 검찰이나 법원에 통보한다(이진국, 2006: 76-77).

5) 우수사례

현재 독일 내 가해자-피해자-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정부 및 민간조정단체에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를 각 주별, 지역별로 나누어 본다면 그 수가 수백여개에 이른다. 특히 실제 적용사례에 있어서의 조정주체를 살펴보면 정부기관 보다 민간조정단체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IV-5-1참조). 독일에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이 과도기를 넘어서 이미 정착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실무에 있어 민간조정단체와 법원 및 검찰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양형 및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재범방지에 민간조정단체에서의 조정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큰 흐름의 변화가 없어 보인다.

표 IV-5-1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의 주체

	민간조정단체	사법기관/법원에 따른 사회부조 프로그램	소년관청과 소년법원의 부조 프로그램	합계
1997	46	10	10	66
2000	33	2	5	40
2003	35	1	4	40
2004	27	1	3	31
2005	21	2	5	28

* Kerner, Hans-Jürgen/Hartmann, Arthur(2008 : 5)

성공적이고 원활한 가해자-피해자-조정에 이르는 단계별 과정은 단체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의 사례가 더 효율적이다 성공적이다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역사가 깊고,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이전단계부터 현재의 정착기까지 발전단계를 함께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는 뮌헨의 "브뤼케 뮌헨(Brücke München)"이라는 민간 조정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 및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제공하는 실제 조정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되어지는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앞으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브뤼케 뮌헨(Brücke München)⁴²⁾은 41년전 독일의 범죄학자인 크리스티안 파이퍼(Christian Pfeiffer)교수가 설립한 단체이다. 설립 초기 당시 당시 독일대통령의 후원 아래 진행되던 “수형자를 위한 신문구독”이라는 시민운동의 흐름을 타고, 기반을 잡게 된다. 이는 수형자들에게 신문, 잡지나 전문서적 등을 제공하자는 운동으로 많은 신문사나 잡지사들이 이 활동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공익적인 기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기금은 브뤼케 뮌헨(Brücke München)과 같은 단체들에게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운 기금 사용이 허락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 형사사범을 위하여, 전통적인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던 처벌방법에 대한 대안에 관한 모델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1953년부터 소년법원법상에 규정되고 있는 지시사항이 전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브뤼케 뮌헨(Brücke München)은 1978년부터 처벌로써 벌금과 구금 이전에 소년범들의 잘못된 행동 교정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발전시키고 “소년법원의 지시사항”을 이끄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이로써 브뤼케 뮌헨(Brücke München)은 소년법원법상 긴급대책 분야의 선구자로 여겨지며 1985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바이에른 주정부재단으로부터 소년부조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그 후 1987년부터는 소년법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자-피해자-조정 모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1997년부터는 일반 형법상의 가해자-피해자-조정까지도 실행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분쟁검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 폭력방지를 위해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가해자-피해자-조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조정자⁴³⁾이다. 조정자는 사회과학분야 및 부차적으로 형법분야를 전공한 전문조정자 교육을 마친 자가 맡는다. 이들은 법이 보호하고

42) www.bruecke-muenchen.de(2014.5.12)

43) 이 연구의 부록에서는 실제 조정자가 기록한 조정일지를 소개하고 있다.

있는 범위 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고 중립적인 대화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만약 조정 진행 중 양 당사자 간에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된 두 명의 조정자가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 법원 또는 해당 사건의 형사절차상의 관련자들이 가해자-피해자-조정을 권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민간조정기관은 조정을 통해 당해 사건 당사자들에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조정자의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스토킹과 같이 피해자 측이 특별한 보호를 원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행 될 수 있는 비직접적인 조정도 가능하다. 조정이 완료되면 해당 조정 업무의 위탁자라 할 수 있는 법원 및 검찰은 형사절차의 종결 또는 형벌 감경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조정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러한 조정 절차의 참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고 법으로 강제 될 수 없으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6) 요약 및 시사점

이상으로 독일 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제45조 제2항,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이 근거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형법 제46a조와 형사소송법 제155a조 및 제153a조 제1항 제5호, 제115b조 규정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규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향후 사법절차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된 문제행동과 관련해서도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 또한 사법절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정착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사법현실에 맞게 적용시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를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제도를 그들의 법체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실무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까지도 보완해 나가고 있다.

특히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제도가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큰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볼 때, 현재 학교폭력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가해자-피해자-조정과 관련하여서 실제 실무에서 쓰이고 있는 조정 양식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이론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다양하게 참고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6. 외국사례의 종합비교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이 선진 외국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를 살펴보았다.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6-1 각국의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 비교

	회복적 정의 연혁	회복적 정의 관련 법령	프로그램 유형	형사사법체계와의 관계	우수사례	시사점
호주	1990년 존 맥도날드	청소년 사법 소년 범죄자법 형(회복적 정의)법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족법	1) 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의 프로그램 2) 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 3) 돌봄과 보호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4) 기타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은 1) 경찰 주도 프로그램, 법원 운용 프로그램으로 나뉨 (상호 독립적)	퀸스랜드 청소년 사법회의	경찰 운용 프로그램은 형사사법제도 진입 이전에 청소년을 선도하려는 목적지님
뉴질랜드	마오리의 전통적 제도와 영국형사사법제도의 혼합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법 피해자의 권리법 판결법 교정법 가석방법	가족집단협의	1) 형사사법제도보다 더 중요하게 운영 2)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프로그램 운영	왕거누이 지역사회 운영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공동체가 직접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응한다는 인식 필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 실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피해자-가해자 회의	균형적 접근 관련 법 회복적 정의 관련 법 회복적 프로그램 관련 법	써클 관계연습 또래조정, 또래배심원 회복적 대화 및 회의 후속활동	형사사법체계와 병립적 관계	필라델피아 공동의 예술 프로그램	균형적 정의 강조 (책임 및 자기 개발) 판사는 조정자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자가 아님
영국	Home Office의 1997년 보고서	검사 법규 범죄 및 무질서 법 청소년 사법 그리고 범죄 증거 법 형사법원의 권한 법 형사사법 그리고 이민법 수정된 피해자 법률 조건부 경고	1) 직접적/간접적 회복적 정의 과정 2) 지역사회 회의 3) 전환 명령 패널 4) 조정	형사사법 전반에서 프로그램 활용 기능검사 및 판사 주도형	브리스톨 RAiS 프로그램	검사 혹은 판사 주도형 (형사사법제도에 종속적인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존재
네덜란드	미국제도 도입해 보완	소년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가해자-피해자 조정	형사사법기관에서 화해조정기관에 의뢰	브뤼케 원형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가 학교폭력 해결에 실효성 높음.

제 V 장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조사

1. 조사개요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3. 심층면담 결과분석

제 V 장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조사⁴⁴⁾

1. 조사개요

1) 전문가 의견조사

(1) 대상과 방법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은 학교폭력이나 갈등해결 관련 전문가이다. 교육분야 12명, 사법분야 6명, 민간분야 12명, 총 2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⁴⁵⁾

다음의 표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교육분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및 교장, 교육부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법분야는 경찰, 검사, 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분야는 비영리단체의 갈등해결 및 회복적 정의 관련 전문가와 대학 및 연구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차에 걸쳐 델파이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1차조사를 토대로 구성된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1차조사에 참여했던 28명 중에 26명이 2차조사에도 참여했다.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통화나 심층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차조사 결과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했고, 2차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SPSS/WIN(ver.20.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했다.

44) 제5장은 이유진이 집필하였음.

45) 교육부 학교폭력 담당 공무원, 학교폭력 전문 연구자, 갈등해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표 V-1-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사례번호	기관유형	직업/직위	성별	연령	재직기간	조사참여		분야구분
						1차	2차	
1	중학교	교장	남	53세	27년	○	○	교육분야
2	중학교	교장	여	60세	39년	○	○	
3	중학교	교사	남	55세	15년	○	○	
4	중학교	교사	남	48세	26년	○	○	
5	중학교	교사	남	44세	17년	○	○	
6	초등학교	교사	남	32세	7년	○	○	
7	초등학교	교사	남	39세	15년	○	○	
8	교육부	공무원(행정직)	남	47세	18년	○	○	
9	교육부	공무원(행정직)	남	31세	2년	○	○	
10	교육부	공무원(연구관)	남	46세	24년	○	○	
11	교육청	공무원(장학관)	남	55세	33년	○	○	
12	교육청	공무원(변호사)	남	36세	3년	○	○	
13	경찰청	경찰	남	43세	18년	○	○	사법분야
14	경찰서	경찰	남	42세	19년	○	○	
15	지방검찰청	검사	남	39세	9년	○	○	
16	법무부	검사	남	45세	8년	○	○	
17	가정법원	판사	남	48세	18년	○	○	
18	가정법원	판사	여	49세	15년	○	○	민간분야
19	민간단체	부장	여	35세	9년	○	○	
20	민간단체	상담원	여	53세	3년	○	○	
21	민간단체	연구원	여	49세	15년	○	○	
22	민간단체	소장	남	37세	7년	○	x	
23	민간단체	대표	여	43세	18년	○	○	
24	민간단체	대표	남	56세	10년	○	○	
25	민간단체	센터장	여	44세	15년	○	○	
26	민간단체	소장	여	49세	10년	○	x	
27	대학교	교수	남	41세	3년	○	○	
28	연구원	연구위원	여	38세	10년	○	○	

(2) 내용과 도구

1차조사의 조사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현행 회복적 정의 관련 제도에 관한 의견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시범운영 중인 또래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중에 서면사과 · 학교 및 사회 봉사 · 특별교육, 범죄피해자보호법 상의 형사조정,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에 대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이 제도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요인, 현행 학교폭력 처리 및 대응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둘째는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이다.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필요성과 이유,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차원의 처리 · 사법처우 등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단계,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 관련 용어 및 개념, 선진 외국의 관련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셋째는 회복적 정의모델 지원체계 및 종합적인 의견이다. 시설, 인력, 예산, 통일된 매뉴얼 및 법률 제정, 시스템 구축 등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 기타 건의 및 요구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마지막에서는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 근무경력 등 응답자의 특성을 물어보았다.

2차조사는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2차조사의 조사도구는 1차조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여 선택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의 큰 틀은 1차조사와 동일하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고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심층면담

(1) 대상과 방법

심층면담의 대상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4명, 가피해 학생의 부모 2명, 또래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1명,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교사 1명 등 8명이다.⁴⁶⁾ 화해를 통해 관계가 회복된 사건과 회복되지 못한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모두 같은 학교에서 대상자를 섭외하였고, 갈등의 시기와 내용도 비슷한 사안을 선정하였다.

46) 교육부에서 개최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활동 간담회(2014. 9. 25)에 참석한 전문가를 통해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학교를 추천받았다.

조사는 2014년 10월 중에 1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대상자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표 V-1-2 심층면담 대상자의 특성

사례번호	구분	성별	연령	처리결과
1	가해학생	여	만13세	상담교사의 조정을 통해 종결
2	피해학생	여	만14세	
3	가해학생	여	만14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
4	피해학생	여	만14세	
5	가해학생 어머니	여	만46세	
6	피해학생 어머니	여	만41세	
7	전문상담교사	남	만53세	사건 담당교사
8	학교폭력 전담교사	남	만34세	

(2) 내용과 도구

심층면담의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직접 질문하였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담당교사에 대한 질문이다. 또래조정을 맡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에게는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상담교사의 역할, 또래조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의 특징 등을 알아보았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맡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는 본인의 역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의 특징 등을 알아보았다.

둘째는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질문이다. 가피해 학생에 대한 질문인데, 내용은 공통적으로 갈등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 화해를 위한 노력, 관계회복 여부, 부모님 인지 여부, 또래조정 또는 교사의 중재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질문이다.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질문인데, 내용은 공통적으로 갈등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 화해를 위한 노력, 자치위원회와 관계회복에 대한 의견, 또래조정 또는 교사의 중재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에서는 성별, 연령, 사건에서의 위치 등 면접대상자의 특성을

물어보았다.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 1차조사 결과분석

(1) 현행 회복적 정의 관련 제도에 관한 의견

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해 회복적인 제도인지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문가의 의견은 회복적인 제도라는 의견과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의견, 취지는 회복적이지만 실재는 회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먼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에 기여,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방식으로 진행, 학교폭력 예방법 제1조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회복적,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규정된 합의조정을 통해 관계회복 가능,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자율적 합의 가능, 가해학생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따른 관계개선 역할 등으로 인해 회복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12-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분쟁조정 사항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당사자가 합의한 교육적 사항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상황이 어려운 피해학생 보호자를 대신하여 피해학생 치료과정에 동반하도록 합의

하여 당사자 간의 관계가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19-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생, 학부모, 학교는 사안처리 절차, 과정, 피해 및 가해측 학생들의 조치, 교육등에 있어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이 발생되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시 분쟁으로 확대되는데 이런 분쟁을 소송에 대한 대체적 해결수단으로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이 주된 합의조정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적, 실제 관계회복이 되는 사례가 매우 적음, 갈등해결 보다는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단계로 인식, 분쟁조정자로서 자치위원의 비전문성, 합의를 통해 처분이 감경되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므로 관계회복 어려움, 강제전학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회복적이지 않음, 당사자 관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문제의 경중에 따른 조치 중심 등으로 인해 회복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1-회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분쟁조정 대상은 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간 또는 그 가족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인데, 손해배상은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책임, 처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4-회복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학교의 생활부장들과 의사소통 및 교류 중(카톡방 580 여명 채팅방 운영)인데, 어느 학교에서도 분쟁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지는 회복적이지만 실제로는 회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의 경우, 분쟁조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회복적인 취지를 갖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체는 조정전문가가 없고 외부위탁도 꺼리기 때문에 회복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5-분쟁조정은 회복적인 제도일 수 있으나 그 실제 구현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

성이 있는지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분쟁조정전문가훈련을 받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식도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사안을 위탁하는 것도 쉽지않은 것이 학교의 정서입니다.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문제제기가 된 것은 분쟁조정 결과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치결정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분쟁조정이 손해배상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징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관계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하는 기구이므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학교폭력에서 화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규명이 안 되는 점이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규명과 함께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갈등중재센터'와 같은 별도의 분쟁조정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별도의 분쟁조정 기구는 행정기관에 설치하고 조정결과를 자치위원회 결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분쟁조정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보호자 연락을 하고, 사안조사 및 화해조정을 안내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면, 자치위원회는 추인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관계자들에 대한 회복적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생활지도의 방향은 응보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사 연수제도가 필요하다.

자치위원회에 대한 연수 내용에 회복적 정의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회복적 정의를 위한 분쟁조정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수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해도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회복적 정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분쟁조정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피해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가 분쟁조정 기관으로서 학교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가피해 학생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사, 변호사, 손해사정인, 보험전문가, 학교폭력전문가 등)를 분쟁조정위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 내에 회복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기초에 학부모총회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회복적 절차에 관해 안내하고, 위클래스 등에 회복적 대화모임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 담당자가 또래조정 지도교사를 겸하고, 학부모 중에 회복적 대화 진행자를 훈련해 봉사인력으로 활용한다.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담임 종결사안은 또래조정이나 담임조정으로 종결하고, 다음단계로 경미한 사안은 학생부장이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행한 후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조정이 안되거나 심각한 사안은 처음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다음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분쟁조정 개시와 중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분쟁조정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중지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거부로 인해 분쟁조정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분쟁조정의 개시와 중지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은 처벌을 중시하는 응보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정책도 결과처리에 집중되고 있어 학교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처리절차와 교육부의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것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 분쟁조정이라는 용어보다는 화해나 갈등조정, 관계회복이라는 용어가 회복적 정의에 부합한다. 현재 분쟁조정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조정의 성격상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간을 유연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인과 교육관계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등이 제시되었다.

사례6-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자체가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률에 의해 제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분재 조정은 앞서 말한 듯, 학교안에서의 갈등을 일반적으로 응보적 정의, 즉 법체계가 추구하는 ‘처벌’과 ‘합의’만을 그대로 학생간의 갈등에도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학교폭력은 가·피해학생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환경적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발생의 책임소재를 단순히 ‘학교’의 문제로 치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교육부정책의 방향이 결과처리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례10-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은 심의·처분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 화해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소년법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한 조치의 종료에 가능할 수 있는 ‘불처분 내지 심리불개시’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상 자치위원회 심의·결정시 고려사항으로만 언급된 사항을 소년법에 버금가는 ‘불처분 내지 미조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12-실무상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되면 더 이상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17-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규명”이 안되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규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아서 최근 들어 재심청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중재센터”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사실규명도 하고 회복적 절차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21-학폭위가 열리기 전 우선 학교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간 만남을 통해 사건의 피해와 고통, 영향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대화하고 그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관계회복을 위한 대안을 당사자들이 함께 찾도록 하는 ‘피해가해대화모임’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반영하도록 하면 회복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례24-갈등과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교사전결사항과 학년부장/생활부장 전결사항을 두며 학년부장/생활부장의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1차로 경미한 사건의 경우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각한 사항의 경우 학폭위로 가지만 첫모임에서

조정권고를 내리고 이것이 잘 풀리면 그 결과를 학폭위가 인준해야 합니다.

다) 회복적 분쟁조정 성공 및 실패 요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전문적인 제3자의 개입이다. 즉, 분쟁조정 전문가나 갈등중재 전문가가 투입된 경우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이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성공률이 높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가해학생의 태도에 따라 회복적 조정의 성패가 나뉜다. 즉, 가해학생의 진실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사과,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신속한 이행, 합의금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 경우에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경우에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피해자의 심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따돌림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가피해 학생을 둘러싼 부모와 교사,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다. 즉, 학부모가 관계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피해자 중심 대처, 학교의 중립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결정, 서로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 학생, 부모, 교사, 지역사회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등이다.

사례6-간혹,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무엇보다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회복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결과처리보다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문제점 파악과 관계회복에 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사례13-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분쟁조정제도 및 효과에 대해 가해·피해 양측에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양측의 회합단계에서 중재전문가의 개입으로 상호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가해학생측에서 피해학생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경우입니다.

사례22-회복적 조정을 위해서는 유죄여부를 놓고 논쟁하기 보다는 사건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회복적인 조정에 실패한 경우, 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패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견해차이다. 학부모가 자존심을 상한 경우에도 회복적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역시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분쟁조정과 조치결정이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이다. 즉, 조치결정이 분쟁조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화해의 의욕이 없어지고, 가해학생이 조치결정에 대해 가혹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합의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으로는 학교의 대처가 부적절하여 실패하는 경우이다. 즉, 관계회복보다 합리적인 사건처리 치중, 초기대응에 실패한 경우, 선부른 판단에 의한 해결책 제시,사안처리에 대한 은폐나 축소 의혹,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이다. 학부모의 학교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도 실패요인인데 이 역시 학교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신뢰가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밖에 사실규명에 실패한 경우나 피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도 회복적 조정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사례13-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지 못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을 위한 회합시 양측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진행을 서투르게 하여 갈등을 더 확대시키고 결렬시키는 경우, 가해·피해 양측의 합의 결과를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일부 반영하였으나 가해학생측에서 다른 사건들에 비해 오히려 처분이 강하다고 느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례19-대부분의 갈등 및 분쟁사례의 발단은 발생 즉시 초기대응의 미숙으로 인해 시작된 사례가 다수이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들은 양측 간의 감정적 불안과 변화로 인한 오해와 의심이 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할 때,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불신과 은폐, 축소 의혹을 가질 때, 당사자들 간의 피해에 대한 이해와 손해배상 욕구 차이가 클 때, 한 측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가 클 때, 주위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와 불신이 클 때, 학교의 사안처리 자세와 태도가 비협조일 때로 나타났습니다.

나. 또래조정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래조정’ 제도에 대해 회복적인 제도인지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문가의 의견은 회복적인 제도라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고,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의견이 소수 있었으나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취지는 회복적이지만 실체는 회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먼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또래 친구의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회복에 기여, 학생 상호간 발달단계에 맞는 수준에서 공감과 이해를 통해 문제해결 모색, 갈등의 처리가 아니라 갈등의 이해 과정,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갈등조정, 또래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해결 노력, 학생들은 어른보다 정직하기 때문에 사실규명을 통한 회복 용이,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회복적 조정 가능, 또래의 방식으로 또래의 눈높이에서 문제해결,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정을 통해 관계악화 방지 등으로 인해 회복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6- 교사에 의한 조정이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짧은 시간 합의 종용을 추구 하는데 비해서 또래조정은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충분한 대화 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갈등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갈등에서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례8-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또래조정사업은 학생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경미한 갈등 행위 등 문제상황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또래집단이 주체가 되어 갈등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행함으로써 법적 기구에 의한 강제적인 결정이전에 회복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회복적인 절차입니다.

취지는 회복적이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또래조정으로 화해가 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 학생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정책적 지원으로 확산된 점,

회복적으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 학생과 지도교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많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사례22-주변 환경이 여전히 응보주의에 따른 훈육과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으로 실천되는 또래조정은 그 자체로 회복적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본질적 속성은 회복적일지 몰라도 얼마든 그와 무관하게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또래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래조정 자체는 회복적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보다는 이 훈련과 경험을 통해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또래조정’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의견은 또래조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도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또래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안은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에서 조치결정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해가 되어도 조치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미조치 결정도 선택사항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자치활동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또래조정을 또래상담, 자치법정과 연계하여 보완적으로 운영, 어울림 프로그램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므로 통합하여 운영, 또래상담과 접점을 찾아 통합 운영, 또래조정자와 또래상담자 훈련 함께 실시 등이다.

다음으로는 향후 발전방안으로써 3년간 시범운영 하는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제도의 확대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학생 자치활동이라서 법제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자발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하고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가 중고등학교로 확산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또래조정자의 역량강화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또래조정자의 수준 차이에 따라 잘못된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연합세미나, 매뉴얼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조정자 교육 훈련 강화,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 및 지속적 실천 중요, 또래조정을 문제해결 기법이라기 보다는 갈등전환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기회로 적용 등이다.

다음으로는 또래조정자 선발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래조정자로 학생임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또래간 인지도를 확보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우수학생 중심으로 조정자를 양성하므로써 조정대상자와 평등하지 않음, 또래조정자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인적 지원 필요, 모범생 위주의 선발 지양 등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는 지도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또래조정이라 하더라도 지도교사가 개입하는 시스템, 전문성을 가진 책임있는 지도교사. 또래조정을 지도할 전문가가 별로 없으므로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교사 직무연수에 학교내 대화문화 확산에 관한 내용 포함, 또래조정 지도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실시 등이다.

마지막으로 또래조정 제도에 대한 학교 전체의 이해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현재는 또래조정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당사지는 조정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갈등 이해와 의사소통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또래조정은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통기술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또래조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급을 중심으로 또래조정 운영하고 반 전체학생이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2- 또래상담, 자치법정과 연계해서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래상담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고, 또래조정은 사후 치유적 차원이므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6- 현재 시행되고 있는 또래조정 시범사업의 교육은 ‘조정자 양성’과 ‘조정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막상 조정에 참여하는 대상은 전혀 대화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22-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또래조정이 문제해결의 기법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갈등전환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로 확장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그룹을 조정자로 키우는 것 이전에 다양한 학생들이 이를 경험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나 소모임 형태로 또래조정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28- 또래조정을 하는 조정자가 주로 학교에서 선발되는 모범학생 위주가 되다 보니, 모범생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결정하여서 문제학생의 문제를 무조건 비난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회복적 또래조정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또래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또래조정자의 역량에 관한 것이다. 즉, 또래조정에 적합한 조정자 선발, 또래조정자 교육, 또래조정자의 역량, 갈등해결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학급에서 신뢰를 받는 조정자 선발, 조정자의 중립적인 태도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지도교사의 지도력과 전문성, 또래조정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또래조정 참여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화, 피해학생 중심의 결과도출 유도 등이 제시되었다.

사례6- 실제 조정을 통해 회복적 조정의 성공 여부는 갈등의 내용이나 수준, 또는 조정자의 역량 보다는 조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느냐 였습니다.

사례24- 반에서 교사가 또래조정 리더십을 시간을 들여 키우고(특히 초등학교) 그들이 반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몇몇 아이들이 또래조정자로 공적인 인정을 받아 자기 반의 갈등사례를 다루는 데 개입하는 경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문화로 정착되면 갈등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사례보고를 받았습습니다.

회복적인 조정에 실패한 경우, 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정이 이루어져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 조정결과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 조정자로부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경우, 책임교사가 없는 경우, 조정자가 일방적인 훈계를 한 경우 등이 제시되었다.

사례1-학교폭력의 경우, 현행법에서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또래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가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또래조정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24-프로젝트로 받아 그냥 외부 전문가가 와서 워크숍을 몇 차례 진행해주고 그 후속운영이 안되고, 책임교사도 없을 경우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전체 교사들의 동의가 있지 않아서 한 반이 잘되는 경우, 교사가 비교의 대상이 되어 미움이나 오해를 받아 동료교사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에 대해 회복적인 제도인지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문가의 의견은 회복적인 제도라는 의견과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의견, 회복적일 수도 있고 회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먼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해학생에 대한 자발적 책임 부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기회 제공을 통해 반성과 개선의지, 피해학생의 수용을 고려, 사회봉사와 교육을 통해 사회와의 관계 회복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8-회복적인 제도입니다. 상기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강한 징벌보다는 피해학생이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또는 사회적인 교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거나, 가해 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16-회복적 제도라고 봅니다. 사과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가해행위를 되새겨 봄으로서 본인 스스로 폭력행위 등에 대한 반성과 개선할 의지를 굳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가 훨씬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제도의 취지가 회복적 정의보다는 응보적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제도의 취지에 회복적 정의가 포함되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응보적 정의로써 처리, 진정성 있는 반성은 없이 처벌에만 집중, 가해학생은 반성보다는 형식적 절차로 받아들임,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적 조치, 가해학생의 반성에 기반한 사과가 아니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이 없다는 견해로써, 피해자의 회복이나 보상과 관련 없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문제해결이 아님, 가피해 학생이 격리된 채 이루어지는 결정, 서면사과는 도적적인 징계일 뿐 재발방지의 이행은 담보하지 않음, 피해당사자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집단에 대한 봉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행절차가 회복적이지 않다는 견해로써, 사안 발생 후 2주일 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회복적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결정이 이루어짐, 서면사과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가장 가벼운 조치로 활용되고 사회봉사나 특별교육도 경징계로 인식, 가피해 학생의 필요가 아닌 자치위원 중심의 징계결정,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회복적으로 진행할 시설이나 기관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6-회복적이지 못합니다. 세가지 모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면사과도 진정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5-서면사과는 그런대로 회복적인 제도로 볼수 있으나 여전히 자발성에 기초할 때에만 그러합니다. 그러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은 피해를 입힌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보상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응보적인 접근이므로 회복적이지 못합니다.

사례18-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지 않고 격리되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가해자가 위 조치들을 이행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회복적인

제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위 조치들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다 받는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27-가해학생에 대한 회복적 관점의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반성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 특별교육이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상당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회복적일 수도 있고 회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통념상 징계조치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에게 회복적일 수 있다. 반면에 회복적인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회복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처벌적으로 운영하면 응보적 정의이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과하고 봉사하면 회복적 정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과정이 회복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례17-가해학생 징계를 단순히 처벌적으로 운영하면 응보적 정의이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봉사하면 회복적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이러한 조치결정이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인 사과보다는 강요에 의한 형식적인 사과와 봉사, 교육이므로 징계조치 전에 필수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거나 당사자 대화모임을 통해 관계회복, 서면사과는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므로 이를 조치결정에서 삭제하거나 가해학생이 사과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이 회복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교육과 봉사 모두 회복적인 질적 수준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질 개선 및 내실화, 교육 위탁 단체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전문성이 결여된 집체교육도 적지 않으므로 봉사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위탁단체에 대한 검증관리, 가해학생 집체교육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일반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 전환, 가피해학생에 대한 개별면담과 조정프로그램을 함께 실시, 실질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는 봉사 및 교육의 시행기관의 부족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다. 구체적인 의견은 시행기관이 부족하므로 시행기관 확보, 별도의 교육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규정 구체화, 봉사는 특별교육과 달리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교육 수준으로 근거 규정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인력 지원과 관계자의 의식전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만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 지원, 가해원인에 대한 회복 및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므로 가족상담 의무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처벌 위주에서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도록 교사와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관한 연수를 통해 의식 전환,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 조치결정의 회복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6-가해학생이 대화에 참여하거나, 가해원인에 대해 근본적인 회복을 하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학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큼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좀 더 회복적 정의에 가까워 지기 위해서는 가해학생과 가해행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가족상담과 같이 그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의무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7-단체에 그치는 일회성 선도 조치로써,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피해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징계로 받아들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시간만 보내면 그만이라는 정서가 팽배합니다.

사례10-교내·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 회복적 제도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봉사나 특별교육을 마친 가해학생들이 진정 피해학생과의 교우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전문기관, 전문가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의무화 근거가 미약하여 구체성이나 예산지원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례13-‘서면사과’ 조치는 ‘진정한’ 사과와 화해가 아닌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사과’를 피해학생측에 전달하는데 불과하고, 가해학생에 있어서도 사과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처벌에 의해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피해학생측에서 진정성이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가해학생의 서면사과문을 받고서 더욱 화를 내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사례18-학교폭력이 인지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격리되어 각자 조사를 받고 자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대면하지 않으며 자치위원회에서 비로소 대면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폭력사실의 확인과 각자의 의견 표명을 위한 자리일뿐, 회복적 절차, 화해적 절차는 아닙니다.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종결될 때까지 가해자는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할 기회가 없었다고 여기고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외면당했다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사례22-서면사과도 자치위원회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사과에 피해자들 그 누구도 진정한 사과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자발성이 살아나는 과정으로서 서면사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례24-문제아들을 모아 교정한다는 아이디어는 한번도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담스럽지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반학생들속에서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체험형 평화감수성 수업(정말 수백명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는 평화의 이름으로도 안된다)을 일블록씩(90분수업기준) 서너차례하면 많이 전환되는 것이 “청소년평화지킴이(HIPP; Help Increase Peace Program)” 워크숍 등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다) 회복적 가해학생 조치의 성공 및 실패 요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역량이 중요하고, 자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교사가 면담을 통해 가해학생의 반성과 책임감 지도, 가해학생의 자발적 참여,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이나 수치심을 주기 보다는 욕구 파악, 봉사와 교육에 참가한 가해학생의 반성 의지 고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대한 신뢰와 사후지도, 가피해학생 부모가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서면사과의 진정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6-가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회복적 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결과처리보다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문제점 파악과 관계회복에 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서면사과 편지 하나만으로도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사례24-가해자에 대한 딱지를 안붙이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 진실로 눈이 떠지며 그와 같은 영향력을 준 것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치심의 증진이 아닌 자기 내면의 선한 의도에 대한 발견에서 -표면적으로는 나쁜 행동이었으나 그 행동 이면에 자신은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통찰에서- 나옵니다.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요인으로는 봉하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이를 지도할 전문가가 많지 않고, 봉하나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24-그나마 가해학생에 대해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은 농촌체험, 유기견돌보기, 장애우돌보기, 노인돌봄 등의 사회봉사들이 있지만 학교로 왔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선입견과 회피하기 혹은 그에 대한 고정관념에 입각하여 전처럼 대우하기 등으로 사회봉사로 얻은 유익이 사라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라. 형사조정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에 대해 회복적인 제도인지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문가의 의견은 회복적인 제도라는 의견과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의견, 회복적일 수도 있고 회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먼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제3자가 가피해자의 요구를 조정하여 충족, 형사처벌 대신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함, 중립적인 조정자가 절차에 참여, 조정결과가 사건처리에 반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당사자의 입장표명 기회를 통해 치유효과,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 피해자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하거나 형사조정을 원한 경우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19-형사조정의 절차는 기존 형사절차와는 조금 다른데, 형사절차는 간략하게 수사, 검찰 송치, 혐의유무 결정, 법원 판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은 사건처리에 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조정자가 절차에 참여하며, 사건 당사자가 화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조정결과가 사건 처리에 반영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회복적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물질적 보상을 통한 합의에 그침, 형사사건 절차 간소화일 뿐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24-이미 뒤뜰대로 뒤뜰리고 서로 심각히 상처받은 상태에서 현재의 형사조정제도는 거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지 근본적인 관계개선인 원인이해와 당사자의 건설적인 미래에로의 선택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못합니다.

회복적일 수도 있고 회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의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운영방식에 따라 회복적일 수 있지만 현재는 물질적 보상에 치우침, 피해회복에 관해 협의한다면 회복적이거나 보상액 조율만 이루어진다면 회복적이지 않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22-형사조정이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고통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더불어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복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초점을 두고 그 마저도 상호간의 금액을 조율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면 이는 회복적 제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해자가 합의이행을 하지않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을 신청해야 하므로 절차안내, 불이행증명서 발급, 소송지원, 가중처벌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조정은 검찰단계의 제도이므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경찰단계에 도입하여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입건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조정과 화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전문가 개입, 조정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전문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회복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간 연장, 당사자 동의절차 등 형사조정 운영체계 개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조정 가능하도록 적용 확대, 물질적 보상 뿐 아니라 진정한 회복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6-제도 취지 자체는 좋으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회복보다는 물질적 보상을 통한 합의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오히려 법제도를 이용해 자신을 잘못을 빚겨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22-신속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실에서 형사조정의 초점은 경제적인 보상을 피해자가 신속하게 받도록 하는 것으로 협상을 통해 빠른 보상과 종결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조정자의 역

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도 제약이 많습니다. 건당 30분 정도에 형사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24-검사수준으로 올라가서 법원에서 형사조정을 받게 되면 일단 학교폭력은 최소 3개월에서 8개월의 긴 시간이 형사조정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고, 그동안에 학생과 학부모는 법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 진술없는 대리인들의 목소리에 눌러 무능력화와 참담함,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런 교육적 배움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진술단계에서부터 회복적 사법운영이 경찰의 권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 회복적 형사조정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즉, 가해자가 진정성이 있는 반성을 한 경우, 합의이행 시 형벌의 감경효과가 큰 경우, 당사자간 관계유지 필요성이 설득된 경우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28-당사자의 관계유지의 필요성이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득되는 경우나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 회복적 조정이 성공하게 됩니다.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형사조정을 할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이미 감정을 많이 다친 상태, 합의이행을 해도 형벌의 감경효과가 적은 경우, 사안에 대한 이견, 금전적 보상에만 그친 경우, 조정결과에 대한 검사의 고려는 임의규정(제 45조 제4항)이라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2-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안이 형사조정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고, 그런 경우에는 상호 감정이 많이 다친 상태여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기 어렵고 회복적으로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화해권고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에 대해 회복적인 제도인지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문가의 의견은 회복적인 제도라는 의견과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의견, 회복적일 수도 있고 회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먼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도 도입 취지가 회복적 정의였고, 운영 매뉴얼과 방식도 형식적인 면에서 회복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갈등해결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관계회복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외에도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에 고려, 가피해 당사자의 대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함으로써 성행개선, 피해자가 안전하게 사과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18-회복적인 제도입니다. 갈등해결전문가가 개입하고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면전에서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공감하게 되면서 가해자의 성행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례21-회복적 제도로 처음 제도를 만들 때 그 철학적 기반과 방식을 명확히 했고, 매뉴얼과 운영 방식이 회복적 정의 핵심 원칙인 피해의 회복, 책임, 자발적 참여를 충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회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법원단계까지 간 사건은 심각한 범죄수준이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회복에 어려움이 있고, 화해권고 매뉴얼이나 화해권고위원회에 대한 훈련 등이 회복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 피해자에게 화해가 강요되는 상황이나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10-화해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화해권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보게 되므로 소년법의 특성상 절차와 과정을 통한 기회부여보다는 결과인 ‘화해’ 여부에 목적을 둬 따라 화해권고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

기를 조성하는 ‘화해강요’로 전도될 수 있습니다.

사례24-화해권고를 현재 누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현재 지역의 유지, 종교 지도자 등인데 이들은 설교나 훈계정도이지 전문영역이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화해에 대한 진행기술을 알지 못하는 데 화해권고제도가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회복적일 수도 있고 회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벌대신 화해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회복적이나 단순히 손해배상이 기준이 된다면 회복적이지 않고,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화해권고에 응할 경우엔 회복적이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경우엔 회복적이지 않으며, 회복적 정의모델로써 도입된 제도이긴 하지만 실제 운영은 법원이나 소년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22-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는 도입단계에서부터 회복적 정의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성향과 이해 정도에 따라 운영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조정자가 어떠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에 따라 회복적 정의의 조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례28-제도의 취지로 본다면 회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소년법상의 규정과 소극적인 운영태도로는 회복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소년법상의 ‘화해권고’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화해권고는 가해학생의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부분은 가해학생이 화해권고에 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구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가정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내용으로는 권고기간 내에 이루어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장기간의 관리·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화해권고의 확대실시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즉, 사법절차의 최종단계에서 화해권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갈등이 심화되어 회복 효과가 낮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도 화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촉범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송치하므로 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원 송치서에 화해권고 의견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 외에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화해권고를 확대하고, 소년부 판사의 권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화해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개시 결정 이전에도 화해권고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화해권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즉, 화해권고위원의 자격요건이 자격증이나 전공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있고 실제로 중재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 경력에 대한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정 역량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고, 회복적 정의에 관한 철학에 근거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조정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해권고의 중재자로서 화해권고위원 위촉보다는 조정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공통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판사는 순환보직이므로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므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법원에서 화해가 되어도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별도로 이루어져 화해를 위한 자발적 동기부여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화해가 되면 자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결정을 면제하고, 조치결정이 집행된 이후라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해권고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 및 안내를 통해 가피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6-가피해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다 심리치료 및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현재의 지원내용으로 이를 피해권고 기간안에 이루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합의만 하거나, 말만 잘하면 처벌 받지 않더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현실입니다.

사례10-화해권고의 결과는 보호처분시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행정법적 성격인

학교폭력예방법이 형사사법적 성격의 소년법 보다 조치의 강제성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례13-최종결정권자인 판사의 화해권고를 가해·피해자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 합의에 대한 강요 소지가 있고, 피해자측에서도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사에게 밉보여서 가해학생에게 불처분이나 낮은 수준의 받을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17-화해권고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시스템입니다. 부모없는 가해소년을 위 사법형 그룹홈은 회복센터와 같은 가정을 먼저 만들어 준 후에 그 부모가 화해의 장에 나와야 회복적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있는 소년들만을 위한 회복적 정의가 됩니다. 화해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일 뿐이고 앞으로 2차피해가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교를 잘 다녀야 회복적 정의의 완성입니다..

사례18-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학교와 분리된 절차인 탓에 학교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사건 중에 사소한 오프로 다시 갈등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례28-소년사건에서 가해소년과 피해자간의 화해가 반드시 소년사건에 대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한 갈등에 대한 신속한 해소와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의 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절차에 대한 심리개시를 결정하기 이전단계에서도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회복적 화해권고의 성공 및 실패 요인

소년법상의 '화해권고'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전문가가 성공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화해권고위원의 역량이다. 즉, 화해권고위원의 적극성과 라포형성 기술 등 분쟁조정·갈등해결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경우에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행을 들고 있다. 그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입장인 경우,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한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감, 사안이 경미한 경우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18-가해자는 보통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고 이로써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가 달성되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선도가 별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22-화해권고와 같은 조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화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자들의 특정 문제를 정해놓고 이것의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 예를 들어 경제적 보상 등에 집중해서 서로 대응할 경우 복잡한 맥락으로 인해 해결되기 보다는 그 안에서 부정적 역동을 만들어내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금전적인 배상액에 대한 의견차이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사안처리 절차를 거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경우에도 실패요인이 되며, 그 밖에 회복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화해위원의 실수, 가해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화해권고 불응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17-화해가 안되는 가장 큰 요인은 “피해자의 상처”입니다. 국선보조인을 통해 심리과정에서 화해하라고 하기 때문에 화해권고를 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주 큰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반성 태도와 피해자가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청소년상담센터에도 보내고 소년분류심사원에도 보내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행동을 조심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도록 가해자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례18-학교폭력으로 나타난 당사자들의 갈등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사안처리 과

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깊어져(특히 보호자들 간의 갈등) 이미 법원에서 권유하는 화해에 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화해는 어렵습니다. 아니 화해권고절차를 아예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바. 회복적 정의 관련 프로그램

사.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학교폭력 처리 및 대응체계 중에서 학교내 대응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을 회부하면 모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피해 학생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 폭력문화가 확산된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갈등이 커진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져 조정이 쉽지 않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피해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의 경중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경미한 사안이라도 자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화해가 되면 조치결정에 고려하도록 한 회복적 규정을 무력화 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즉시 화해한 경우엔 '담임종결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은폐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시 교사가 아닌 교육청의 위촉을 받은 제3의 분쟁조정 전문가가 절차를 진행한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심의를 받아 1차에 한해 '불처분'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담기구도 아니고 학부모가 과반수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 지역단위 학교간 공동설치, 지역교육청 단위 설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생활지도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중립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분쟁조정도 동일한 자치위원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므로 교육청 산하에 전문 분쟁기구를 두고 민간단체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지원청에 중재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센터를 설치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들 중재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 이 조정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치위원회

는 이를 추진하여 ‘처분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대안학교 위탁교육 등의 조치를 신설하여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학생 조치 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의무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모든 사안에 대해 무조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피해자 격리조치를 지양하며, 과도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재학중 중간삭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회복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갈등해결 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분쟁해결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한계점으로 지적된 것은 교사가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역량과 시간의 부족이 주로 지적되었다. 먼저 역량면에서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회복적 정의에 대한 훈련을 받은 교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관계회복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대방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적극적 개입을 꺼려한다. 학부모는 변호사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교사의 대응수준을 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사법체계와 비슷하여 교사가 법률이나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교사는 오랜 세월동안 학생을 용서하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체제와 상충된다. 또한 업무부담으로 회복적 정의를 적용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수업일수는 단축되었으나 수업시간은 그대로라 교과지도의 부담이 높아졌고 행정업무 처리와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리가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절차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교사의 업무에서 배제하여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진행자가 학교폭력을 중립적으로 다루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법조인과 경찰, 의사, 상담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의 종합대책이 처벌 중심의 응보주의이고 복잡하고 학교에 재량권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교사 주도에 의한 화해는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 되었고 매뉴얼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매뉴얼대로 처리하려면 교사가 경찰, 검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식적,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처분의 강조로 인해 피해자는 배제되는 측면도 있다. 과거 일부학교가 사건을 은폐한 여파로 학교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응체계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적게 발생했는가 아니라 학교폭력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가를 평가지표로 삼아야 한다.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적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은폐사레나 불공정사레가 발생하면 징계 등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회복적 절차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가해학생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보다 가정에 대한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 학부모의 변화를 위해 학교에서 강의나 심리상담을 준비해도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해자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예방교육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교육과 활동에 대한 접근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생활지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는 국정교과서로 단일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에 관한 교과내용을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를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교과서를 개발하여 이것이 수업시간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례4-교사들은 지난 수십년간(혹은 백년간) 학생들을 용서해 주도록 훈련받아 왔고, 그것을 평생의 의무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가진 교원집단과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학폭법 체제는 상충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사례6- 교육부의 종합대책은 처벌위주의 정책이 되면서 오히려 교사 주도에 의한 화해는 ‘사건 은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매뉴얼에 어긋나지 않게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괜히 담임교사가 힘들게 나서서 조정을 할 권한도 필요성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례7-최근 학교현장에선, 수업일수는 단축됐으나 수업 시간은 그대로인 관계로 교과 지도의 부담 뿐 아니라 복잡해지고 많아진 행정업무처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로 학생생활 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 처리는 근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처리 자체가 어렵고 결과에 대해 관련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담보 받지 못합니다.

사례9-학교폭력의 원인은 학교보다는 개인, 가정, 사회에 있는데 이를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가 아닌 가정에서의 개입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례13-현장에서 만나본 상당수의 피해학생 부모들이 “처벌이나 피해보상이 아닌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가해학생과 부모들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고, 고개숙일 때 피해학생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분을 면제해 줄 것을 탄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처해 준 피해학생을 오히려 돕고 지켜주는 가해학생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피해학생측의 의사와 별 관계없이 가해학생의 행위의 경중만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례18-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 아무런 재량도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사건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데 따른 여파라고 할 것 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법 보다는 교육적인 선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기부 기재 때문에 가해자는 사실인정을 하지 않거나 책임 전가를 하거나 학교의 조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분노하고 상처받게 되며 폭력사실의 입증에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어 학교는 ‘정작 무엇을 위해 사안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기부 기재 때문에 가해자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사례28-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자치위원회 운영이 학부모와 학생생활지도 부장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한계를 보이는 있는 상황에서 동일위원을 중심으로 한 분쟁조정은 학교 내에서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학교폭력 처리 및 대응체계 중에서 사법절차에서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부분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사법절차에서의 결정이 이중적으로 진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행정법상의 벌칙이므로 형사법적 처분과는 별개이고, 따돌림과 같이 심리적인 폭력의 경우 형사사법절차로 의율하기는 어렵지만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운영할 의미도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부모가 사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교육적 징계를 또 받는 것은 이중처벌 아니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당사자는 이중처벌의 불만을 갖는다. 게다가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중에 보호자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중적인 결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록 법률적으로 이중처벌은 아닐지라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가피해학생이 여기 저기에서 진술하다가 지치고 교육적 개입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 심지어는 학교장이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조차도 자치위원회 조치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이다. 과도한 형사화를 막고 교육적 개입이 우선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입건만 되어도 수사기록이 남게 되므로 낙인효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내 사안처리와 회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므로 학교에서의 절차를 회복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절차에 반영하여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합의서를 사법절차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결과를 화해권고 결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학교폭력예방법의 강화로 인해 사법절차처럼 진행되고 있으므로 학교절차와 사법절차의 역할을 분리하여 학교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조정에 치중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사법절차를 적용하도록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회복적 정의가 가급적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형사조정은 검찰단계, 화해권고는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사법절차가 진행될수록 갈등이 깊어지므로 가장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에 도입되었던 ‘선도조건부 불입건’이나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선도조건부 훈방’과 결합하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회복적 절차를 통해 피해학생의 조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재전문가로 교육하여 활용한다면 검사나 판사에 비해 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하므로 이점이 있다.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입건하고, 입건이 된 후라면 검찰단계에서 회복적 절차를 통해 기소유예하며,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통해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화해권고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화해권고제도는 갈등조정
에 전문성을 가진 화해권고위원이 많지 않고 갈등이 깊어진 이후에 개입하므로써 성공률이
떨어진다. 화해권고제도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화해권고라는
용어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중립적이지 못한 용어이므로 분쟁조정 같은 단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청소년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복적 사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거나 사법절차의 진행 필요성을 회복적 정의의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호사건에서 부모의 문제해결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직장에서도 시간배려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호사건과 형사사
건의 이원화로 인해 회복적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독립된 소년법원을 설치해 소년사건과
형사사건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형사처분 결과를 민사사건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하
여 판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례5-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결정하고 분쟁조정 결과로 나온
합의를 존중해준다면 회복적정의와 응보적정의의 기존사법체제가 양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12-사법절차는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 양자를
연계하여 운영하다 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지연되어 피해학생의 손해를 확대할
우려도 있습니다. 학교 내 사안처리만 회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사자들은 굳이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법절차에서의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
라고 봅니다.

사례13-경찰에서는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2014.7월말 현재
974명이 배치되었고, 2015년까지 1,138명(1인당 약 10개교 담당)을 배치할 계획
입니다. 강원경찰청 ‘너와함께(With you)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재전
문가(강원청은 회복적 대화 전문가)로 교육시켜 활용한다면 사법절차가 아닌 화해
회복을 통해 종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소년전과자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18-회복적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적 개입인 화해권고제도는 사법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너무 늦은 감이 있으며 화해권고 절차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들이 많고 진행하더라도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22-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 간의 이중처벌 가능성을 없애고 한 가지 방향으로 사안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중처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

가. 학교폭력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필요성

조사대상 전문가 대부분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모델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전문가는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하되 응보적 정의와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먼저 회복적 정의모델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응보적 정의는 학교폭력을 억제할 뿐, 피해학생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자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처벌위주 대책은 문제를 일시적으로만 억압할 수 있을 뿐, 재발방지 효과가 낮다. 가해자의 성행개선이 피해자 보호로 연결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해야 성행개선이 된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학교폭력은 가정과 사회 문제가 학교 요인과 결합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한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동체도 안전하지 않다. 사회에 갈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상황 대처력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의 선도 재량권 박탈로 후속 분쟁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 깊어져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계속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회복이 중요하다.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해학생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회복적 접근 뿐 아니라 응보적 조치도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중과 학생간의 관계를 고려해 강력한 처벌과 가피해자 분리, 관계회복이 모두 필요하다.

사례5-회복적 정의모델을 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급합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은 단지 학교내부의 원인으로만 귀속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폭력사안이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학교에서 어떤 자극요인으로 인해 폭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복적정의는 본래 공동체 정의이므로 지역사회, 학부모, 학교 등의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사례18-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살게 된다는 면에서(가해자가 전학, 퇴학이라는 조치로 학교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다) 쌍방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전형적인 관계 폭력이고 회복적 개입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은 어렵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면서 가해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피해자도 안전해집니다.

사례22-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과 잘못된 이들의 수치심을 재통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단계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경우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모든 단계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예방단계 또는 학교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지만, 대체로 사안발생 초기에 회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모든 단계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하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교육과정에서 회복적 정의를 위한 기초능력을 길러주고, 다음으로 또래조정과 또래상담,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정의를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사법처우에서 한번 더 회복적 정의를 구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같이 예방교육, 학교차원의 처리, 사법처리의 전단계에서 회복적 정의모델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모든 단계에 도입이 되어야 행정적인 처리와 형사적 처리 모두에 적합한 회복적 정의 모델이 정착될 수 있다.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시하되 사실규명이 끝난 상태에서 개입하고 모든 단계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모든 단계에서 도입이 필요한데, 예방교육 단계에서는 교사가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 평화적 의사소통 훈련, 회복적 서클 프로세스를 활용한 학급회의 등을 실시하고, 학교차원의 처리단계에서는 회복적 전문가가 단담하여 가피해대화모임과 자치위원회 분쟁조정을 진행하도록 하며, 학교차원의 회복적 노력이 실패한 경우 사법절차에서도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도록 한다.

사안발생 초기에는 감정이 고조되어 회복에 어려움이 있고, 법원단계에서는 갈등이 오래되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효과가 있을지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에 따른 개입이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다음으로 학교차원의 처리과정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먼저 회복적 개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종결처리하거나 조치결정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조사 단계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권고나 명령의 형식으로 가피해자가 회복적서클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 참여 정도와 성실성을 평가해 조치결정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사건초기에 개입해야 효과적이므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개입하여 화해가 이루어지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차원에서 회복적 정의를 도입하기 위해 법조인, 상담가, 퇴직교원 등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전문가풀을 학교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차원의 처리단계에서 몇가지 회복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모듈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법절차 이전에 도입하여 그 결과를 사법절차에서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써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차원에서 비폭력대화 생활화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단계에서 갈등해결은 관계맺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사례6-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 모델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첫째, 교육과정안에 회복적 정의를 위한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필요하고, 둘째, 예방교육에서 또래조정, 상담,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한 회복적 정의를 구현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셋째, 사법처우에서 한 번 더 회복적 정의를 구현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단계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0-회복적 정의모델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효과를 고려하여 소년법상의 형사처벌 이전에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를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단계에서 참고토록 하여 학교에서의 선도·교육적 효과가 기관 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개별 학생에 대하여 중복적인 처벌을 피하게 됨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례12-회복적 정의모델은 일단 예방교육 단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교육 단계에서 ‘갈등해결은 관계맺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사례17-어느 단계에 도입해도 좋으나 반드시 “사실규명”이 끝난 상태에서 개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를 다 실시하되 “정보공유”가 중요합니다.

사례18-가급적 빠른 시기에 개입할수록 효과적입니다.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수사 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26-매 단계에서 필요하고, 단계별로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갈등해결센터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6~8년 회복적정의 실험연구 당시 경찰이나 법원단계에서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때는 사건이 발생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당사자 간 감정이 너무 나빠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계에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해 2009년부터 학교단계에서 회복적 접근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다. 회복적 정의의 실무유형 중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

회복적 정의의 실무유형을 예시하고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형사사법과의 관계에서는 확장론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었고, 예시한 프로그램 외에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먼저 확장론을 지지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폭력에 관련된 또래집단이 존재하므로 순수론에 따른 절차 중심의 해결모델로 국한한 필요가 없다.

결과가 회복적이라면 회복적 정의로 보는 것이 학교교육 목표에 부합한다. 순수론은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교육단계에서 학생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응보적 정의 실현이라기 보다는 교육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장론이 적합하다. 현행 사법제도에서 순수론의 도입은 반대로 인해 시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여 확장하는 확장론의 도입이 수월하다. 한편, 순수론과 확장론으로 나누는 분류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지 회복적 정의의 원칙과 가치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순수론을 지지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회복적 개입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순수론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실패한 경우에만 형사사법절차가 개입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해야 회복적이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가 함께 개인하여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순수론이 적합하고 절실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확장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응보적

사례24-갈등에 대한 조정(mediation)모델은 전문가적 기량이 필요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모델이어서 갈등을 다루는 서클(circle)모델이 더 단순하고, 적정기술-공동체원이면 누구나 갈등 다루는 진행자로 설 수 있는-에 다가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으니깐요.

라.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

학교현장에서는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가 사법적 개념이라 학교내 처리절차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회복적 갈등해결’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 ‘회복적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나 회복적 정의 아래 하위개념을 혼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다양한 용어가 제안되었는데 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관계회복 절차, 회복적 활동, 회복적 서클, 갈등회복교육, 회복적생활교육, 회복적 절차, 교우관계회복, 평화적 회복절차, 갈등조정, 회복적 활동, 회복적 훈육, 회복적 실천, 평화교육, 평화롭고 안전한 학급·학교 세우기, 화해 등이다.

사례5-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교육계에서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현장에 적용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평화개념이나 갈등해결 개념은 기존에 통용되던 용어이므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희석되기 쉽고 회복적실천은 시민사회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적용의 통칭이므로 학교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좋습니다.

사례22-이미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를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두고 그 밑에 회복적 사법, 회복적 실천, 회복적 훈육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는 회복적 실천(practice)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회복적 활동(action), 학교는 회복적 훈육(discipline)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례23-현재 (사)좋은교사운동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회복적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처벌중심의 생활

지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계성을 강화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24-외국사례에서는 회복적 정의 →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 → 학교에서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등으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한 방식으로 정착하는 시도때문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회복적 실천, 시민사회에서 회복적 실천, 사법에서 회복적 실천 등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학교폭력 개념이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분쟁조정이라는 세가지 축을 모두 담고 있는지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행 학교폭력의 정의에 덧붙여 가해학생, 피해학생, 주변학생에 대한 개념을 하위항목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힘의 불균형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해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분쟁조정이라는 세가지 축을 모두 담을 수 있다. 피해학생 치유를 통한 가해행위로의 전이예방, 분쟁조정을 통한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야 균형있는 접근이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회복적 과정을 명시하고, 당사자의 분쟁조정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폭력적이므로 '학교평화교육법'과 같은 긍정적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를 '학생간'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너무 넓게 정의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의 재량권이 없이 회복적 개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에서, 학교폭력의 범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고, 지속성과 의도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다룰 갈등과 사법적으로 다룰 폭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학교폭력 정의는 가해학생의 선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 중심의 정의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정의이다. 오히려 피해학생만 강조하고 있어 가해학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관점에서 규정된 개념이다.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사례6-개념정의에 bullying 즉 힘의 불균형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해학생 자체가 학교폭력이 아니라 힘(감정 등)의 불균형 그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해야지만, 피해학생 보호, 분쟁조정이라는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5-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학교라는 공간이 폭력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둠과 싸우기보다 빛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학교평화교육법” 등의 긍정적인 용어로 바꾸든지 하여 폭력문제도 다루고 피해자회복문제를 더욱 중점으로 다루고 가해자문제는 조정 등의 회복적 접근 모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12-현행 학교폭력의 개념이 가해학생의 선도에 중심을 둔 개념 정의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관점에서 규정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회복적 정의모델 지원체계 및 종합적인 의견

가. 지원체계 구축방안

가) 시설 구축방안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써 시설 구축방안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중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그 외 회복적 커뮤니티센터의 설립, 위센터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이 있었다. 이러한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으

로는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공동예산으로 설립하는 방안과 지자체와 민간단체 협업(MOU) 방안이 제안되었다.

사례17-학교폭력 관계자 모두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중재센터와 같은 전체 절차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나) 인력 확충방안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써 인력 구축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중재전문가를 양성해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갈등해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정 및 상담 전문가 양성하고 인력풀 구성, 한국비폭력대화센터, 한국평화교육훈련원, 갈등해결센터, 좋은교사운동의 교육인력 활용, 지역사회 상담, 심리, 교육, 법률 전문가를 중재전문가로 양성하여 화해권고위원으로 활용, 회복적 정의 관련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워크숍 및 연구집단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학교 교직원을 중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중재 전문과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중재전문 인력의 배치방안으로써 교육지원청별로 30-50개 학교당 1명씩 중재전문가 배치(교육지원청별 5-10명), 경찰서에 기존 선도심사위원 중에 중재위원 1명 위촉(교육지원청 위원 활용), 학교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행 조정위원 체제를 지양하고 상주인력 배치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5-중재전문가는 한국비폭력대화센터의 교육인력,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교육인력, 갈등해결센터의 교육인력, 좋은교사운동의 교육인력 등이 있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은 인력도 있고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와 교육훈련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이해는 법조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예산 확보방안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써 예산 확보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산은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국고예산을 책정하여 기본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안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학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인식확산을 위한 민간펀드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례10-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기관간 협의체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라)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정방안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써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정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통일된 매뉴얼 개발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위해서는 매뉴얼 필요하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열린 형태의 매뉴얼 개발해야 하고, 화해권고와 같이 외부위원 위촉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일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의견이 제안되었는데, 일원화된 중재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에 조문 신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기관협조와 예산확보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상 ‘분쟁조정’ 용어 변경, 경찰단계의 선도조건부 훈방 및 분쟁조정을 통한 입건유예 등 소년법에 조문 신설, 경찰단계 분쟁조정을 통한 수사종결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 신설 등이다.

사례6-일원화된 중재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센터는 지역별로 설치되고 분쟁조정지원 파트, 분쟁조정교육, 분쟁연구 파트로 분리합니다. 분쟁조정지원 파트는 조정과 상담 전문가, 법률 전문가등으로 구성되어 팀단위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이는 학교 분쟁조정 단계부터 사법 처리절차에서까지 가·피해자를 지원하고 희망하는 동일한 팀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사례9-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나, 사안의 성격, 학생간의 관계, 중재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므로, 열려있는 형태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마)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차원에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회복적 정의 전문기관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지역 및 학교차원에서는 지역별 회복적 거점지역 형성을 통한 지역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시스템, 학교단위로 학칙과 선도위원회규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칙 등에 대한 구성원 합의를 통한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한편, 당사자와 담임교사, 전담기구, 중재센터, 학교전담경찰관, 자치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법에서 화해권고 뿐 아니라 사후프로그램과 대안교육 등 회복적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사례5-시스템 구축은 학교마다 필요하며 이는 학칙, 선도위원회규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칙 등에서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합의와 공동노력이 절실합니다.

사례13-사안발생 → 피해자 보호조치 및 보호자 연락(담임) →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화해조정 안내(전담기구) → 교육지원청 중재센터에서 해당학교 담당위원이 학교방문 화해조정(당사자중재센터·전담기구·학교전담경찰관) → 합의서(당사자) /조사결과(전담기구) 및 화해조정 종결결과보고서(중재센터) 작성 → 결정·추인(자치위원회)

사례19-현재 소년법에서 회복적 정의모델은 단순히 화해권고나 조정만이 아닌 기

소유에나 훈방처분을 받는 아이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이원적 구조 개선방안

가)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른 대응과 형법 및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대응의 이원적 구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대응과 형법 및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대응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이원적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는 의견이 일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개인에게는 이중처벌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에서 고려, 특히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이수기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대체, 학교내의 갈등은 회복적 개입을 통한 분쟁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사안만 사법체계 적용,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회복적 절차로 진행, 갈등중재센터에서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 결정 등이다.

한편 이원적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교절차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법 및 소년법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 있으므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례6-학교내 갈등은 분쟁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사법체계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학교폭력감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업무증가, 학교폭력 결과처리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처벌'을 내린다는 자체가 옳지 않은 방법이며, '처벌'에 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례13-행정법과 형사법 자체가 상호 독립관계에 있으므로 처분을 일원화하기는 가해학생측에서 경찰이나 검찰법원에 자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제출시 형사처분에서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수강명령(학폭법상 5호 특별교육)이나 사회봉

사 명령(학폭법상 4호 사회봉사) 등은 이수기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사례17-학교폭력예방법의 징계와 소년법의 보호처분이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각각 상담조사를 하는데 이런 정보가 재판단계까지 연계되지 않아 상담조사 결과를 알수 없어 여러번 반복되고 있어 다중처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등중재센터”가 있으면 이곳에서 진행한 사건은 심리불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18-사실상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와 고소, 117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지치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막상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는 모두가 허탈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힘들기만 했지 얻은 것이 없다고 느끼고 가해자는 너무 시달렸다는 생각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게 되어 여전히 성행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형사화를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 학교현장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

학교현장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선도위원회는 학칙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자치위원회는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있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도위원회에 자치위원회 업무를 포함해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피해자가 있는 학교폭력의 특성상 이원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먼저 일원화에 관한 의견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두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를 통합하고 사안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이원적 운영에 관한 의견은 적용사안이 다르므로 이원적 운영이 바람직하고, 학교폭력은 인권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원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원적 운영은 좋지만 학교별 자치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단위로 운영, 별도로 운영하되 학칙위반과 학교폭력이 동시발생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원적으로 대처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례18-학교폭력은 모두 자치위원회로 그 밖에 교권침해, 절도, 흡연, 교칙위반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자치위원회가 익숙한 기구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자치위원회를 통한 사안처리에 이제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이긴 하나, 사실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들어낸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굳이 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다.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의 역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학교폭력은 학교내 자원으로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전반적으로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모가 회복적 정의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안으로 직장내 부모교육 의무화, 직장에서 학부모 학교출석 보장, 아파트단위 부모연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전제인 공감의 의사소통 운동을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개, 교사의 전근으로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지속성과 안전성이 유지되는 지역사회 역량 구축, 민간단체나 지역사회 전문가팀의 학교지원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민간단체의 분쟁조정팀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제3의 전문기관이 개입하여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보장 등이 제안되었다.

사례1-학교폭력은 학교 내 자원으로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청예단의 SOS지원단, 학가협의 해맑은 학교 등은 민간단체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례5-지역사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양한 지역에서 회복적 정의에 토대한 도시건설 및 지역공동체건설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공부모임 및 지원모임들이 꾸려져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27-학교내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지역사

회의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지역내 학교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라. 기타 건의 및 요구 사항

이상 논의된 의견들 외에 추가적으로 건의 및 요구사항을 알아본 결과, 몇 명의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학교폭력의 회복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현재는 교사의 자체 종결처리 권한이 없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사에게 재량권 부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갈등 초기에 회복적 정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절차에서는 조사단계, 사법절차에서는 경찰단계에 회복적 정의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즉, 예방교육은 교사와 학교가 담당하고, 신고와 처리는 회복적 전문 진행자가 담당하며, 해결과정은 지역사회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먼저 회복적 정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공적인 모델사례가 나오려면 거점지역과 시범학교를 통해 핵심역량이 훈련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와 실천이 동시에 가능한 인력이 매우 적으므로 연구집단이 실천가와 협력하여 관련 실천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사례1-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회복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기 대응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에서는 교사가 화해를 전제로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령 폭력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여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 모델 적용 논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사들에게 그 재량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13-우리나라의 분쟁조정, 화해조정절차는 독일계 사법절차와 같이 법원·검찰 등 최종처리 단계에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는 영미법계처럼 갈등 초기 단계인 학교(조사단계인 전담기구), 경찰단계에서 회복

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중재전문가들이 교육지원청 등에 상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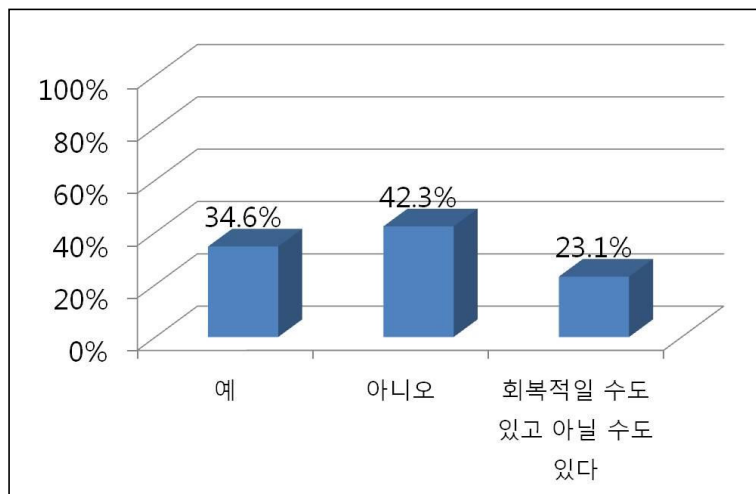
사례23-학교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사와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와 처리과정은 회복적 전문 진행자가, 학교폭력 해결 과정 참여는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합니다.

2) 2차조사 결과분석

(1) 현행 회복적 정의 관련 제도에 관한 의견

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그림 V-2-1】 분쟁조정 의 회복적 제도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약칭)에 의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가 회복적인 제도인지에 대하여 물은 결과 ‘아니오(42.3%)’, ‘예(34.6%)’,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23.1%)’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에 기여(1.22)’,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방식으로 진행(3.11)’, ‘가해학생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따른 관계개선 역할(3.11)’,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규정된 합의조정을 통해 관계회복 가능(3.89)’,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자율적 합의 가능(4.22)’,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회복적(5.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⁴⁷⁾
1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에 기여	1.22
2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방식으로 진행	3.11
2	가해학생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따른 관계개선 역할	3.11
4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규정된 합의조정을 통해 관계회복 가능	3.89
5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자율적 합의 가능	4.22
6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회복적	5.44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은 질문에서는 ‘갈등해결 보다는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단계로 인식(2.94)’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분쟁조정자로서 자치위원의 비전문성(3.63)’, ‘실제 관계회복이 되는 사례가 매우 적음(3.81)’, ‘당사자 관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문제의 경중에 따른 조치 중심(4.37)’, ‘손해배상이 주된 합의조정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적(4.50)’, ‘합의를 통해 처분이 감경되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관계회복 어려움(4.88)’, ‘취지는 회복적이지만 실제로는 회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5.00)’, ‘강제전학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6.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는 조정을 통해 관계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충분히 회복적인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에 치중하고 있고 자치위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실제 관계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7) 각 문항에 대해 순위를 직접 적도록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코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것임.

표 V-2-2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갈등해결 보다는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단계로 인식	2.94
2	분쟁조정자로서 자치위원의 비전문성	3.63
3	실제 관계회복이 되는 사례가 매우 적음	3.81
4	당사자 관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문제의 경중에 따른 조치 중심	4.37
5	손해배상이 주된 합의조정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적	4.50
6	합의를 통해 처분이 감경되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관계회복 어려움	4.88
7	취지는 회복적이지만 실제로 회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5.00
8	강제전학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6.69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를 묻은 질문에서는 ‘분쟁조정’의 시점은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분쟁조정이 개시되면 조치결정 보류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처리(2.4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갈등중재센터와 같은 분쟁조정 전담기구가 필요, 분쟁조정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제3의 기관이 담당하거나 시도교육청 내 전문기구의 형태로 운영(3.52)’과 ‘학부모에게 회복적 절차에 관해 안내하고, 경미한 사안은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행한 후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서 인준하는 학교 내 회복적 시스템 구축(3.52)’이 동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교사 연수제도 등 회복적 정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4.26)’,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가피해 학생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배치(4.52)’, ‘분쟁조정보다는 화해나 갈등조정, 관계회복이라는 회복적용어로 개정(5.26)’,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중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중심의 분쟁조정 개시와 중지(6.00)’, ‘현재 1개월인 분쟁조정 기간을 유연하게 개정(6.48)’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가 꼽은 중요도 상위권을 분석해 보면, 분쟁조정과 자치위원회를 분리하고, 분쟁조정 기구도 학교와 분리하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이 회복적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치위원회와 분리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볼때, 전문가들은 현행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대해

회복적 관점에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V-2-3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분쟁조정 시점은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분쟁조정이 개시되면 조치결정 보류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2.43
2	‘갈등중재센터’와 같은 분쟁조정 전담기구가 필요. 분쟁조정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제3의 기관이 담당하거나 시도교육청 내 전문기구의 형태로 운영	3.52
2	학부모에게 회복적 절차에 관해 안내하고, 경미한 사안은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행한 후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서 인준하는 학교 내 회복적 시스템 구축	3.52
4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교사 연수제도 등 회복적 정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4.26
5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가피해 학생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배치	4.52
6	분쟁조정보다는 화해나 갈등조정, 관계회복이라는 회복적용어로 개정	5.26
7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중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중심의 분쟁조정 개시와 중지	6.00
8	현재 1개월인 분쟁조정 기간을 유연하게 개정	6.48

다) 회복적 분쟁조정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복적 분쟁조정에 성공한 요인에 대한 응답은 ‘가해학생의 진실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사과 등 가해학생의 태도(3.15)’, ‘피해자의 심리적인 회복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경우(3.65)’, ‘서로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3.75)’, ‘학부모가 관계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3.95)’, ‘분쟁조정 전문가나 갈등중재 전문가 등 전문적인 제3자의 개입(4.40)’, ‘학교의 중립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결정(5.25)’, ‘학생·부모·교사·지역사회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5.60)’,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피해자 중심 대처(6.25)’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회복적 분쟁조정에 실패한 요인에 대한 응답은 ‘관계회복보다 합리적인 사건처리 치중 등 학교의 대처가 부적절한 경우(2.37)’, ‘분쟁조정과 조치결정이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2.89)’, ‘사실규명에 실패한 경우(3.16)’,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견해차(3.32)’,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3.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4 회복적 분쟁조정에 성공한 요인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가해학생의 진실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사과 등 가해학생의 태도	3.15
2	피해자의 심리적인 회복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경우	3.65
3	서로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	3.75
4	학부모가 관계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	3.95
5	분쟁조정 전문가나 갈등중재 전문가 등 전문적인 제3자의 개입	4.40
6	학교의 중립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결정	5.25
7	학생·부모·교사·지역사회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5.60
8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피해자 중심 대처	6.25

표 V-2-5 회복적 분쟁조정에 실패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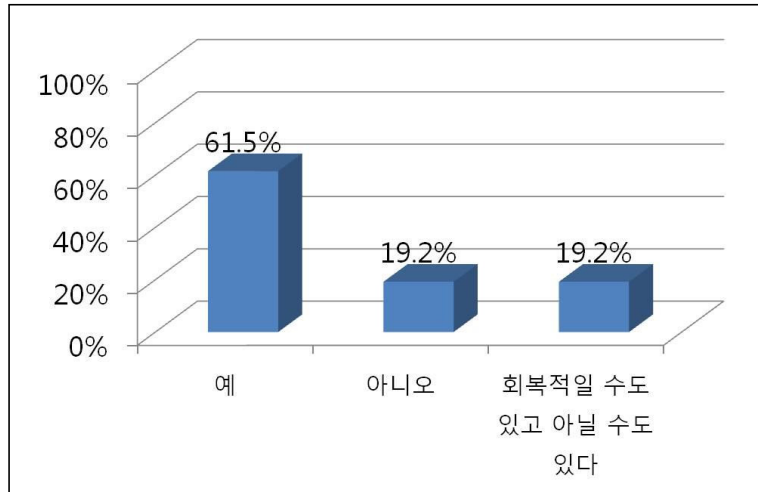
순위	요인	평균
1	관계회복보다 합리적인 사건처리 치중 등 학교의 대처가 부적절한 경우	2.37
2	분쟁조정과 조치결정이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	2.89
3	사실규명에 실패한 경우	3.16
4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견해차	3.32
5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3.42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회복적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처리의 절차적인 합리성보다는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고,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해학생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동기부여가 되려면 조정결과가 조치결정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또래조정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시범운영되고 있는 또래조정 제도에 관하여 이 제도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예(61.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아니오(19.2%)'와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19.2%)'가 같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V-2-2】 또래조정의 회복적 제도 여부

또래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또래 친구의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회복에 기여(1.93)', '학생 상호간 발달단계에 맞는 수준에서 공감과 이해를 통해 문제해결 모색(3.07)',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갈등조정(4.07)', '또래의 방식으로 또래의 눈높이에서 문제해결(4.53)', '갈등의 처리가 아니라 갈등의 이해 과정(4.60)', '또래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해결 노력(5.67)',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정을 통해 관계악화 방지(5.87)',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회복적 조정 가능(7.60)', '학생들은 어른보다 정직하기 때문에 사실규명을 통한 회복 용이(7.67)'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학생과 지도교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많음(2.20)',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또래조정으로 화해가 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음(2.40)', '학생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정책적 지원으로 확산됨(2.60)', '회복적으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2.80)'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갈등해소, 공감, 자발성 등 회복적 요소를 갖고 있어 관계회복에 기여하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는 지도교사의 역량부족이나 또래조정과 별개로 운영되는 자치위원회 등으로 인해 아직 회복적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 교사에 대한 역량강화와 절차적 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V-2-6 또래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또래 친구의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회복에 기여	1.93
2	학생 상호간 발달단계에 맞는 수준에서 공감과 이해를 통해 문제해결 모색	3.07
3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갈등조정	4.07
4	또래의 방식으로 또래의 눈높이에서 문제해결	4.53
5	갈등의 처리가 아니라 갈등의 이해 과정	4.60
6	또래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해결 조력	5.67
7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정을 통해 관계악화 방지	5.87
8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회복적 조정 가능	7.60
9	학생들은 어른보다 정직하기 때문에 사실규명을 통한 회복 용이	7.67

표 V-2-7 또래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학생과 지도교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많음	2.20
2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또래조정 으로 화해가 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음	2.40
3	학생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정책적 지원으로 확산됨	2.60
4	회복적으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2.80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또래조정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를 묻은 질문에서 ‘또래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안은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2.68)’, ‘또래조정을 또래상담, 자치법정과 연계하여 유사한 자치활동을 통합해서 운영(3.00)’,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연합세미나, 매뉴얼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조정자 교육 훈련 강화 등 또래조정자의 역량강화(3.00)’, ‘또래조정 제도에 대한 학교 전체의 이해 증진(3.28)’, ‘3년간 시범운영 하는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제도의 확대 및 법제화(3.88)’, ‘모범생 위주의 선발 지양 및 또래조정자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지원(5.00)’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또래조정이 회복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또래조정 결과에 상관없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도 또래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안은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또래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2-8 또래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또래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안은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2.68
2	또래조정을 또래상담, 자치법정과 연계하여 유사한 자치활동을 통합해서 운영	3.00
2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연합세미나, 매뉴얼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조정자 교육 훈련 강화 등 또래조정자의 역량강화	3.00
4	또래조정 제도에 대한 학교 전체의 이해 증진	3.28
5	3년간 시범운영 하는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제도의 확대 및 법제화	3.88
6	모범생 위주의 선발 지양 및 또래조정자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지원	5.00

다) 회복적 또래조정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또래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복적 또래조정에 성공한 요인의 우선순위를 물은 질문에서는 ‘또래조정 참여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화(2.44)’, ‘또래조정자의 역량(2.69)’, ‘지도교사의 지도력과 전문성(2.75)’, ‘또래조정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2.75)’, ‘피해학생 중심의 결과도출 유도(4.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9 회복적 또래조정에 성공한 요인

순위	요인	평균
1	또래조정 참여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화	2.44
2	또래조정자의 역량	2.69
3	지도교사의 지도력과 전문성	2.75
3	또래조정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2.75
5	피해학생 중심의 결과도출 유도	4.38

또래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회복적 또래조정에 실패한 요인의 우선순위는 ‘조정결과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2.33)’, ‘조정이 이루어져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2.80)’, ‘조정자로부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경우(3.00)’, ‘조정자가 일방적인 훈계를 한 경우(3.13)’, ‘책임교사가 없는 경우(3.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0 회복적 또래조정에 실패한 요인

순위	요인	평균
1	조정결과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2.33
2	조정이 이루어져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	2.80
3	조정자로부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경우	3.00
4	조정자가 일방적인 훈계를 한 경우	3.13
5	책임교사가 없는 경우	3.73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회복적 또래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등당사자와 조정자, 지도교사 등 관계자 모두의 역동성이 중요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또래조정 결과를 토대로 사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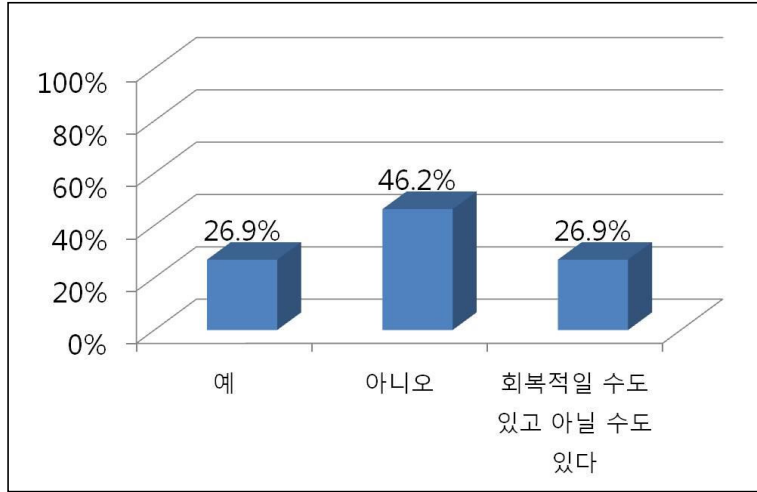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 제도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예’와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26.9%로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제도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기회 제공을 통해 반성과 개선의지 함양(1.00)’, ‘가해학생에 대한 자발적 책임 부여(2.00)’, ‘피해학생의 수용을 고려(3.29)’, ‘사회봉사와 교육을 통해 사회와의 관계회복(3.71)’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제도가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은 질문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이 없음(2.11)’, ‘이 제도의 취지는 회복적 정의보다는 응보적 정의를 갖고 있음(2.28)’,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에게 회복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복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2.39)’, ‘사안 발생 후 2주일 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회복적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결정이 이루어짐(3.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2-3】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회복적 제도 여부

표 V-2-11 서면사과봉사교육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기회 제공을 통해 반성과 개선의지 함양	1.00
2	가해학생에 대한 자발적 책임 부여	2.00
3	피해학생의 수용을 고려	3.29
4	사회봉사와 교육을 통해 사회와의 관계회복	3.71

표 V-2-12 서면사과봉사교육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이 없음	2.11
2	이 제도의 취지는 회복적 정의보다는 응보적 정의를 갖고 있음	2.28
3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에게 회복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복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	2.39
4	사안 발생 후 2주일 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회복적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결정이 이루어짐	3.22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의 반성기회가 되어 회복적일 수도 있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이 없고, 애초에 응보적 취지를 갖고 있는 제도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아 장차 회복적 운영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를 묻은 질문에서는 ‘봉사 및 교육 내용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2.16)’, ‘강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자발적 동기 부여(2.80)’,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 조치결정의 회복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 선결(3.00)’, ‘봉사 및 교육 시행기관의 전문성 제고(3.20)’, ‘담임교사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만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 지원(3.84)’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회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프로그램의 내용이 회복적이어야 하고, 가해학생에게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회복적 정의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V-2-13 서면사과봉사교육 조치의 개선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봉사 및 교육 내용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	2.16
2	강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자발적 동기 부여	2.80
3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 조치결정의 회복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 선결	3.00
4	봉사 및 교육 시행기관의 전문성 제고	3.20
5	담임교사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만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 지원	3.84

다) 회복적 가해학생 조치의 성공 및 실패 요인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복적 서면사과봉사교육에 성공한 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1.81)’, ‘서면사과의 진정성(2.94)’,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3.25)’, ‘가피해학생 부모가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3.3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대한 신뢰와 사후지도(3.69)’로 나타났다.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회복적 서면사과봉사교육에 실패한 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봉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1.47)’,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이를 지도할 전문가가 많지 않음(1.89)’,

‘봉사나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효과 반감(2.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4 회복적 서면사과봉사교육에 성공한 요인

순위	요인	평균
1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1.81
2	서면사과의 진정성	2.94
3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	3.25
4	가피해학생 부모가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3.31
5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대한 신뢰와 사후지도	3.69

표 V-2-15 회복적 서면사과봉사교육에 실패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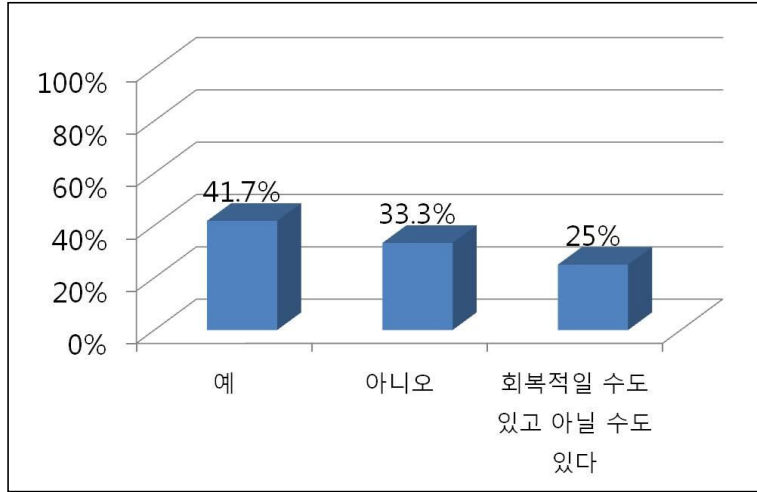
순위	요인	평균
1	봉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	1.47
2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이를 지도할 전문가가 많지 않음	1.89
3	봉사나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효과 반감	2.63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해학생 조치가 회복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이러한 반성이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프로그램은 봉사나 교육 내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회복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형사조정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에 관하여 이 제도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예(41.7%)’, ‘아니오(33.3%)’,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2-4】 형사조정의 회복적 제도 여부

형사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함(2.30)’,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3.60)’, ‘중립적인 조정자가 절차에 참여(3.90)’, ‘당사자의 입장표명 기회를 통해 치유효과(4.00)’, ‘조정결과가 사건처리에 반영(4.90)’, ‘제3자가 가피해자의 요구를 조정하여 충족시킴(5.00)’, ‘피해자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하거나 형사조정을 원한 경우(6.10)’,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6.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6 형사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형사처벌 대신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함	2.30
2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	3.60
3	중립적인 조정자가 절차에 참여	3.90
4	당사자의 입장표명 기회를 통해 치유효과	4.00
5	조정결과가 사건처리에 반영	4.90
6	제3자가 가피해자의 요구를 조정하여 충족시킴	5.00
7	피해자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하거나 형사조정을 원한 경우	6.10
8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6.20

형사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통한 합의에 그침(2.36)’,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2.36)’, ‘형사사건 절차 간소화일 뿐임(2.64)’, ‘운영방식에 따라 회복적일 수 있지만 현재는 물질적 보상에 치우침(2.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7 형사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물질적 보상을 통한 합의에 그침	2.36
1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2.36
3	형사사건 절차 간소화일 뿐임	2.64
3	운영방식에 따라 회복적일 수 있지만 현재는 물질적 보상에 치우침	2.64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에 따라 회복적일 수 있지만 현재는 물질적 보상에 그칠 뿐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복적이지 않다는 전문가도 있었지만, 처벌대신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회복적인 제도라고 보는 전문가가 더 많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회복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형사조정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를 묻은 결과 ‘조정과 화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전문가 개입(2.45)’, ‘조정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전문화(3.82)’, ‘물질적 보상 뿐 아니라 진정한 회복 필요(4.41)’, ‘형사조정은 검찰단계의 제도이므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경찰단계에 도입하여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입건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4.41)’, ‘당사자 동의절차 등 형사조정 운영체계 개선(4.55)’, ‘가해자가 합의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별도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에 대한 절차안내 등 제도보완(5.00)’,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조정 가능하도록 적용 확대(5.50)’, ‘회복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간 연장(5.64)’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회복적인 형사조정을 위해서는 물질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되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재전문가 개입 및 조정위원의 전문화를 제안하고 있어 무엇보다 조정인력의 전문화가 선결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형사조정을 경찰단계로 확대한다면 회복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V-2-18 형사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조정과 화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전문가 개입	2.45
2	조정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전문화	3.82
3	물질적 보상 뿐 아니라 진정한 회복 필요	4.41
3	형사조정은 검찰단계의 제도이므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경찰단계에 도입하여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입건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4.41
5	당사자 동의절차 등 형사조정 운영체계 개선	4.55
6	가해자가 합의이행을 하지않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별도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에 대한 절차안내 등 제도보완	5.00
7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조정 가능하도록 적용 확대	5.50
8	회복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간 연장	5.64

다) 회복적 형사조정의 성공 및 실패 요인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복적 형사조정에 성공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가해자가 진정성이 있는 반성을 한 경우(1.77)', '당사자간 관계유지 필요성이 설득된 경우(2.00)', '합의이행 시 형벌의 감경효과가 큰 경우(2.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9 회복적 형사조정에 성공한 요인

순위	요인	평균
1	가해자가 진정성이 있는 반성을 한 경우	1.77
2	당사자간 관계유지 필요성이 설득된 경우	2.00
3	합의이행 시 형벌의 감경효과가 큰 경우	2.23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회복적 형사조정에 실패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미 감정을 많이 다친 상태(2.07)', '합의이행을 해도 형벌의 감경효과가 적은 경우(2.64)', '사안에 대한 이견(2.86)', '금전적 보상에만 그친 경우(3.43)', '조정결과에 대한 검사의 고려는 임의규정이라는 점(4.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미 당사자간에 감정을 많이 다친 상태에서는 회복적 형사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 경우에는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합의이행을 통해 형벌 감경효과가 높으면 가해자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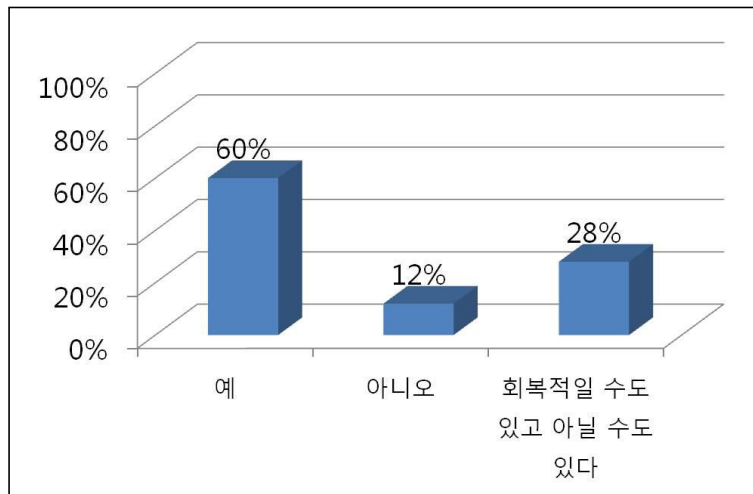
표 V-2-20 회복적 형사조정 실패한 요인

순위	요인	평균
1	이미 감정을 많이 다친 상태	2.07
2	합의이행을 해도 형벌의 감경효과가 적은 경우	2.64
3	사안에 대한 이견	2.86
4	금전적 보상에만 그친 경우	3.43
5	조정결과에 대한 검사의 고려는 임의규정이라는 점	4.00

마. 화해권고

가) 회복적인 제도 여부

소년법상의 화해권고 제도에 관하여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예(60%)',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28%)', '아니오(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2-5】 화해권고의 회복적 제도 여부

화해권고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회복적 정의(2.47)', '갈등해결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관계회복 노력을 하고 있음(3.13)', '가피해 당사자의 대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함으로써 성행개선(3.20)', '운영 매뉴얼과 방식이 형식적인 면에서 회복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3.40)',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에 고려(3.67)',

‘피해자가 안전하게 사과받을 수 있는 점(5.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21 화해권고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제도 도입 취지가 회복적 정의	2.47
2	갈등해결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관계회복 노력을 하고 있음	3.13
3	가피해 당사자의 대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함으로써 성행개선	3.20
4	운영 매뉴얼과 방식이 형식적인 면에서 회복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3.40
5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에 고려	3.67
6	피해자가 안전하게 사과받을 수 있는 점	5.13

화해권고가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원단계까지 간 사건은 심각한 범죄수준이라 피해학생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회복에 어려움이 있음(2.60)’, ‘단순히 손해배상이 기준이 된다면 회복적이지 않음(2.80)’, ‘회복적 정의모델로써 도입된 제도가긴 하지만 실제 운영은 법원이나 소년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소극적으로 운영(3.30)’, ‘사실상 피해자에게 화해가 강요되는 상황임(3.70)’, ‘화해권고 매뉴얼이나 화해권고위원회에 대한 훈련 등이 회복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4.10)’,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경우에 회복적이지 않음(4.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22 화해권고가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법원단계까지 간 사건은 심각한 범죄수준이라 피해학생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회복에 어려움이 있음	2.60
2	단순히 손해배상이 기준이 된다면 회복적이지 않음	2.80
3	회복적 정의모델로써 도입된 제도가긴 하지만 실제 운영은 법원이나 소년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소극적으로 운영	3.30
4	사실상 피해자에게 화해가 강요되는 상황임	3.70
5	화해권고 매뉴얼이나 화해권고위원회에 대한 훈련 등이 회복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4.10
6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경우에 회복적이지 않음	4.50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화해권고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회복적이기 때문에 이데 대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단계에서는 사안이 심각해 가피해학생이 동등한 입장일 수 없고 단순히 손해배상이 기준이

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되면 회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회복적 관점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화해권고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의 우선순위는 ‘경찰단계에서도 화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화해권고를 확대하고, 소년부 판사의 권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화해절차 진행 등 화해권고 확대실시(2.32)’, ‘화해권고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 및 안내를 통해 가피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 등 절차적인 부분의 개선(2.52)’, ‘조정 역량을 갖춘 위원 선정, 전문 조정인력 양성, 조정 전문단체에 위탁 등 화해권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2.56)’,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가정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가해학생이 화해권고에 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구비해줘야 함(2.6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 중에서 화해권고가 가장 회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경찰단계, 소년형사사건, 당사자 신청사건 등 여러가지 절차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가정환경 등 전제조건들의 회복이 선결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표 V-2-23 화해권고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경찰단계에서도 화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화해권고를 확대하고, 소년부 판사의 권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화해절차 진행 등 화해권고 확대실시	2.32
2	화해권고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 및 안내를 통해 가피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 등 절차적인 부분의 개선	2.52
3	조정 역량을 갖춘 위원 선정, 전문 조정인력 양성, 조정 전문단체에 위탁 등 화해권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2.56
4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가정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가해학생이 화해권고에 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구비해줘야 함	2.60

다) 회복적 화해권고의 성공 및 실패 요인

화해권고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복적 화해에 성공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행(2.56)’,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감(2.75)', '화해권고위원의 적극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경우 등 화해권고위원의 역량(3.75)',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한 경우(4.00)', '적절한 피해보상(4.63)', '사안이 경미한 경우(4.69)',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입장인 경우(5.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24 회복적 화해권고에 성공한 요인

순위	요인	평균
1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행	2.56
2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감	2.75
3	화해권고위원의 적극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경우 등 화해권고위원의 역량	3.75
4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한 경우	4.00
5	적절한 피해보상	4.63
6	사안이 경미한 경우	4.69
7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입장인 경우	5.63

화해권고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회복적 화해에 실패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사안처리 절차를 거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경우(1.75)', '가해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화해권고 불응(2.19)', '금전적인 배상액에 대한 의견차이(2.94)', '회복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화해위원의 실수(3.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25 회복적 화해권고에 실패한 요인

순위	요인	평균
1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사안처리 절차를 거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경우	1.75
2	가해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화해권고 불응	2.19
3	금전적인 배상액에 대한 의견차이	2.94
4	회복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화해위원의 실수	3.13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회복적 화해권고에 성공하는 요인에 있어서도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화해권고는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내 처리절차에서 갈등이 깊어진 경우에는 회복적 화해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 회복적 절차는 사안발생 초기에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바.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현행 학교폭력 처리 및 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학교내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으로써의 우선순위는 '교육지원청에 중재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센터를 설치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들 중재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추인하여 '처분유예' 또는 '불처분'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4.17)'과 '모든 사안에 대해 무조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방법을 개정하여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에 따라 대응(4.1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청 산하에 전문 분쟁기구를 두고 민간단체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분쟁조정 절차 진행(4.96)', '학교폭력예방방법에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분쟁해결을 하도록 법적 근거 규정(5.17)', '교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적게 발생했는가 아니라 학교폭력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가를 평가지표로 삼아야 함(6.75)',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예방교육과 사후관리(6.79)', '학교폭력을 교사의 업무에서 배제하여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진행자가 학교폭력을 중립적으로 다루는 구조 마련(6.83)', '가해학생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보다 가정에 대한 개입이 더욱 중요(7.08)', '가해학생에 대한 대안학교 위탁교육 등의 조치를 신설하여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 다양화(7.25)', '가해학생 조치 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의무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7.83)',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8.13)', '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재학중 중간삭제 기회부여(8.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행 학교내 대응체계 중에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학교폭력사건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회복적 처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로부터 독립된 중재기구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 조치결과와 연동하여 불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으로써의 우선순위는 '학교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조정에 치중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사법절차를 적용하도록 이원화(3.25)'와 '형사조정은 검찰단계, 화해권고는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사법절차가 진행될수록 갈등이 깊어지므로 가장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절차 진행(3.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사법절차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3.96)', '보호사건에서 부모의 문제해결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직장에서도 시간배려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4.29),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복적 사범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4.67)',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이원화로 인해 회복적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독립된 소년법원을 설치해 소년사건과 형사사건 통합 운영(5.33)', '화해권고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화해권고보다는 중립적인 '분쟁조정'으로 용어 일원화(5.54)', '형사처분 결과를 민사사건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하여 판단해야 함(5.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26 학교내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교육지원청에 중재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센터를 설치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들 중재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추인하여 '처분유예' 또는 '불처분' 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4.17
1	모든 사안에 대해 무조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에 따라 대응	4.17
3	교육청 산하에 전문 분쟁기구를 두고 민간단체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분쟁 조정 절차 진행	4.96
4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분쟁해결을 하도록 법적 근거 규정	5.17
5	교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적게 발생했는가 아니라 학교폭력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가를 평가지표로 삼아야 함	6.75
6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예방교육과 사후관리	6.79
7	학교폭력을 교사의 업무에서 배제하여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진행자가 학교폭력을 중립적으로 다루는 구조 마련	6.83
8	가해학생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보다 가정에 대한 개입이 더욱 중요	7.08
9	가해학생에 대한 대안학교 위탁교육 등의 조치를 신설하여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 다양화	7.25
10	가해학생 조치 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의무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	7.83
11	학부모위원의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	8.13
12	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재학중 중간삭제 기회부여	8.88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에 개입하여 회복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회복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굳이 사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가,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결과를 사법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경찰단계에서부터 회복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V-2-27 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학교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조정에 치중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사법절차를 적용하도록 이원화	3.25
1	형사조정은 검찰단계, 화해권고는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사법절차가 진행될수록 갈등이 깊어지므로 가장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절차 진행	3.25
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사법절차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3.96
4	보호사건에서 부모의 문제해결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직장에서도 시간배려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4.29
5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복적 사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	4.67
6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이원화로 인해 회복적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독립된 소년법원을 설치해 소년사건과 형사사건 통합 운영	5.33
7	화해권고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화해권고보다는 중립적인 '분쟁조정' 으로 용어 일원화	5.54
8	형사처분 결과를 민사사건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하여 판단해야 함	5.96

(2)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

가. 학교폭력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필요성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 모델의 도입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전문가 전원이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씩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공동체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은 가정과 사회 문제가 학교 요인과 결합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체적 접근 필요(1.77)', '피해자의 관점에서 응보적 정의는 학교폭력을 억제할 뿐 피해학생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자발적인 사과 필요(2.42)', '가해자의 관점에서 처벌위주 대책은 문제를 일시적으로만 억압할 수 있을 뿐 재발방지 효과가 낮음(2.69)',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균형적 접근 필요(3.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정, 학교, 사회를 모두 포함한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V-2-28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

순위	이유	평균
1	공동체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은 가정과 사회 문제가 학교 요인과 결합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체적 접근 필요	1.77
2	피해자의 관점에서 응보적 정의는 학교폭력을 억제할 뿐 피해학생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자발적인 사과 필요	2.42
3	가해자의 관점에서 처벌위주 대책은 문제를 일시적으로만 억압할 수 있을 뿐 재발 방지 효과가 낮음	2.69
4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균형적 접근 필요	3.12

나.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단계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가장 먼저 도입이 필요한 단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학교차원의 처리 단계(1.64)’, ‘학교폭력 예방교육 단계(2.00)’, ‘사법절차 단계(2.88)’, ‘교정처우 및 사후관리 단계(3.4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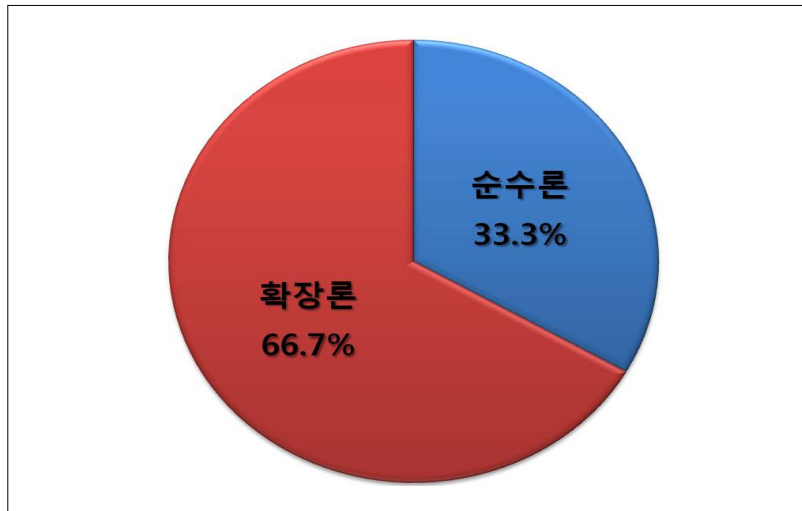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모델은 가급적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방교육단계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29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단계

순위	도입단계	평균
1	학교차원의 처리 단계	1.64
2	학교폭력 예방교육 단계	2.00
3	사법절차 단계	2.88
4	교정처우 및 사후관리 단계	3.48

다. 회복적 정의 실무유형 중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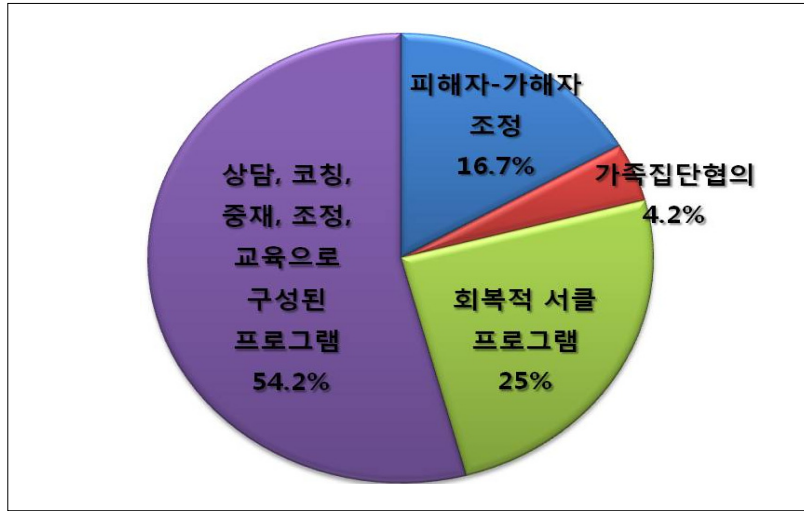
회복적 정의 실무유형 중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로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는 ‘확장론(66.7%)’이 ‘순수론(33.3%)’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림 V-2-6】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해결모델

회복적 정의 실무유형 중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로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는 ‘상담, 코칭, 중재, 조정, 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54.2%)’,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25%)’, ‘피해자-가해자 조정(16.7%)’, ‘가족집단협의(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교육 및 서클 등 회복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79.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와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의견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시했던 가족회합모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증가하면서 실무유형에 대한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V-2-7】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해결모델

라.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

표 V-2-30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

(단위: %(명))

순위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	백분율(빈도)
1	회복적 갈등해결	14.7(11)
2	교우관계회복	12.0(9)
3	관계회복 절차	10.7(8)
3	회복적생활교육	10.7(8)
5	평화교육	8.0(6)
5	평화적 회복절차	8.0(6)
7	회복적 활동	6.7(5)
7	화해	6.7(5)
9	갈등회복교육	5.3(4)
9	회복적 절차	5.3(4)
11	회복적 실천	4.0(3)
12	갈등조정	2.7(2)
12	‘회복적 정의’ 를 그대로 사용	2.7(2)
14	회복적 서클	1.3(1)
14	회복적 훈육	1.3(1)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가 사법적 개념이라 학교내 처리절차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학교내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를 알아본 결과, '회복적 갈등해결(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우관계회복(12.0%)', '관계회복 절차(10.7%)', '회복적생활교육(10.7%)' 등에 관한 의견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평화교육(8.0%)', '평화적 회복절차(8.0%)', '회복적 활동(6.7%)', '화해(6.7%)', '갈등회복교육(5.3%)', '회복적 절차(5.3%)', '회복적 실천(4.0%)', '갈등조정(2.7%)', '회복적 정의를 그대로 사용(2.7%)', '회복적 서클(1.3%)', '회복적 훈육(1.3%)' 순으로 나타났다.

마.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표 V-2-31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학교폭력의 범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고, 지속성과 의도성에 대한 부분 반영	4.05
2	교육적으로 다룰 갈등과 사법적으로 다룰 폭력 구분	4.35
2	피해학생 치유를 통한 가해행위로의 전이예방, 분쟁조정을 통한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균형있는 정의	4.35
4	학교폭력의 정의에 회복적 과정을 명시하고, 당사자 분쟁조정이라는 개념포함	4.60
5	학교폭력의 정의에 덧붙여 가해학생, 피해학생, 주변학생에 대한 개념을 하위항목으로 정의	4.70
6	'학생을 대상으로' 를 '학생간' 으로 재개정	5.65
7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폭력적이므로 '학교평화교육법' 과 같은 긍정적 용어로 바꾸어야 함	6.45
8	힘의 불균형을 학교폭력으로 정의	6.80
8	현행 학교폭력 정의는 가해학생의 선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중립적인 개념임	6.80
10	오히려 피해자 중심의 정의임	7.10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고, 지속성과 의도성에 대한 부분 반영(4.05)', '교육적으로 다룰 갈등과 사법적으로 다룰 폭력 구분(4.35)', '피해학생 치유를 통한 가해행위로의 전이예방, 분쟁조정을 통한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균형있는 정의(4.35)', '학교폭력의 정의에 회복적 과정을 명시하고, 당사자 분쟁조정이라는 개념포함(4.60)', '학교폭력의 정의에 덧붙여 가해학생, 피해학생, 주변학생에 대한 개념을 하위항목으로 정의(4.70)', "'학생을 대상으로'를 '학생간'으로 재개정(5.65)',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폭력적이므로 '학교평화교육법'과 같은 긍정적 용어로 바꾸어야 함(6.45), '힘의 불균형을 학교폭력으로 정의(6.80)', '현행 학교폭력 정의는 가해학생의 선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중립적인 개념임(6.80)', '오히려 피해자 중심의 정의임(7.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이 폭력의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어 폭력성의 수준이나 피해의 심각성, 쌍방 갈등 등을 변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임의 조정으로 종결하거나 또래조정으로 종결할 사안을 학교에서 판단할 수도 없고 무조건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선진 외국의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 도입 필요성

호주, 뉴질랜드의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 중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높은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회복적 정의 절차인 가족집단협의 개최(뉴질랜드)(3.00)', '판사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처벌 및 피해회복 등의 결과를 판결에 고려하도록 규정(뉴질랜드)(3.17)', '가해청소년도 가정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재통합적 대응(뉴질랜드)(3.42)', '회복적 정의에 관한 교직원 훈련(호주)(3.63)', '사법절차에서 범죄청소년이 가해사실을 인정할 경우 회복적 사법절차로 전환(호주)(3.75)',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보상 및 회복적 정의를 통한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뉴질랜드)(4.67)', '교정시설 출소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뉴질랜드)(6.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2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 도입 필요성

순위	관련제도	평균
1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회복적 정의 절차인 가족집단협의 개최(뉴질랜드)	3.00
2	판사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처벌 및 피해회복 등의 결과를 판결에 고려하도록 규정(뉴질랜드)	3.17
3	가해청소년도 가정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재통합적 대응(뉴질랜드)	3.42
4	회복적 정의에 관한 교직원 훈련(호주)	3.63
5	사법절차에서 범죄청소년이 가해사실을 인정할 경우 회복적 사법절차로 전환(호주)	3.75
6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보상 및 회복적 정의를 통한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뉴질랜드)	4.67
7	교정시설 출소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뉴질랜드)	6.38

미국, 영국의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 중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높은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는 ‘경미범죄 청소년에 대해서는 회복적 정의 절차로 전환하고 가해자, 피해자,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패널 구성(미국)(1.50)’, ‘비영리조직에 의한 학교에서의 회복적 문제해결(영국)(2.12)’, ‘당사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 제도-형사사법기관에서는 전환결과와 가이드라인만 제공(미국)(2.83)’, ‘검사나 판사 주도의 전환명령을 통한 회복적 정의 절차 진행(영국)(3.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3 미국, 영국의 제도 도입 필요성

순위	관련제도	평균
1	경미범죄 청소년에 대해서는 회복적 정의 절차로 전환하고 가해자, 피해자,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패널 구성(미국)	1.50
2	비영리조직에 의한 학교에서의 회복적 문제해결(영국)	2.12
3	당사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 제도-형사사법기관에서는 전환결과와 가이드라인만 제공(미국)	2.83
4	검사나 판사 주도의 전환명령을 통한 회복적 정의 절차 진행(영국)	3.54

독일의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 중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높은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정사무소 및 조정전문가 상주(독일)(2.04)’, ‘상담교사가 학교에서의 가해자 피해자 조정 담당(독일)(2.70)’, ‘검찰이나 법원은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화해조정기관에 조정 의뢰(독일)(3.22)’,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 조정 권장을 판단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결정사항을 소년법원에 보고(독일)(3.30)’, ‘소년법원법상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피해자 조정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규정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지시사항으로 인정(독일)(3.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4 독일의 제도 도입 필요성

순위	관련제도	평균
1	학교폭력 전담 조정사무소 및 조정전문가 상주(독일)	2.04
2	상담교사가 학교에서의 가해자 피해자 조정 담당(독일)	2.70
3	검찰이나 법원은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화해조정기관에 조정 의뢰(독일)	3.22
4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 조정 권장을 판단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결정사항을 소년법원에 보고(독일)	3.30
5	소년법원법상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피해자 조정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규정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지시사항으로 인정(독일)	3.61

선진외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호주·뉴질랜드 제도 중에는 사법절차 진행 전에 가족집단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결과가 최종 판결까지 연동되도록 하며, 피해청소년에 대한 회복만큼이나 가해청소년의 회복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영국 제도 중에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법절차에서 회복적 절차로 전환하고, 회복적 전문 단체가 학교폭력 사안 해결에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제도 중에는 학교폭력조정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나 조정전문가의 상주, 상담교사의 조정 담당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회복적 정의모델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

가. 지원체계 구축방안

가) 시설 구축방안

회복적 정의모델의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시설 구축방안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중재센터 설립(2.04)’, ‘회복적 커뮤니티센터의 설립(3.32)’,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공동예산으로 설립(3.56)’, ‘위센터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3.72)’, ‘지자체와 민간단체 협업(MOU)을 통해 설립(4.00)’, ‘청소년상담센터에 중재센터 설치(4.36)’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은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시설 인프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중재 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표 V-2-35 시설 구축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중재센터 설립	2.04
2	회복적 커뮤니티센터의 설립	3.32
3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공동예산으로 설립	3.56
4	위센터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	3.72
5	지자체와 민간단체 협업(MOU)을 통해 설립	4.00
6	청소년상담센터에 중재센터 설치	4.36

나) 인력 확충방안

회복적 정의모델의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인력 확충방안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갈등해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 및 상담 전문가 양성하여 인력풀 구성(2.79)’, ‘지역사회 상담, 심리, 교육, 법률 전문가를 중재전문가로 양성하여 화해권고위원으로 활용(3.00)’, ‘교육지원청별로 30-50개 학교당 1명씩 중재전문가 배치(3.92)’, ‘회복적 정의 관련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워크숍 및 연구집단 형성(4.54)’, ‘학교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4.83)’, ‘학교 교직원을 중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중재 전문과정 포함(5.08)’, ‘현행 조정위원 체제를 지양하고 상주인력 배치 (5.75)’, ‘경찰서에 기존 선도심사위원 중에 중재위원 위촉(6.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력 확충방안 역시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갈등해결 등 조정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표 V-2-36 인력 확충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갈등해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 및 상담 전문가 양성하여 인력풀 구성	2.79
2	지역사회 상담, 심리, 교육, 법률 전문가를 중재전문가로 양성하여 화해권고위원으로 활용	3.00
3	교육지원청별로 30-50개 학교당 1명씩 중재전문가 배치	3.92
4	회복적 정의 관련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워크숍 및 연구집단 형성	4.54
5	학교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4.83
6	학교 교직원을 중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중재 전문과정 포함	5.08
7	현행 조정위원 체제를 지양하고 상주인력 배치	5.75
8	경찰서에 기존 선도심사위원 중에 중재위원 위촉	6.08

다) 예산 확보방안

회복적 정의모델의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예산 확보방안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명시적 규정 신설(2.04)과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국고예산을 책정하여 기본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안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학교가 비용 분담(2.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2.52)’,

‘인식확산을 위한 민간펀드 조성(3.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예산 확보방안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예산수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표 V-2-37 예산 확보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명시적 규정 신설	2.04
1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국고예산을 책정하여 기본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안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학교가 비용 부담	2.04
3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2.52
4	인식확산을 위한 민간펀드 조성	3.40

라)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정방안

표 V-2-38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정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기관의 협조’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협조와 예산확보	2.76
2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위해서는 매뉴얼 필요하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열린 형태의 매뉴얼 개발	2.96
3	일원화된 중재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에 조문 신설	3.16
4	화해권고와 같이 외부위원 위촉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일된 매뉴얼 개발	4.04
5	학교폭력예방법 상 ‘분쟁조정’ 용어 변경	4.68
6	경찰단계의 선도조건부 훈방 및 분쟁조정을 통한 입건유예 등 소년법에 조문 신설	4.76
7	경찰단계 분쟁조정을 통한 수사종결권에 관해 형사소송법 조문 신설	5.64

회복적 정의모델의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정방안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협조와 예산확보(2.76)’,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위해서는 매뉴얼 필요하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열린 형태의 매뉴얼 개발(2.96)’, ‘일원화된 중재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에 조문 신설(3.16)’, ‘화해권고와 같이 외부위원 위촉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일된 매뉴얼 개발(4.04)’, ‘학교폭력예방법 상 ‘분쟁조정’ 용어 변경(4.68)’, ‘경찰단계의 선도조건부 훈방 및 분쟁조정을 통한 입건유예 등 소년법에 조문

신설(4.76)', '경찰단계 분쟁조정을 통한 수사종결권에 관해 형사소송법 조문 신설(5.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통일된 매뉴얼을 개발하되 열린 형태의 매뉴얼이 바람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법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관계기관 협조의 구체화로 의견이 모아졌다.

마)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회복적 정의모델의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시스템(3.36)', '지역별 회복적 거점지역 형성을 통한 지역역량을 배양하는 시스템(3.56)', '교육부를 중심으로 회복적 정의 전문기관을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3.72)', '당사자와 담임교사, 전담기구, 중재센터, 학교전담경찰관, 자치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3.84)', '학교단위로 학칙과 선도위원회 규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칙 등에 대한 구성원 합의를 통한 시스템(4.32)', '화해권고 뿐 아니라 사후프로그램과 대안교육 등의 마련으로 재범방지하는 시스템(4.48)',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4.7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을 거점으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등 소규모 단위의 지역 중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표 V-2-39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중요도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시스템	3.36
2	지역별 회복적 거점지역 형성을 통한 지역역량을 배양하는 시스템	3.56
3	교육부를 중심으로 회복적 정의 전문기관을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	3.72
4	당사자와 담임교사, 전담기구, 중재센터, 학교전담경찰관, 자치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	3.84
5	학교단위로 학칙과 선도위원회규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칙 등에 대한 구성원 합의를 통한 시스템	4.32
6	화해권고 뿐 아니라 사후프로그램과 대안교육 등의 마련으로 재범방지하는 시스템	4.48
7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	4.72

나.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이원적 구조 개선방안

먼저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른 대응과 형법 및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대응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묻은 질문에서는 ‘학교내의 갈등은 회복적 개입을 통한 분쟁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사안만 사법체계 적용(2.30)’,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에서 고려(3.35)’,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 있으므로 이원화 필요(3.43)’,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회복적 절차로 진행(3.96)’, ‘갈등중재센터에서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 결정(4.74)’,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이수기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대체(5.00)’, ‘학교절차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법 및 소년법에 의한 대응 필요(5.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40 학교절차와 사법절차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학교내의 갈등은 회복적 개입을 통한 분쟁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사안만 사법체계 적용	2.30
2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에서 고려	3.35
3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 있으므로 이원화 필요	3.43
4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회복적 절차로 진행	3.96
5	갈등중재센터에서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 결정	4.74
6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이수기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대체	5.00
7	학교절차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법 및 소년법에 의한 대응 필요	5.22

다음으로 학교현장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은 질문에서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두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를 통합하고 사안별 대응 매뉴얼 마련해 운영(2.64)’, ‘별도로 운영하되 학칙위반과 학교폭력이 동시발생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원적으로 대처(2.73)’, ‘이원적 운영은 좋지만 학교별 자치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단위로 운영(2.95)’, ‘적용사안이 다르므로 이원적 운영이 바람직(3.05)’, ‘학교폭력은 인권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원적 운영이 필요(3.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41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순위	개선방안	평균
1	비슷한 사안에 대해 두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를 통합하고 사안별 대응 매뉴얼 마련해 운영	2.64
2	별도로 운영하되 학칙위반과 학교폭력이 동시발생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원적으로 대처	2.73
3	이원적 운영은 좋지만 학교별 자치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단위로 운영	2.95
4	적용사안이 다르므로 이원적 운영이 바람직	3.05
5	학교폭력은 인권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원적 운영이 필요	3.64

이와 같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학교절차와 사법절차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처리결과가 사법절차에서의 진행여부나 처분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안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의 역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은 질문에서는 ‘민간단체나 지역사회 전문가팀의 학교지원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보완(3.00)’, ‘가정에서 부모가 회복적 정의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안으로 직장내 부모교육 의무화, 직장에서 학부모 학교출석 보장, 아파트단위 부모연수 등 실시(3.08)’, ‘회복적 정의모델의 전제인 공감의 의사소통 운동을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개(3.29)’, ‘민간단체의 분쟁조정팀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3.50)’,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제3의 전문기관이 개입하여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보장(3.54)’, ‘교사의 전근으로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지속성과 안전성이 유지되는 지역사회 역량 구축(4.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지원이나 부모교육 실시, 지역사회 시민운동 전개 등을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에서 담당해줌으로써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V-2-42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 중요도

순위	역할	평균
1	민간단체나 지역사회 전문가팀의 학교지원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3.00
2	가정에서 부모가 회복적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안으로 직장내 부모교육 의무화, 직장에서 학부모 학교출석 보장, 아파트단위 부모연수 등 실시	3.08
3	회복적 정의모델의 전제인 공감의 의사소통 운동을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개	3.29
4	민간단체의 분쟁조정팀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50
5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제3의 전문기관이 개입하여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보장	3.54
6	교사의 전근으로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지속성과 안전성이 유지되는 지역사회 역량 구축	4.58

3. 심층면담 결과분석

심층면담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어떠한 절차로 대처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탐색하기 위해 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내용의 사건 2건을 담당교사로부터 추천받아 각 사건의 당사자들과 담당교사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여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다.

1) 사건 1 : 상담교사의 조정을 통해 종결된 사건

(1) 사실관계

금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학생은 5명이고 피해학생은 1명이다. 모두 같은 중학교 같은 반 2학년에게 재학 중이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6명이 함께 어울리는 친한 친구사이였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인 사례2 학생이 여름방학 중에 다른 학교에 다니는 A에게 가해자인 사례1 학생이 A의 친구인 B에 대해 “화장이 진하고, 초등학교 시절의 사진을 봤고, 찌질하다”고 험담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A가 B에게 전했고, 다시 B가 사례1 학생에게 따져 물으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2학기 개학 후 가해자가 된 5명의 여학생이 단체로 사례2 학생에게 카카오톡의 채팅방을 통해 따져 물었는데, 핸드폰이 없이라며 답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한다. 이후 사례2 학생은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지 못하고, 체육이나 창체 시간엔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했다고 한다. 여름방학 개학 후 2주차에 사례2 학생이 상담실에 찾아옴으로써 상담교사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례1 - 뒷담화 사건은 사례1이 다른 친구의 화장이 진해졌다는 얘기를 했고 사례2가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해서 이간질이 되었고, 진한 화장한 사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봤다고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친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은 반 아이로 돌아갔어요.

사례2 - 갈등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사례1에게 잘못했고, 나머지 애들은 그 애들이 잘못된 것도 있었어요. 카톡도 단답으로 답하고 해서 막대하는 느낌이 늘 들었어요.

(2) 진행과정

이 학교의 또래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교사는 먼저 또래조정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 보았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사례2 학생이 비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감정적으로 단체 공격을 할 때 또래조정자가 중립을 지키며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또래조정자들도 쉽게 풀어지지 않을 감정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상담교사가 직접 조정을 실시하였다.

조정을 시작하면서 비밀유지와 중립성, 자율성을 지킨다고 말하고, 갈등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 각자 주관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비밀을 지키지 않아 갈등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이 점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담교사가 회복적 정의에 관해 설명해주고 1대1 대화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져 사건을 종결하였다.

사례7 - 피해학생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5명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교사가 해보도록 중재하여 떠듬떠듬 사과를 했는데 5명이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여 회복적 정의에 관해 이야기 해줬어요. 사과로 일단락이 되면 사례1은 상처받은 것이 회복되지도 않고 여기서 일단락하기엔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서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사례1

이 풀릴 때까지 옆에서 머물러 계속 사과해 보라고 권했지요.

사례1 - 나를 모르는 애들이 나를 까고 다닌 거 1학년 때 떨궈진 것도 사례2때문이라 피해받은 사건이 여러개이고 기간도 길어 마음에 앙금이 많았어요. 사과를 받는다igo 달라질게 없으니까 인연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청소 시간에 장난치고 놀다가 자연스럽게 풀어졌어요. 시간이 약이었어요.

(3) 진행결과

이 사건은 상담교사가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의 대화모임에서 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졌다. 사건 발생 초기에 상담교사가 인지함으로써 가피해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있었다. 상담교사는 사건 종결 후 한달여가 지났는데 가피해 학생들이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피해학생의 평가는 차이가 있었다. 가해학생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지내기는 하지만 신뢰가 없어 비밀공유가 안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피해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 쓰여서 점심 먹기도 불편하고 예민한 상태라고 한다.

사례1 - 지금은 담담한 관계이므로 예전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다시 친해질 수는 없어요. 비밀 공유가 안되므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돼요.

사례2 -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쓰여요. 여전히 밥먹기도 힘들어서 안먹거나 다른 반에 들고가서 먹기도 해요. 다른 사람 보기도 예민해졌다고 해요. 학급 애들하고는 친한 친구는 없고 다른 반 친구랑 어울려요.

(4) 회복적 절차에 대한 의견

학교폭력 사건을 회복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상담교사의 역할에 관해 상담교사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학생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후속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또래조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상담교사가 또래조정 지도교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상담교사는 또래조정 동아리는 권위가 없어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자치회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해학생 모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없이 지금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은 상담교사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상담교사의 조정이 없었으면 인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사례7 - 중립적인 역할이 중요해요. 누군가의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면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관계회복이 되려면 후속조치(슈퍼비전-조율)를 담당교사가 함께 해줘야 지속적 효과가 있어요. 끝나고도 잘 지내는지 살펴봐야 해요. 또래조정으로 갈등해결을 하기엔 동아리활동으로는 권위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요. 학반의 부반장과 추가2명 조직하여 학생자치회에 넣어 반에 HR조직표 또래조정부로 들어가게 조직화해야 해요. “또래조정위원회(학교 선도부 같은) 또래조정부(학급) 또래조정인(담당학생)”의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사례1 - 상담선생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인사도 안하고 모르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엄마가 아빠에게 얘기하고 아빠가 화내실거 같아요. 엄마는 사례2랑 싸운 것만 아세요. 엄마는 1학년 때 일로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세요. 부모님이 아셨으면 아빠랑 사이가 나빠졌을 것 같아요.

2) 사건 2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된 사건

(1) 사실관계

이 사건 역시 금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학생은 6명이고 피해학생은 1명이다. 모두 같은 중학교 같은 반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7명이 함께 어울리는 친한 친구사이였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인 사례4 학생이 1학기에 친하게 지내던 나머지 친구들을 2학기부터 멀리하기 시작하자 사이버폭력이 시작된 것이다. 1학기에도 가해학생 집단의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는 사례4 학생도 가해자였었다. 하지만 소위 ‘문제아’인 다른 학생들과 달리 사례4 학생에 대해 상담교사는 좀 진지한 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4 학생으로서

는 1학기의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나서 어머니의 권유도 있어 이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고 다른 친구에게 이 아이들과 어울리기 싫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해학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이에 가해학생들이 카카오토티에 사례4 학생의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올리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글을 올려 전교생이 다 알게 하였다. 이후 자신들을 때려달라며 자신들이 맞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괴롭혀, 사례4 학생이 2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지만 받기 싫다며 욕을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흘기며 심리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한다. 상담교사는 이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1학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2달간 학교를 못나오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특별교육 5일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그쳤기 때문에 재발이 되었다고 보았고, 특히 피해학생의 부모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례3 - 사례4가 허리가 아파서 매일 병원 다니면서 사이가 멀어졌는데 알고 보니 병원 안가고 다른 친구랑 놀은 적도 있어서 기분이 상했어요. 화가 나서 처음엔 찾아가서 다같이 따졌더니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카스에 안좋은 얘기를 올렸어요. 당사자가 사촌오빠랑 잤다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카스에 올렸는데 나중에 사례4 말로는 단순히 사촌오빠가 놀러와서 잤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사례4 - 1학기때는 가해자 입장이었다가 2학기에 피해를 입고 보니 내가 가해자였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거 같아요. 사과하기보다는 얼른 처벌받고 끝났으면 좋겠다 귀찮다는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되어보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계속 욕하고 다니는 것이 신경 쓰이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1학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례6 - 30대 중반의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사촌오빠 뿐인데 그런 오빠랑 자고 술 담배를 배웠다니 얼토당토 않아요. 이런 글을 보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2) 진행과정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진행을 맡았다. 이 학교의 자치위원회는 총 7명인데, 위원장은 학부모가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장, 위원은 학부모 3명, 경찰 1명, 전담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담교사는 먼저 가해학생으로부터 변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안조사서를 작성한다. 학생부장이 사안조사서를 받아 교감과 교장에게 보고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자치위원회에는 가피해 학생과 부모가 모두 참석해야 개최하게 되고,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일 때에는 1명이라도 부모가 빠지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개최한다. 전담교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장에게 보고한다.

이 학교에서는 한번도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피해학생이 원하면 아이들끼리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역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대화모임을 가졌고, 가해학생들이 사과를 하였다. 이 사건의 자치위원회는 개최선언과 사안설명, 피해학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 가해학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 피해학생 부모의 변론, 가해학생 부모의 변론, 담임 의견, 가해학생에 대한 양형 결정, 폐회 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례8 -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학생이 원하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절차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처벌을 받는구나 받아들이게 돼요.

사례3 - 자치위원회 하기 전에 대화의 자리에서 서로 미안하고 서운했던 얘기를 나눠요. 이 자리에서는 사례4가 사과를 받고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사례4의 어머니(사례6)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끼지 않고 상담선생님이 조정해주면 화해될 수도 있었을거라 생각돼요.

사례4 - 애들이 다 보는 공간에 나쁜 얘기 올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어요. 처음엔 사과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받아주면 정말 쉽게 보여서 다시 반복될 것 같아서...너무 자존심 상하고 무섭고 그래서...

(3) 진행결과

이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 결정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없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만 이루어졌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결정했는데, 가장 심한 피해를 준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 10일과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이수 1일 및 학급교체, 중간 피해를 준 학생들은 특별교육이수 5일과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이수 1일, 가장 피해를 적게 준 학생들은 학교내 봉사 3일과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이수 1일로 결정되었다.

자치위원회가 진행된 이후 결과에 대해 양쪽 모두 대화의 시간에는 화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치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이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는 당사자 모두가 일치하고 있다. 가해학생은 징계를 받고 학급교체까지 되었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굳이 화해하고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졌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사과를 한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해학생의 어머니는 피해학생도 1학기에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으면서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지나치게 강경했다고 서운해하였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자치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딸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 상급기관에 고발을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사례3 - 사전엔 화해를 했는데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대화의 시간에는 화해하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치위원회를 거치면서 회복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사례4 - 대화모임에서는 애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사과도 하고 화해한 것처럼 행동했고 선생님의 강권도 있었어요.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저에게 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집으로 끌고왔냐며 피곤해하시는거 같았어요. 아직도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편해요.

사례5 - 사례4가 지금도 여전히 복도에서 마주치면 찌려보고 애들을 계속 욕하고 다니기 때문에 화해가 되긴 어려운 사건이에요.

사례6 - 자치위원회 이후에도 사례4가 에스크에 비하하는 댓글을 올렸어요. 이건 익명이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치를 취해야겠

다는 생각으로 교육청에 알리던가 경찰에 고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영어와 체육과 같은 이동수업은 이 애들이랑 마주치기 싫어서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동아리활동도 못하고 있어요.

(4) 회복적 절차에 대한 의견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 절차인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부모 모두 자치위원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또래조정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전에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고, 가해자들이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4 - 관계를 회복시키는 절차는 아니고 잘못된 애들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처벌을 어떻게 주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봐요. 또래조정이 자치위원회보다는 관계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개입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어른들 앞이라 속마음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고만 해요.

사례5 - 학교의 형식적인 절차이지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거 같아요. 내가 사례6이라면 애들을 따로 불러 피자집에서 먹이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 오히려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6 - 만약에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친구들이라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안돼요. 또래조정을 통해 선배언니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어요. 사전에 담임이나 담당교사가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는 절차가 없었어요. 미리 알려주고 논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냥 자치위원회가 열렸어요. 2주전부터 우리 아이랑 담임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서 사안을 파악했는데, 자치위원들은 현장에서 자료를 나눠주고 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이었어요.

3) 소결

이상 두 가지 사건은 같은 중학교, 같은 학년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내용의 사건이다.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 사건1은 상담교사의 중재를 통해 화해로 마무리되고, 사건2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을 통해 학급교체가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어떠한 절차가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탐색하기 위해 같은 학교의 비슷한 사건을 임의로 선정하여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상담교사의 중재가 자치위원회 심의보다 회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상담교사는 부모의 개입여부가 관건이라 했고,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사안의 경중이 관건이라 했다. 즉, 부모가 개입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화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하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화해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례7 - 또래조정을 통해 화해가 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점은 부모 개입여부가 큰 변수예요. 화해 안 된 사건의 아이들이 저지른 이전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 안하면 민원을 넣겠다고 해서 피해자 무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고 가피해부모 협의도 했지만 피해자 부모는 무조건 처벌을 원했어요. 결과적으로 가해학생들은 잠깐 징계받고 끝났지만 학교는 경직되고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은 학교다니기가 더 힘들어지기만 했어요.

사례8 - 자치위원회를 통해 화해가 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져요. 경미한 사건일 때는 감정의 골이 깊지 않아서 어느 정도 풀려서 지낼 수 있어요. 심각한 사건이나 깊은 상처를 받을 경우엔 화해가 어려워요. 사례4 사건은 카톡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건이라 화해가 힘들었어요. 사건 당시에는 반성하는 모습이었으나 애들이라 금방 잊어버려요. 학급교체를 통해 피해자도 만족했어요. 피해자가 상담선생과 상담을 많이 한 것이 도움이 됐어요.

제 VI 장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모델 도입방안

1.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2. 학교차원의 도입방안
3. 사법절차상의 도입방안
4.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 VI 장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⁴⁸⁾

1.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의 목표와 적용 방법, 실무유형, 도입 단계, 개념 및 용어의 정립 등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을 개발해 제시하였다.

1)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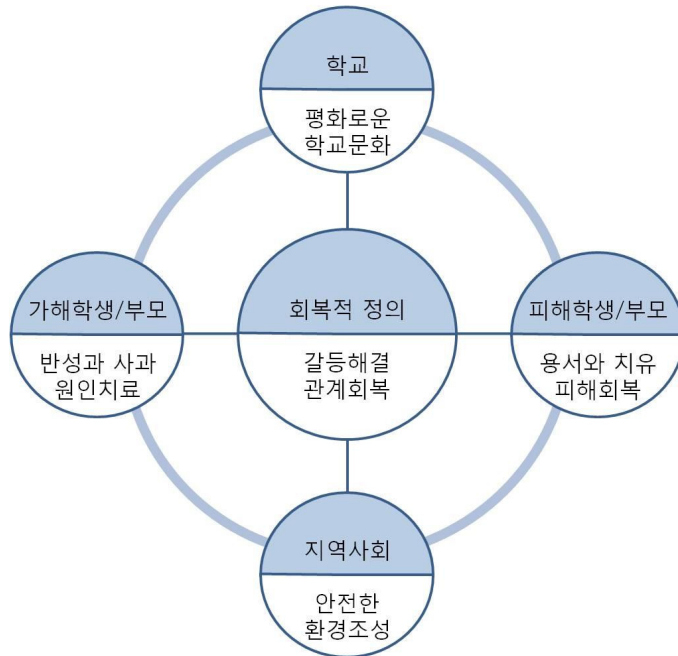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의 목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상처,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근원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가피해학생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들이 속해있는 학급이나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도 평화가 깨진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피해학생의 용서를 통한 가해학생의 치료,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모델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복적 정의모델의 목표는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이지 학교폭력 발생을 원천 봉쇄하는 것에 있지 않다. 회복적 정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를 통해 학교에 갈등과 폭력이 양적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회복적 실천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교육부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심층면담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48) 제6장은 이유진이 주로 집필하였고, 이창훈과 강지명의 집필내용을 추가하였음.

그들은 학교폭력 빈도의 감소가 아니라 사건발생 후 조기화해 및 강제전학의 감소를 평가지표로 보았다. 그들이 회복적 실천모델의 목표로 보는 것은 갈등의 회복적 해결이지 갈등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회복적 실천모델을 도입한 학교에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조기개입으로 인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강제전학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다음 그림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대상과 목표를 표시한 것이다. 대상별로 가해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반성과 사과 및 원인치료’이고, 피해학생과 부모의 목표는 ‘용서와 치유 및 피해회복’이며, 이들을 둘러싼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표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지역사회의 목표는 ‘안전한 환경조성’이다. 이러한 대상별 목표를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이라는 회복적 정의모델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VI-1-1】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대상과 목표

2) 회복적 정의모델의 적용 방법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목표인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복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 그림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방법을 4가지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교사의 관심도와 엄격성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 상태이다. 관심도는 높지만 엄격성은 낮은 경우에 이를 회복적 정의라고 오해⁴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 역시도 회복적 관점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교사의 관심도는 낮지만 엄격성은 높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 처벌 방법인 ‘응보적 정의’에 따른 해결모델이다. 마지막으로 관심도와 엄격성이 모두 높은 경우가 바로 ‘회복적 정의’에 따른 해결모델이다.

이와 같이 회복적 정의모델의 적용 방법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갈등해결을 위해 개입하고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해결의 과정은 교사의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대화를 통해 화해의 결과를 도출해나가야 한다.

↑ 엄 격 성 ↓	응보적 정의 (전통적 처벌)	회복적 정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고 합당한 처벌)	
	아무 것도 안하는 상태 (무관심)	아무 것도 안하는 상태 (회복적 정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낮음	← 관 심 도 →		높음

【그림 VI-1-2】 교사의 엄격성과 관심도에 따른 학교폭력 해결모델

3) 학교폭력 해결모델로서의 회복적 실무유형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모델의 실무유형 중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는 순수론(33.3%)보다 확장론(66.7%)이 훨씬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학교폭력을 해결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의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절차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회복적 정의를 좁은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49) 이러한 오해는 회복적 정의모델이 가해자에게 관대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오히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직시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로 인해 관대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

한편 실무유형 중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류에 대해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북미와 유럽에서 많이 도입된 화해조정,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상위원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시행되는 가족집단협의, 캐나다 일부 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양형서클 등을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였는데, 보상위원회와 양형서클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상담·코칭·중재·조정·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담·코칭·중재·조정·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54.2%)과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25.0%)가 1-2순위의 지지를 받았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피해자-가해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모형을 확장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굳이 프로그램 유형 역시 한가지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 담당기관의 특성이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교육프로그램과 서클프로그램, 피해자-가해자 조정, 가족집단협의, 또는 새로운 어떤 유형이라도 회복적 정의의 목표인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다.

4) 회복적 정의모형의 도입 단계

모든 학교폭력 처리단계에서 회복적 정의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단계에서부터 학교에서의 처리단계, 사법절차 및 교정 단계까지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등 모든 기관들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점과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모형을 도입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모형의 도입단계 흐름도’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단계별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회복적인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현재도 회복적인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학교 예방활동단계의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생자치활동이 있고, 갈등조정단계에서는 또래조정과 분쟁조정이 있으며, 조치결정단계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가 있다. 사법기관 중에서는 검찰단계의 형사조정과 법원단계의 화해권고가 있다.



【그림 VI-1-3】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모델의 도입단계 흐름도

다음으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로는 학교 갈등조정단계에서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조정제도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사법기관에서는 경찰단계의 회복적 훈방과 촉법소년에 대한 회복적 선도, 검찰단계의 회복적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단계의 청소년회복센터⁵⁰), 교정단계의 회복적 감독과 회복적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한편 학교와 사법기관이 회복적 갈등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조정기관에 사안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갈등중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제도들의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도입방안은 절을 바꿔 기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사법기관에서의 회복적 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도권 분쟁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회복적 정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경찰 주도형이다, 검사 주도형이다, 법원 주도형이다 등의 분류만 보더라도 제도의 철학적 근간이나 이론적 배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책적 주도권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보면, 회복적 정의 제도는 형사사법 체계의 어느 한 부분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서 실행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 기관이 주도권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청소년 사법(Youth Justice Act 1997)의 Part 1, Division 1, Section 4(g)에는 균형적 정의의 철학적 근간은 물론 필요할 경우 반드시 회복적 정의제도를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여 형사사법 모든 절차 내에서 필요할 경우 반드시 회복적 정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회복적 정의 제도는 형사사법제도 내, 학교 환경, 돌봄과 보호 환경, 민간 체제 내에서 모두 적극 활용되고 있어, 회복적 정의 제도가 어느 한 기관의 독점적 제도가 아니라 문제 청소년(뿐만아니라 성인도 포함)을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제도로 구축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동일한데, 회복적 정의를 포함한 법률에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 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피해자의 권리 법(Victim's Rights Act 2002), 판결 법(Sentencing Act 2002), 교정 법(Corrections Act 2004), 가석방 법(Parole Act 2002) 등이 있고, 이 법률들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서 회복적 정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Bristol RAiS 프로그램처럼 전학교적(whole school)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형사사법제도가 참여하지 않고,

50) 현재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법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호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889, 제안일자: 2014. 9. 26.)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민간 차원에서 학교가 모든 문제 청소년 처리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 철학을 적용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의 회복적 정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국내의 상황이나 형사사법 제도의 특수성 등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회복적 정의의 철학적 근간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수용한 후라면, 회복적 정의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범위는 당연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 사회내에서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등의 모든 기관들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점과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 정책을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 청소년의 책임성 부여와 피해회복은 어느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및 그 이전과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문제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 모두가 회복적 정의 제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회복은 단순히 문제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주어짐으로써 절차가 끝이 나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회복은 형사사법 기관의 개입으로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 제도는 형사사법절차 상은 물론 문제 이전 및 사법 절차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민간 기관과 형사사법 기관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공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5) 개념 및 용어의 정립

(1) 회복적 관점의 학교폭력 개념 정의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은 무조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학교폭력 개념은 폭력의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어 폭력성의 수준이나 피해의 심각성, 쌍방 갈등 등을 변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책임이나 또래조정에 중결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재량과 관계회복에 따른 사안종결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학교폭력을 갈등형과 비행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갈등형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물리적인 폭력 보다는 따돌림과

같은 심리적인 폭력이 주를 이루고 일방적인 폭력보다는 쌍방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형 학교폭력 중에서도 단기적 및 상호간 갈등과 지속성 및 의도성이 있는 폭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안이 경미하고 단기간의 갈등은 교사나 또래의 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성과 의도성이 강한 경우에만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교사재량으로 조정가능한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의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비행형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개념 속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피해자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가 사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내 처리절차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사법절차에서는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회복적 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결과 '회복적 갈등해결(14.7%)'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우관계회복(12.0%)', '관계회복 절차(10.7%)', '회복적 생활교육(10.7%)'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뉴질랜드의 회복적 절차의 의미도 회복적 문제해결이라고 하므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회복적 갈등해결과 일맥상통하고, 회복적 정의의 목표가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에 있으므로 회복적 갈등해결이나 관계회복 절차, 또는 교사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교우관계회복 등을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로서 상황에 따라 혼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차원의 도입방안

1) 예방활동 단계

(1) 회복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여건 조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서는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에 대한 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 모든 학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급 단위 실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집체교육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고 있어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회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급 단위 이하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기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내면화되어 생활습관으로 굳어짐으로써 평소에 평화적인 갈등해결이 가능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빈도가 학기별 1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수이다. 적어도 한달에 1회 또는 학급회의 때마다 짧은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회복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바램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간관계가 있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회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회복적인 갈등해결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 되어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간을 이러한 회복적 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될 것이다.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특별히 회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회복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규정도 아니므로 각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의 내용을 회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처벌보다 책임의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폭력 발생 시의 회복적인 대처방법, 교실 내의 회복적 정의의 진행방법, 역할극, 교육자료 만들기,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규칙 만들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회복적 자치활동 및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조정을 비롯해 또래상담, 자치법정, 블루밴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래조정과 자치법정은 사안 발생 이후 갈등조정 단계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평소에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활동에는 기본교육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교육내용에 회복적 갈등해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조정자나 상담자 등을 양성할 수 있고, 특히 블루밴드는 주요 활동 내용이 캠페인이므로 학교내 회복적 갈등해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인 회복적 프로그램으로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감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 육성하여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43개의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 302개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은 학교급별(초저고/중/고), 대상별(학생/교사/학부모) 6개 모듈 (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총 7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에는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2) 갈등조정 단계

(1) 또래조정의 회복적 운영 활성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61.5%의 전문가가 또래조정을 회복적인 제도라고 응답했다. 회복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또래친구의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회복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사에서 제시했던 현행 다섯 가지 제도 중에서 회복적이라고 보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제도이다. 하지만 학생과 지도교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많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화해가 되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래조정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적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는 이념적 기초를 마련하고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 조정의 회복적 정의원리 적용

학우 간의 갈등을 교사와 같은 제3의 권위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해결하고자하는 시도와 노력들을 서로 인정하고,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인정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을 학교폭력에 도입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과와 용서, 화해'라는 갈등해결과정과 당사자 중심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은 이미 또래조정을 통해서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조정을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학교폭력대응원리의 하나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응책을 금지된 규범의 위반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학교와 가해학생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회복적 정의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일차적으로 또래조정을 통해서 학생과 학생간의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되, 교사 및 보호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해결 시스템이 작동해야할 것이다. 또래조정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조정자로 활동하게 될 학생 모두 학교폭력이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에 관해서 알게 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상당히 교육적이다.

갈등해결에 대한 원칙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방식을 교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면 사회구성원이 되어서도 갈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달리할 수 있게 된다. 가정 내의 갈등, 회사 내의 갈등 등 사회곳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인 간의 갈등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 방법을 학교에서부터 배울 수 있다.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이야기가 각각 이어지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탐구의 과정이 회복적 정의원리가 적용되는 또래조정의 모습이다. 다만, 청소년참여법정과 같이 제3의 권위자가 양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는 형태나, 조정자가 권위적인 발언이나 양자의 의견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중재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나. 또래조정을 통한 사안종결 근거 마련

또래조정이 회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래조정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또래조정의 개선방안으로 또래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안은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지침으로 사용되었던 2012년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 소위 ‘담임종결사안’을 제외한 모든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담임종결사안이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만 또래조정을 통한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면 또래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하기 때문에 또래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⁵¹⁾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조정결과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점을 회복적인 또래조정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도 이와 비슷하게 조정이 이루어져도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점을 들고 있다. 게다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14년 개정판에서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삭제되고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사실상 담임종결사안이라는 것이 폐지되게 되었다. 또래조정에 관해 새로운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 또래조정은 담당교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난 3년간의 또래조정 시범실시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처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또래조정의 가치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⁵²⁾ 이러한 또래조정 제도가 회복적인 절차로써 실효성을 가지려면 또래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51) 본 연구자는 ‘2014 또래조정사업’의 연구진으로서 2014년 8월에 실시된 ‘또래조정 운영학교 지도교사 직무연수(기 존교사 21명, 신규교사 39명)’에 참가해 참여관찰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또래조정 지도교사들이 이 점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어 종결을 하고 있는데, 사후에 학부모가 문제를 삼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한다.

52)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지만 활성화된 지역의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국고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407개 학교에서 또래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또래조정과 유사한 자치활동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으로 몇 가지 자치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또래조정을 비롯해 또래상담, 자치법정, 블루밴드 등이 그것인데, 이 중에서도 또래조정과 또래상담은 유사한 점이 많아 학교에 따라서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⁵³⁾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왔는데 학교현장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부에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유사한 자치활동의 통합 운영이 또래조정의 개선방안으로써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또래조정과 또래상담은 또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피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또래조정의 경우 조정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반면 또래상담의 경우는 상담자가 지지적인 태도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두 제도의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지적으로 상담을 해주던 친구가 조정의 국면에서는 중립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기법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또래조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또래상담자 교육훈련의 내용과 중복된다. 따라서 두가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통합운영이나 분리운영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학교 규모에 따라 교사와 학생수가 많은 경우에는 분리운영이 바람직하고,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합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통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담당지도교사, 참여학생, 교사 연수, 학생교육, 예산 등을 모두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일부만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또래조정자 역량 및 역할 강화

또래조정은 또래조정자의 수준 차이에 따라 잘못된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연합세미나,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조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53) 본 연구자가 '또래조정 운영학교 지도교사 직무연수' 참여관찰에서 만난 교사들의 경우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학교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반반 정도씩 분포했다.

학습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또래조정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범생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또래조정자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하면 회복적 또래조정 of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참여자의 적극적인 대화와 또래조정자의 역량을 들고 있는데 참여자의 적극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결국 조정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또한 실패요인 중에는 조정자로부터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조정자가 일방적으로 훈계를 한 경우가 지적되었는데 제대로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래조정자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임원과 같이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래간의 인지도를 확보한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마. 또래조정 확대시행 및 법적 근거 마련

또래조정은 2012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금년으로 3년차를 맞았다. 특별교부금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중단될 상황이다. 이 제도가 학교에서 안착이 되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이어가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전국에 845개 학교에서 또래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그 중 123개 학교가 시범학교인데, 교육청 지원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은 경기도(407개)와 대전광역시(221개), 부산광역시(84개)에 몰려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된다면 이 사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인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에 또래조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바에 의하면, 또래조정 참여 사전 사후 조사에서 갈등해결 기초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또래조정 교육만족도가 80.1%, 또래조정 활동의 필요성이 76.7%, 또래조정 활동 지속의사가 77.2%,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경우가 65.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또래조정 사업은 전반적으로 효과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따라 시행학교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현행 수준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모든 학교가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또래조정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경우 개별 학교에서 개개인 지도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의 시범운영은 전라남도 교육청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해왔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모든 학교에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래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센터를 먼저 설립한 후에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각 학교에 대한 컨설팅과 교사연수 및 학생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분쟁조정의 회복적 운영 활성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회복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34.6%에 그쳤고, 23.1%는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으며, 42.3%는 회복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회복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에 기여하고, 합의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해학생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취지는 회복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회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갈등해결 보다는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단계로 인식되고 있고, 자치위원이 분쟁조정자로서 전문성이 없으며, 실제로 관계회복이 되는 사례가 매우 적고, 문제의 경중에 따른 조치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복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분쟁조정인 경우 상대적으로 또래조정에 비해 회복적 의미가 약하기는 하지만 확장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제도 역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회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특히 분쟁조정은 또래조정과는 달리 이미 법제화 되어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분쟁조정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운영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함께 연동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및 조치결정들과 융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 분쟁조정과 조치결정의 유기적 운영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의 결과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운영절차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분쟁조정의 시점이 조치결정 심의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과 분쟁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조치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회복적 분쟁조정에 실패한 요인으로 분쟁조정과 조치결정이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두 번째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현행 분쟁조정 제도는 손해배상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치결정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원망하게 됨으로써 관계회복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앞의 또래조정에서 담임종결사안과 관련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결처리 지침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징계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화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므로 분쟁조정 시점은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분쟁조정이 개시되면 조치결정을 보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과 같이 화해를 하더라도 반드시 조치결정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에서는 회복적 절차의 진행에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서면사과가 경미한 조치로써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서면사과는 매우 회복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까지 발생하고 있다. 소년법 상 화해권고의 경우 화해했을 때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이와 같이 분쟁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면 조치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미조치” 또는 “조치 없음”을 추가하거나, 조치결정을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 재범이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종결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한 분쟁조정 운영

실질적인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학교내에 회복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회복적 분쟁조정 실패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회복보다 합리적인 사건처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회복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기초에 학부모총회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회복적 절차에 관해 안내하고, 회복적 대화모임 담당교사를 지정한다. 이 담당자가 또래조정 지도교사를 겸하고, 학부모 중에 회복적 대화 진행자를 훈련해 봉사인력으로 활용한다.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담임종결사안은 또래조정이나 담임조정으로 종결한다. 다음단계로 경미한 사안은 학생부장이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행한 후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한다. 조정이 안되거나 심각한 사안은 처음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회복적 분쟁조정에 성공한 요인은 가해학생의 진실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사과 등 가해학생의 태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경우, 서로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 등이었다. 따라서 회복적 대화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진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해학생의 사과와 책임인식, 피해학생의 피해에 관한 진술을 통한 치유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은 대화이며 피해학생의 용서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화해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해가 일어났고 어디까지가 가해학생의 행위에 의한 피해인지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가해학생이 책임져야할 피해의 범위를 서로 이야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원망이나 용서 등의 감정을 토로하게 되고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피해를 인식하고 책임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의 갈등은 일방적인 가해나 피해보다는 쌍방의 가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대화는 상당히 효과적인 갈등해결방법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가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감정의 토로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미래의 문제를 논하게 된다.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해주어야 할 일과 가해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가해학생의 능력 밖의 일일 경우 학교공동체의 인프라를 통해서 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지 논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가 피해학생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제시된다.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경제적, 물질적, 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의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학생의 피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생긴 가해학생의 피해에 대한 회복도 함께 논의된다. 학교폭력행위자라는 낙인과 교우간의 관계회복, 가해의 원인제거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쟁조정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만을 위하거나 가해학생에게 벌주기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제도가 되고 나아가 학교공동체의 평온에 기여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 및 공동체의 역할이 담긴 합의를 작성하는 것이다. 분쟁조정에서는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할 목록 중에서 가해학생이 해야하는 일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해학생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이 저지른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대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는 완전하게 다른 차원이며 교육기관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방법이 된다.

다.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 및 투입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조치결정에 한정하고 조정전문가에 의한 분쟁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연수를 통해 회복적 정의에 관한 학교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가피해 학생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분쟁조정 위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회복적 분쟁조정에 성공한 요인 중 하나로 분쟁조정 전문가나 갈등중재 전문가 등 전문적인 제3자의 개입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성 및 투입 방안으로는 먼저 학교폭력 관계자들에 대한 회복적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생활지도의 방향은 응보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사 연수제도가 필요하다. 자치위원회 절차에서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면담이 있는데, 이때 자치위원이 회복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면 질문을 통해 회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는 회복적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 중에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 대한 연수 내용에 회복적 정의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수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해도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회복적 정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분쟁조정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한다.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아 회복적인 분쟁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가피해 학생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사, 변호사, 손해사정인, 보험전문가, 학교폭력전문가 등)를 분쟁조정위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분쟁조정에 투입되어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고, 분쟁조정이 회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를 훈련받은 전문 조정자가 제3자로 개입해야만 앞에서 제안한 회복적 대화모임도 가능할 수 있다.

라. 분쟁조정에 의한 합의문 개선

현재 자치위원회와 민형사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주로 합의금 결정이나 소송방지책으로 이용되고 있고, 분쟁조정 결과의 일반적인 ‘형사합의문’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회복적이지 않다.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이라고 해서 민·형사상의 사법적인 문제를 학교기관에서 주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전혀 회복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적이지도 않다. 사법기관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이지만, 가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분쟁조정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법률적인 전문성이 결여된 관계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형사상의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추후 입건되어 사법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경우 추후 어떠한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합의를 해줘야한다는 예시문의 행간의 의미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안별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문 작성을 결과물로 내어놓고 싶어 하는 현행 분쟁조정은 전면 수정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문 작성을 결과물로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회복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가 부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분쟁조정 과정은 각 단계별로 목적을 달리해야 하며 최종목적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이 되어야 한다.

3) 조치결정 단계

(1) 가해학생 조치의 회복적 운영 활성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에 대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26.9%만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답했고, 26.9%는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46.2%는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답했다. 회복적이라고 본 이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통해 반성과 개선의지를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복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 조치만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이 없기 때문이고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응보적 정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연구자가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중에서 유독 이 세가지만 선택적으로 질문한 이유는 서면사과가 피해학생을 회복할 수 있고, 학교 및 사회 봉사나 사회를 회복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이 가해학생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회복뿐 아니라 가해자와 사회 전체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고, 학교폭력과 같이 가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가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만 피해자의 회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회복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치들이 이와 같은 회복적인 제도가 되고 더 나아가 가해학생 조치 전반이 회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조치내용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서면사과와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가피해학생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회복적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조치들은 강제적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치들이 회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학생이 자발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봉사와 교육 내용의 회복적 운영과 자발적 동기 부여가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언급되었다. 각 조치별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서면사과의 경우 가해학생 조치 중에 가장 경미한 것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피해학생의 회복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회복적 조치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서면사과의 진정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것을 사과편지에 담아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면 피해학생의 치유에 도움이 되고 가피해학생의 관계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다수의 가해학생이 반성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사과편지를 쓰고 있고 사과를 한 이후에 행동수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행법에 ‘미조치’항목이 없어 서면사과를 소위 ‘초범’에 대한 관용적 처우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면사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무성의한 편지를 쓰고 무성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사과의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편지 뿐 아니라 행동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학교 및 사회 봉사 역시 처벌의 목적보다는 공동체의 회복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자신의 회복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조치이다. 역할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학생의 입장을 경험하고 집단상담을 통해 내면의 문제를 찾아간다면 진정한 반성의 기회가 될 것이고, 이후 행동수정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하고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가해학생만을 모아서 교육하는 집체교육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일반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 조치결정의 회복적 가치에 대한 공유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회복적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이 없고 이 제도의 취지가 옹보적 정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해학생 자신을 비롯해 공동체와 피해학생 모두에게 회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회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폭력 관계자 모두가 조치결정의 회복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조치결정의 회복적 가치에 대한 안내매뉴얼을 준비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때 관계자 모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 개최 시작 시점에는 회복적 정의 전반에 관해 안내하고, 심의를 통해 조치결정을 내릴 시점에는 결정된 조치가 갖는 회복적 가치에 관해 안내하여 당사자 및 관계자들이 회복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조치결정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상황에서는 조치 내용이 아무리 회복적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이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피해학생의 화해와 관계회복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회복적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조치인 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재학 중에 중간 삭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조치 시행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전문인력 지원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봉사과 교육 내용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행기관이나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하면 회복적 조치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봉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지도할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시행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기관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사와 교육을 위탁받은 단체들의 프로그램이 제각각이므로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고, 봉사는 특별교육과 달리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교육 수준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담임교사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만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갈등조정 전문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학교폭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관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 분쟁조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가 회복적 정의 이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래조정과 분쟁조정의 협의 결과를 왜 인정해야 하는지, 조정의 협의 결과 이행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에 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회복적 협의결과 이행을 가해학생 조치로 규정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회복적 절차를 운영한 경우, 그 협의결과의 이행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결과이행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규정될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는 징계결정 과정에서 회복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된 또래조정이나 분쟁조정의 협의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결과이행을 하나의 조치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좀더 중한 조치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협의결과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또래조정의 협의결과 이행을 징계조치의 유형에 포함하는 것은 비공식적 또래조정을 통해 공식적 처리절차를 같음하는 효과가 있다. 또래조정과정에서의 원만한 협의는 학교폭력사안 처리시스템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사법시스템에서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래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보편화되어 상식적 차원의 해결책이 된다면 이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사법절차의 단계 단계마다 작용할 수 있다. 경찰단계의 입건과정, 검찰의 기소과정, 법원의 양형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품갈취에 대한 원인이 또래 간의 감정적인 질투에서 유래되었다면, 또래조정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고 금품을 돌려주고, 또래조정이라는 비공식적 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에서의 재통합적 수치심을 통해서, 또래조정은 동 사안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충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 또래조정 및 분쟁조정 협의결과의 이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의 활성화

교육부가 2013년 7.23대책에서 도입한 제도인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는 아직 현장적용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통해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관계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회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을 대상으로 결정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학생에게 부담을 주게 될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회복기간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여부가 조치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비록 양당사자의 화해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화해의 관건은 피해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회복적 생활지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하면 회복적인 분쟁조정에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가해학생의 진실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사과 등 가해학생의 태도와 심리적인 회복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실패 요인 중에는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피해의 회복이 필요하다.

가. 케이스워크적인 피해자보호와 지원

회복적 정의모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면, 피해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사안별로 지원할 수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내용이 법률에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획일화된 선택지내에서 고르기 쉽다. 모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전학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학생의 요구와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판단하고 사안별로 지원할 수 있다. 위센터나 교육기관의 자원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연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복지적 개입뿐만 아니라 사법적 연계도 필요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 가해자의 접근 금지가 요구된다면 가정법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접근금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금지명령과 관련하여 지역 가정법원소년부 및 지역경찰과 학교는 핫라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아동·청소년간의 형평성문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피해학생에 해당되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동행위시 비학생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비학생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아동·청소년피해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이 가해자의 신분(학생유무)이나 피해자의 신분(학생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19세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복지적 지원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시기의 피해자는 편면적인 복지적 개입만으로는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다.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지원 강화

가해학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경우 피해학생의 치유효과가 빠르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형식적으로 사과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피해자에 대해 무심경해 지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심층면담을 통해 가피해학생의 사건 이후 심리상태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 조차도 가해학생은 담담하게 지내고 있는 반면, 피해학생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쓰여 급식도 잘 먹지 못하고 학급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담임 및 상담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라. 피해학생 보호조치 개선

현재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조치결정을 하도록 하고있는 반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은 자치위원회가 응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자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회복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6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가 2012년 개정에서 '전학권고'를 삭제하여 현재 5가지 조치가 운영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학급교체'가 있다. 회복적 관점에서 볼 때 전학권고를 삭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같은 맥락에서 학급교체는 전혀 회복적이지 않은 조치일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며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도 피해학생이 학급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급교체를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급교체를 시행하면 될 것이다.

3. 사법절차상의 도입방안

현재 회복적 정의와 관련한 논의 중 큰 중심 화두는 경찰, 검찰, 법원의 주도권 논의이다. 호주의 경찰 및 법원 주도형, 영국의 검사 주도형,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지역사회 의회 주도형 같이 형사사법절차와의 연계, 통합 혹은 자발적 비자발적 협조 관계의 형성 등에 대한 논의(순수론/확장론)는 결국 회복적 정의 제도를 누가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참여주체의 주도권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 및 장점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경찰주도형 회복적 정의 제도의 경우 근본 취지가 문제 청소년이 공식적인 형사사법 절차로 진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문제 청소년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피해회복의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주도형 회복적 정의 제도의 경우는 경찰 주도형 보다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더 강력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된 이후(즉, 경찰의 사건 접수, 수사, 기소 신청 이후)에나 회복적 정의 제도가 시행될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원 주도형의 경우는 검사 주도형 보다는 더욱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공식적인 형사처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 주도형의 회복적 정의 모형 보다는 모든 기관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 경찰 단계

(1) 회복적 훈방제도 도입

현행법상 경찰에는 수사종결권이 없지만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실무에서는 경찰 독자적으로 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법제화하기 위해 2007년 소년법 개정과정에서 선도조건부 훈방 규정의 신설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검찰의 반대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준칙인 '소년사법의 운영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과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이버전(diversion)⁵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복적 관점에서도 선전 외국의 소년사법절차에서는 경찰단계 다이버전과 결합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266).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져 회복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건발생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초기개입 기관인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4) 다이버전은 형사사법에서 특정한 사건을 공식적 절차로부터 전환시키거나 우회시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이승헌, 2010: 6).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가족집단협이나 조정위원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등 회복적 절차를 진행해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훈방할 수 있도록 ‘회복적 훈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촉법소년에 대한 회복적 선도 프로그램 운영

최근 들어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촉법소년의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을 위해 그 연령을 기존 10세이상 14세미만에서 10세이상 12세미만으로 인하하자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인하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나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배치되는 발상이다. 촉법소년의 증가 원인 중에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13-14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동안 촉법소년에 대해 적절한 처우를 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이 초범이고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소년사건 처리실무 관행에 따라 훈방조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촉법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비행소년에서 건강한 소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민간단체인 ‘비폭력평화물결’과 협력하여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55명과 교사 20명에게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자 양성교육을 실시했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과 갈등 당사자인 학생들, 교사,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대화에 참여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가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너와 함께 프로그램은 참여적 갈등해결 접근법인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회복적 선도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시범운영 경찰청을 늘려 효과성을 평가한 후에 전국 경찰청에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검찰 단계

(1) 형사조정 제도의 회복적 운영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상의 형사보상을 회복적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41.7%,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가 25%, 회복적이지 않다는 전문가는 33.3%로 나타났다. 회복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며 중립적인 조정자가 절차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영방식에 따라 회복적일 수도 있고 있지만 현재는 물질적 보상을 통한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지 절차 간소화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검찰단계의 형사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 형사조정 of 조정인력 전문화 및 회복적 운영

형사조정이 회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재전문가가 개입하거나 조정위원의 구성과 운영을 전문화하는 등 형사조정 제도에서 조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전문화하여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조정과 화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전문가 개입과 조정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전문화, 물질적 보상 뿐 아니라 진정한 회복 등이 제안되었다. 회복적 형사조정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 경우와 당사자간 관계유지 필요성이 설득된 경우를 들고 있고, 실패요인 중 한가지로 금전적 보상에만 그친 경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도 회복적 조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 제도에 이러한 회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인력을 전문화 하고 회복적인 조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형사조정의 확대 실시

형사조정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사법절차의 다른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법과 검찰단계에서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법절차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사법절차를 거치면서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절차도 회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이버전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조정 제도를 경찰단계에 도입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면 앞에서 논의한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입건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5조 제4항을 보면,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형사조정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한다면 형사조정 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형사조정 운영체계를 회복적 절차로 개선

형사조정 제도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는 잠재력은 많지만 실제로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안되었고, 회복적 형사조정의 실패요인 중 한가지로 조정결과에 대한 검사의 고려가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형사조정 운영체계를 회복적 절차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을 신청해야 하므로 절차를 안내하고, 불이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소송지원이나 가중처벌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형사조정 대상사건에는 신체적 폭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회복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

(2) 회복 조건부 기소유예

2007년 소년법 개정에서 경찰의 다이버전인 훈방은 법제화되지 못했지만 검찰의 다이버전인 조건부 기소유예는 제49조의 3으로 법제화되었다. 기소유예의 조건으로는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와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회복적 훈방제도 도입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회복적 개입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높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다이버전을 하지 못한 사건이라면 검찰단계에서라도 회복적 다이버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선도를 담당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회복적 조정자로 양성하여 범죄소년이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도록 회복적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을 회복적 정의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회복적 상담이나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회복적 개입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에서는 그다지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검찰에서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9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추가하여 '3. 화해조정 참여'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여 법원단계와 마찬가지로 '화해권고'를 하고 그 결과를 기소유에 처분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3) 법원 및 교정 단계

(1)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회복적 운영방안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60%의 전문가가 화해권고를 회복적인 제도라고 응답했다.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28%, 회복적이지 않다고 본 경우는 12%로 조사에서 제시했던 현행 다섯 가지 제도 중에서 회복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적게 나온 제도이다. 회복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가 회복적 정의였고, 갈등해결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관계회복 조력을 하고 있으며, 가피해 당사자의 대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함으로써 성행이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원단계까지 간 사건은 심각한 범죄수준이라 피해학생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회복에 어려움이 있고 단순히 손해배상이 기준이 된다면 회복적이지 않으며 법원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소극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화해권고가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에서 화해권고의 적극적인 활용 등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 화해권고의 확대 실시 및 절차 개선

화해권고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회복적 정의이므로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절차를 좀더 회복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경찰단계 및 소년형사사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 실시할 것과 가피해학생의 동의여부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화해권고는 사법절차의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갈등이 심화되어 회복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도 화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송치하므로 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원 송치서에 화해권고 의견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소년보호사건에서만 화해권고가 가능한데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화해권고를 확대하고, 소년부 판사의 권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화해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개시 결정 이전에도 화해권고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화해권고가 좀 더 회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화해가 되어도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별도로 이루어져 화해를 위한 자발적 동기부여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화해가 되면 자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결정을 면제하고, 조치결정이 집행된 이후라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복적 절차는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화해권고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 및 안내를 통해 가피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나. 화해권고위원의 전문성 강화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앞의 단계에서도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여러번 강조되었지만 화해권고의 회복적 운영을 위해서도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회복적 화해에 성공요인 중 하나로 화해권고위원의 적극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경우 등 화해권고위원의 역량을 들고 있고, 실패요인 중 하나로는 회복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화해위원의 실수를 들고 있다.

현재 화해권고위원의 자격요건은 자격증이나 전공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있고 실제로 중재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 경력에 대한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정 역량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고, 회복적 정의에 관한 철학에 근거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조정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해권고의 중재자로서 현재와 같이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하는 방법 외에 조정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공통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판사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므로 판사에 대해서도 회복적 정의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다. 화해권고 참여자의 범위 법제화

회복적 정의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간주하고, 피해회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 정책에는 가피해 당사자 및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의 형(회복적 정의) 법(Crime (Restorative Justice) Act 2004)은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은 '가족이 가해/피해 청소년에 대한 결정의 중심'임을 규정하며, '의사결정은 공동체의 합의제에 따름'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버몬트(Vermont)의 Title 28910a는 회복 위원회(Reparative Boards)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메인(Maine) 주의 Title 17-A:1204-A는 지역사회 회복 위원회(Community Reparative Boards)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 사법 그리고 범죄 증거 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청소년 범죄자 패널(Youth Offender Panel)로 전환하도록 명령하고, 패널의 구성원은 가해자, 가해자의 가족 혹은 보호자, 가해자에 대한 지지자,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그리고 3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참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회복적 정의는 참여주체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역할을 담보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회복적 절차를 도입하는데 있어 반드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들의 가족 및 지지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라.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은 가해학생 회복조건 구비

화해권고는 가해학생의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장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은 가해학생이 화해권고에 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구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적 화해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도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행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가정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내용으로는 권고기간 내에 이루어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장기간의 관리·지원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이 개입된 ‘합의서’를 전제로 한 화해는 가해학생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 회복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재판단계까지 오게 된 가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가정을 만들어 준 후에 화해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안가정으로써(청소년회복센터55) ’가 운영되고 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중에는 1호처분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이 있다. 부모에게 보내거나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처분인데, 1호처분 대상자 중에 가정의 보호기능이 취약하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인 경우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 마련한 시설이다. 이러한 제도는 순수론의 관점에서는 당사자의 대면이 없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확장론의 관점에서는 가해자의 회복이 있고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므로 회복적인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단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회복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은 사법형 그룹홈(천중호, 2013: 32-34)이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산하에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정의 도입방안

가. 회복적 협의결과 이행의 감독 강화

사법기관은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의 결과를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공권력의 범위내인 학교 안에서, 사법기관은 학교 밖에서 협의의 결과 이행을 위한 담보기관이 되어야한다.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결과가 법률적 효력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협의의 결과에 관해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의 결정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55) 청소년회복센터는 사법형 그룹홈으로 현재 창원 지방법원 산하에 6개, 부산 가정법원 산하에 6개 총 1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88명(남 68, 여 20)의 청소년들이 위탁되어 있다(다음카페 ‘만사소년’ <http://cafe.daum.net/mansaboy>, 2014.10.23.).

감독하고, 불이행시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강지명, 2012: 126). 이것은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정의원리의 도입을 뜻하는 것으로 기존의 형사사법교정기관의 역할범위의 변화를 뜻한다. 따라서 회복적 교정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설립이나 지정이 필요하다(박광민·강지명, 2007: 173).

나. 사회복귀를 위한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

뉴질랜드 사례에서 소개한 속죄나무 프로그램과 같은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써의 회복적 대화모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사건의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가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의 교정단계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알게 됨으로써 반성을 하게 되고, 반성은 회복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귀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 수도 있지만 사회복귀를 앞둔 소년원생이나 수형자라면 사건발생이 이미 많이 지난 시점이 될 것이므로 가급적 다른 사건의 피해자와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피해자는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가해자 한명과 피해자 여러 명이 참석하고, 전문적인 회복적 조정자가 진행을 담당하며, 참여적 갈등해결 접근법인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운영한다.

(3)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회복 강화

사법기관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범죄행위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정의개념의 구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범은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소년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기존의 형사사범보다 더욱더 피해자에 대한 소외현상을 낳고 있다. 소년사범은 소년법상 명시된 소년의 건전한 육성만을 목적으로 하여 역할범위를 가해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서 역할범위를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여 범죄피해의 회복과

이를 위한 공동체의 구축역할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강지명, 2012: 113, 강지명, 2014: 265). 기존의 화해권고와 형사조정이 피해자에 대한 사법의 개입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정은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중단이나 양형에서 더 큰 역할이 이루어질 뿐이다. 또한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소년사법의 개입범위가 소년피해자로 좁게 운영되고 있지만 변화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가해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개입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원체계 구축방안

1) 지원인프라 구축방안

(1) 시설 구축방안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복적 지원을 담당할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복적 지원기구인 '갈등중재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우선 17개 시도에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시군구 센터를 확충해나가는 방안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시설 구축방안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중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2013년에 관계기관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서는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함께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손해배상이 포함된 분쟁 발생 시 제3의 전문가가 개입하여 합의를 돕고 있다. 하지만 이 센터는 학교의 분쟁조정만을 지원하고 있어 사법기관과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법제화된 시설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조정결과의 구속력이 없으며, 전국에 17개뿐이라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기능을 확대 개선한 갈등중재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중심 갈등중재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는 조치결정을 하는 기구이고 학부모와 학생생활지도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중립성에 한계가 있어 분쟁조정까지 함께 담당한다는 것은 또다른 갈등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에서 화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규명이 안 되는 점이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규명과 함께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재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학교절차와 사법절차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호 정보공유나 결정사항의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교와 사법기관을 연계해줄 허브기관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해 일차적인 목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인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조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 소년법상의 화해권고를 회복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지역공동체 들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모든 기관이 상호협조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야만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초기 정착단계에서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과 분쟁해결에 관한 연방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다(박광민·강지명, 2007: 173).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다양한 사건에 따른 적합한 전문가의 선정 및 사법기관에 의한 조정절차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도중진·원혜옥, 2006: 219-220).

이러한 제3의 기관이 구심점이 되어 분쟁조정과 형사조정, 화해권고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각 제도의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갈등중재센터가 허브기관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기 전 학교단계에서 이루어진 분쟁조정 결과를 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훈방조치나 불기소,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선고유예, 양형 등에 반영한다면 절차의 간소화와 가해학생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중심의 지원기구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별도의 회복적 지원기구의 운영방안은 우선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하고 학교 및 사법기관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조정결과를 자치위원회가 추인하여 ‘처분유예’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사법기관의 처분결정에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회복적 지원기구에서는 사안이 의뢰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보호자 연락을 하고, 사안조사 및 화해조정을 안내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자치위원회나 사법기관에 제출한다. 회복적 지원기구에는 교감, 학생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분쟁조정 전문가를 배치한다. 학교가 학교폭력 발생시 갈등중재센터에 분쟁조정을 의뢰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조문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4항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학교폭력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법에도 경찰과 검사, 판사가 화해를 위해 조정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인력 구축방안

장기적으로 회복적 정의모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조정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실제로 가해학생의 반성과 피해학생의 치유, 이들의 관계회복과 학교문화의 개선 등 회복적 정의의 목표가 달성되는데 있어 조정자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중재전문가를 양성해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갈등해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정 및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 밖에 지역사회 상담, 심리, 교육, 법률 전문가를 중재전문가로 양성하여 화해권고위원으로 활용하거나, 회복적 정의 관련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워크숍 및 연구집단 형성 등도 제안되었다. 한편, 학교 교직원을 중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중재 전문과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도 있었다. 중재 전문인력의 배치방안으로써는 교육지원청별로 30-50개 학교당 1명씩 중재전문가 배치(교육지원청별 5-10명), 경찰서에 기존 선도심사위원 중에 중재위원 1명 위촉(교육지원청 위원 활용), 학교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행 조정위원 체제를 지양하고 상주인력 배치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정프로그램으로는 또래조정과 분쟁조정이 있는데, 조정자가 또래인든 연장자이든 피해의 회복을 위해 양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다는 원리는 같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고 대립양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조정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또래조정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 교육을 강화하고, 회복적 정의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조정자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들으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대화를 촉진하고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촉매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기존의 교사나 상담사에게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식을 이수하게 하고 지역인프라 동원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피해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할 보호와 지원이 다양해야 하고 지역인프라를 활용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사회복지를 전공한 조정전문가가 적합하고, 당사간의 갈등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원인에 있다면 심리상담을 전공한 조정전문가가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자를 조정전문가로 양성하여 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회복적 정의의 원리가 갈등해결책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조정환경의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린 시절부터 또래조정을 통해서 갈등의 해결방법을 체화하고 사회에서는 전문인력의 단계적 양성을 도모해야 한다. 형사조정인 경우 다수의 퇴직 교사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다른 회복적 절차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예산 확보방안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써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예산은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국고예산을 책정하여 기본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안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학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인식확산을 위한 민간펀드 조성 등을 고래해 볼 수 있다.

(4)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개정

회복적 정의모델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써 통일된 매뉴얼 개발에 관해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열린 형태의 매뉴얼 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형사조정이나 화해권고와 같이 외부위원 위촉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일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으로는 먼저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 학교절차와 사법절차의 허브기관인 갈등중재센터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로써 '학교폭력 회복적 지원기구 설립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어렵다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갈등중재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기관협조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경찰단계의 회복적 훈방 및 검찰단계의 회복적 기소유예 등을 소년법에 신설해야 하며, 경찰단계의 회복적 훈방을 위해 수사종결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도 개정해야 한다.

(5) 이원적 시스템 개선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대응체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교중심의 사건처리와 '형법' 및 '소년법'을 근거로 한 사법절차에 의한 사건처리로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원화된 절차는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서정기, 2011: 75). 이러한 학교절차와 사법절차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처리결과가 사법절차에서의 진행여부나 처분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앞의 또래조정과 분쟁조정 부분에서 이미 제안했고, 시설 구축방안에서 제안한 갈등중재센터도 이원적 구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안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의 역할

학교폭력은 학교내 자원으로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단체나 지역사회 전문가팀의 학교지원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자치위원회 지원이나 부모교육 실시, 지역사회 시민운동 전개 등을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에서 담당해줌으로써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 같은, 가용공동체 자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새로운 공동체 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공동체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Bazemore, G., 2001: 212). 피해회복을 위한 케이스워크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기존에 구비되어 있는 선택지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자원의 발굴과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지원과 지지의 필요성에 따라 케이스별 공동체 자원의 재정비와 기관연계의 구축이 누적되면 그 노하우는 고스란히 지역공동체와 학교에 누적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역량을 형성하게 된다.

2) 사회적 인식도 제고 및 저변 확대

(1) 회복적 정의의 철학적 목적에 대한 인식도 제고

기존에 회복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회복적 정의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의 진정한 철학적 목적과 이론적 내용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앞서 호주 사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회복적 정의는 다양한 형사사법 정책 중 가장 학문적, 이론적 근거가 탄탄한 정책 중 하나이며, 각 국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자국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자생적 제도이다. 1989년에 제시된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은 일본과 뉴질랜드의 청소년범죄에 대응하는 전통적 방식을 연구한 결과로 도출된 근거기반 이론(evidence-based theory)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와 자국의 현실적 청소년 문제를 근거로 회복적 정의 제도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고, 각 국의 특성에 맞추어 제도가 정착되게 되었다.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의 청소년 형사사법제도의 비효과성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독자적인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들(경찰, 검찰, 법원, 교정,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이 가장 이론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호주의 경우 퀸스랜드(Queensland)의 청소년 사법회의(Youth Justice Conferencing)가 그 좋은 예이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와 그 피해에 대해 인정하게 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인데, 이론에 따라 비난(blaming) → 수치(shaming) → 재통합(reintegration)의 과정을 철저히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문제 청소년을 비난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 혹은 소외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책임성을 철저히 인지시킨 후 이들을 사회로 재통합시켜 재범을 방지한다.

미국의 균형적 정의(balanced justice) 역시 동일하다. 단순히 회복적 정의를 약화된 형사사법적 대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문제 청소년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처벌적(punitive) 접근으로 인식하고, 철저히 공개적인 책임 인정과 피해회복 행위를 강조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문제 청소년을 다시 사회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들이 의미하는 바는 회복적 정의 제도가 단순히 공식적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청소년 처벌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제 청소년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책임 있는 준법시민(law abiding citizen)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회복적 정의의 진정한 철학적 목적과 이론적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단순히 회복적 정의의 대표적인 유형인 회의나 중재, 지역사회협의회를 구축하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회복적 정의 제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결코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회복적 정의 제도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또래조정 혹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마오리(Maori) 족의 공동 책임의식과 같은 철학적 근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순히 비난 및 피해회복의 과정에 집중하거나 혹은 행정상 공동 참여의 모양새만을 갖추고 있지, 프로그램 참여자 각자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재통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위원회의 가장 막강한 권한 중 하나는 문제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 전혀 회복적인 제도라 할 수 없다.

회복적 정의는 발생 기원으로 보나 이론적으로 보나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청소년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피해를 회복하게 한 후, 이들을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수용 없이 단순히 형사사법제도의 대체재로 혹은 학교나 경찰이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 제도를 정책적으로만 도입하게 된다면 반드시 부작용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와 유사한 제도의 내용 및 그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회복적 정의의 철학적 목적과는 매우 상이함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회복적 정의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향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토착화

정책의 생명성 혹은 지속가능성은 그 정책이 얼마나 긍정적 실효성을 갖게 되느냐이며, 실효성은 정책이 현실적 토양과 이론적 방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앞의 제4장 외국사례에서 소개한 해외의 회복적 정의 제도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각국의 회복적 정의 제도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동일하거나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 및 사회의 실태(context)를 잘 반영하여 독특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영미법계의 중주국으로 판례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회복적 사법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검사가 중심이 되어 회복적 정의 제도를 실행, 중단, 변환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지역사회 혹은 형사사법 기관 협의회에 의해 진행된다. 이처럼, 동일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특수성과 법감정, 청소년에 대한 시각,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회복적 정의는 다르게 구축되었다. 한편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도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회복적 사법 제도를 그들의 법체계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살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국내에 회복적 정의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의 주체,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이 갖는 독특한 특징과 기능, 역할,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대응 방식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주체가 주도권을 갖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연구, 한 집단의 정책 추진에 의존한 단기적 법 및 제도 수립 보다는 비록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회복적 정의에 관한 학제간 연구 활성화

앞의 토착화 방안에서 제시한 것과 연계하여, 국내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 종합적 연구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회복적 정의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범죄학, 형사사법학, 법학(형법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복적 정의 제도 구현을 위한 학문적 통합이나 통섭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청소년 문제와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많은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들을 종합한 이후 회복적 정의 제도가 구축되고 수정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또래 조정에 대한 연구가 몇몇 학문분야에서는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양한 학문적 패러다임은 각기 다른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고 이러한 종합적 사고와 체제 구축은 국내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문화적, 법적 생태계를 확립해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경래(2009).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 연구**, 17(1).
- 강지명(2011).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강지명(2012).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4(3).
- 강지명(2014). 학교폭력 대응정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6(3).
- 경찰청(2012). **경찰통계연보**. 서울: 경찰청.
- 경찰청(2014). 보도자료(6월); 117신고센터 개소 2년, 학교폭력 신고 22%감소. 서울: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법무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
- 교육부(201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서울: 교육부.
- 권이중(1996). 한국청소년폭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폭력예방재단세미나 자료집: 청소년 폭력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한일 국제 세미나**.
- 김성돈(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I), **형사사법체제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용세(2010). **제4판 피해자학**. 서울: 형설출판사.
- 김용우(2007). **소년법개론**. 서울: 상린.
- 김은경, 이호중(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 연구(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2008).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 II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2006). 학교폭력의 정의 및 현상. 문용린 외 (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 김혜경(2013).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형사정책연구**, 24(4).
- 다음카페, 만사소년. <http://cafe.daum.net/masaboy>(2014.10.23)
- 도중진, 원혜욱(2006).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주디 H. 물렛(2011). 이재영, 정용진 역.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서울: Korea Anabaptist Press.
- 머니투데이(2012). 광주 자살 중학생 가해 학생 전원 사법처리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0515518234150&outlink=1>(2014년8월10일).
- 박광민, 강지명(2007).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현. **피해자학연구**, 15(2).
- 박미숙(2007). 법무부 소년법개정안 토론문. **법무부 소년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주최): 소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 박완성, 차명호, 정구철(2014).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 개발-집단 따돌림 대응 프로그램 개발**. 서울: 교육부, 충청남도 교육청, 삼육대학교 웰빙건강심리연구소.
- 박찬걸(2010).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15.
- 서정기(2011).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계민, 김지경, 김지연, 이종원(2013). **또래조정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지경, 맹영임, 조혜영(2012). **2012 또래조정 시범학교 운영사업 결과 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전라남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2011). 자살 중학생 母 "용서하려고 매일 기도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2/27/0200000000AKR20111227181000053.HTML?did=1179m>(2014년8월1일).
- 연합뉴스(2012). 대전서 같은 반 여고생 잇단 투신, 학교 '폐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

- d=0005470554(2014년 8월 10일).
- 예산교육지원청(2012). **학교폭력 처리 절차 책임교사 연수 자료**.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
http://www.stopbullying.or.kr/mest_data/279333(2014.11.13)
- 오경식(2009).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2.
- 오영근(2008).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 원혜옥(2007). 소년법 개정안 개요. **법무부 소년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주최): 소년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
- 이백철(2002). 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벌체제로서의 이론적 정당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3.
- 이승현(2010).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현 외 5인(2013). **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서울: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 이승현(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2).
- 이유진(2012). 반인권적 '일진경보'로 학교폭력 잡겠다고?. **한겨레21**, 898.
- 이진국(2006).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2006 국제학술회의 -21세기의 형벌과 양형 -자료집**.
- 이진국(20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1(1).
- 이진국(2009).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학 연구**, 17(2).
- 이춘화(2010).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1(1).
- 이호중(2004). 회복적 사법이념과 형사제재체계의 재편-트로이목마의 투입? 값싼 형벌신상품의 개발?. **형사법연구**, 22 특집호.
- 이호중(2007).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19(3).
- 정현미(201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0.
- 제주교육청(20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찬회 교재. **제주교육청(주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연찬회**.

- 조상제(2013). 학교폭력과 회복적 사법. **안암법학**, 41.
- 조성호(2000).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 천중호(2013).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서울: 우리학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 안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홈페이지.
<http://svmedi.net/sub/introduction2.php>(2014.10.30)
- 한인달(2008). 한국의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10(2).
- YTN(2011). 한나라당,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현장조사.
http://www.ytn.co.kr/_ln/0101_201112301157247581(2014년8월10일)
- Ashley, Jessica., & Kimberly Burke. (2006). Implementing restorative justice: A guide for schools. Illinoi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uthority, IL.
- Audit Commission(1996). *Misspent Youth*. London: Audit Commission.
- Bazemore, G. & Umbreit, M(2001). A Comparison of Four Restorative Conferencing Models, *Juvenile Justice Bulletin*(U.S.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 Delinquency Prevention).
- Bazemore,G.(2001). Young People, Trouble and Crime:Restorative Justice as a Normative Theory of Informal Social Control and Social Support, *Youth and Society(December)*, 33(2).
- Berastain, Pierre R.(2013). Restorative Justice Bill Introduced in Massachusetts. Huff Post Crime. <http://www.restorativejustice.org/RJOB>.
- Braithwaite, John,(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Carolyn Hole & Richard Young(2002). *Restorative Justice, - Aessing the prospects and pitfalls-*, *The Hand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xford university press.
- Clute, Sylvia.(2011). Creating statutes to deliver restorative justice. Genuine Justice. <http://www.restorativejustice.org/RJOB>.
- Daly, Kathleen. & Hayes, Hennessey.(2001). *Restorative Justice and Conferencing*

- in Australia*.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Department of Communities.(2010). *Youth Justice Conferencing Queensland: Restorative Justice in Practice*. Queensland Government.
- Goody(2005). *Victims and Victimolog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Pearson Longman, 200.
- Hagell, A., & Newburn, T.(1994). *Persistent Young Offenders*.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Home Office.(1997). *No More Excuses: A new approach to tackling youth crime in England and Wales*. London: Home Office.
- Lancey, Lauren Margaret Iona.(2012). *Youth Justice in England and Wales: Exploring young offenders' perceptions of restorative and procedural justice in the referral order process*. Department of Social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 M. Wernham(2005). *An Outside Chance, Street Children and Juvenile Justice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Consortium for Street Children).
- Marshall(1996). *Criminal Mediation in Great Britain 1980–1996*, 4(4),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 Maxwell, Gabrielle., & Morris, Allison.(2006). *Youth justice in New Zealand: Restorative justice in prac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6(2).
- McCold, P., & Wachtel, T. (2003). *In pursuit of paradigm: A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Paper presented at the XIII World Congress of Criminology, Rio de Janeiro, Brazil.
- Ministry of Justice.(2011). *Restorative Justice Facilitator Induction Training: Module 4*. The New Zeal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Restorative Justice.
- Morris, Allison., & Maxwell, Gabrielle.(1998). *Restorative justice in New Zealand: Family group conferences as a case study*. *Western Criminology Review*, 1(1).
- O'Driscoll, Stephen.(2008). *Youth Justice in New Zealand: A Restorative Justice Approach to Reduce Youth Offending*. *Resource Material Series, No 75*.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8). Guide for Implementing 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Model.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 OJJDP, U.S. Department of Justice(1999). Office of Justice Programs;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program summary.
- Paulin, Judy., Kingi, Venezia., & Lash, Barb. (2005). The Wanganui Community–Managed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An Evaluation. Ministry of Justice.
- Pavelka, Sandra.(2008).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Legislation and Policy: A National 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Restorative Justice*, 4(2).
- Pitts, J.(2003). Positive Youth Development, Restorative Justice, and the Crisis of Abandoned Youth. In G. Bazemore & M. Schiff. (eds.).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Repairing Harm and Transforming Communities*. Cincinnati: Anderson.
- Pranis, K.(1998). *Guide for Implementing 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Model*.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 Rosenberg, Jennifer., & Sara Mark.(2011). Balanced Justice: Cost–Benefit Analysi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Policy Brief, 11*. Institute for Policy Integrity,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Rutter, M., & Giller, H.(1983). *Juvenile Delinquency: Trends and Perspectiv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Strang, Heather.(2001).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Australia: A Report to the Criminology Research Council*.
- Taylor, Robert W., Eric J. Fritsch, & Tory J. Caeti,(2007). *Juvenile Justice: Policies, Programs and Practices*. (2nd, ed). New York, NY: McGraw–Hill.
- Zehr, H.(1990).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Scottdale, PA: Herald press.
- Zehr, H.(2002).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 Kerner, Hans-Jürgen/Eikens, Anke/Hartmann, Arthur(2011).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richt für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erlin.
- Kerner, Hans-Jürgen/Hartmann, Arthur(2008).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richt für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erlin.
- Meier, Bernd-Dieter/ Rössner, Dieter/ Schöch, Heinz(2007). Jugendstrafrecht. Verlag C.H.Beck, 2.Auflage.
- Walgrave, L.(2000). Extending the Victim Perspective Towards a Systemic Restorative Justice Alternative. in Adam Crawford & Jo Goodey (eds) *Integrating a Victim Perspective within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Debates*.
- Walgrave, L.(2004). Restoration in Youth Justice., in , *Youth Crime and Youth Justice*. ed.by M.Tonry/Anthony N.Doob.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muralarts.org>

www.bruecke-muenchen.de

www.cps.gov.uk

www.restorativejustice.org/RJOB

www.restorativesolutions.org.uk

www.schillerschule-singen.de

www.toa-bremen.de



부 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1차 조사)
2. 전문가 의견조사지(2차 조사)
3. 심층면담 조사지
4. 회복적 정의 관련 프로그램
5. 독일 브뤼케 뮌헨의 가해자-피해자 조정일지

부 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1차 조사)

ID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및 회복적 정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조사관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 조사담당자 : 이상희 연구원 (02)-6913-8920
---------	--

부
록

※ 다음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칸을 늘려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 회복적 정의 관련 제도에 관한 의견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약칭)에 의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담당기구로서의 적정성, 분쟁조정 성격이 조정인지 화해인지 여부, 적절한 분쟁조정 시기, 학교폭력 매뉴얼 상의 분쟁조정 신청서 및 합의서 예시문의 적정성 등

1-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2. 시범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래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3년차 시범운영 중인 이 제도의 확대 및 법제화, 또래상담과의 유사성 등

2-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이 제도들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결과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4.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4-1.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형사조정 대상범죄를 학교폭력예방법 수준으로 약화해서 운영할 필요성 등

4-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5.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5-1.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보호처분 결정 뿐 아니라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에도 고려할 필요성 등

5-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6. 이상에서 언급한 회복적 정의 관련 제도 이외에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제도나 특히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복적 예방교육 등은 파악이 쉽지 않사오니 모두 적어주시시오)

7.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학교폭력 처리 및 대응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시시오.

7-1. 학교내 대응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

☞ 예 : 학교의 폐쇄적 구조, 구체적 실천의 어려움, 보상합의 요청 등 관행적 처리 등

7-2. 사법절차에서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

☞ 예 : 기존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관계정립, 학교에서의 분쟁조정 결과와 형사조정 및 화해권고 등의 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등

II.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

1.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현

행 관련제도의 보완을 포함하여)?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경우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차원의 처리, 사법처우 등 어느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관련제도 외에 회복적 정의모델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결합된 제도, 경찰의 훈방과 결합된 제도, 검찰의 기소유예와 결합된 제도, 교도소의 사회복귀 처우와 결합된 제도 등

3. 다음 회복적 정의 실무유형 중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형사사법과의 관계 및 프로그램 유형 두가지 모두 고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 ① 순수론 : 모든 이해당사자가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절차 중심
(응보적 정의를 통한 문제해결방법인 기존 형사사법과 대립)
- ② 확장론 : 순수론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결과가 회복적이면 모두 포함
(기존 형사사법 절차라도 결과가 회복적이면 회복적 정의로 분류)

○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분류

- ① 피해자-가해자 조정 : 포대조정, 형사조정 등(공동체 참여도 낮음)
- ② 보상위원회 : 보상을 통한 피해회복 중심
- ③ 양형씨클 : 사법절차에서 형사제재에 대한 대안
- ④ 가족집단협의 : 가족구성원의 협의에 의한 결정

4.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가 사법적 개념이라 학교내 처리절차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내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어가 있다면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회복적 실천, 회복적 절차, 회복적 갈등해결, 평화교육 등

5.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가해학생의 선도에 중심을 둔 개념정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인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분쟁조정이라는 세가지 축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학교폭력 개념정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념정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6. 다음에서는 선진 외국의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가 있다면 골라주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6-1. 선진 외국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회복적 정의에 관한 교직원 훈련(호주), 비영리조직에 의한 학교에서의 회복적 문제해결(영국), 상담교사가 학교에서의 가해자 피해자 조정 담당(독일), 학교폭력 전담 조정사무소 및 조정전문가 상주(독일)

6-2. 호주, 뉴질랜드의 사법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사법절차에서 범죄청소년이 가해사실을 인정할 경우 회복적 사법절차로 전환(호주),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회복적 정의 절차인 가족집단협의 개최(뉴질랜드), 판사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처벌 및 피해회복 등의 결과를 판결에 고려하도록 규정(뉴질랜드),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보상 및 회복적 정의를 통한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뉴질랜드), 가해청소년도 가정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재통합적 대응(뉴질랜드)

6-3. 미국, 영국의 사법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검찰 및 법원에 회복적 정의 위원회 및 주민센터 설치(미국), 가해자의 지역사회 피해회복을 위한 봉사활동(미국), 당사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 제도-형사사법기관에서는 전환결과 가이드라인만 제공(미국), 경미범죄 청소년에 대해서는 회복적 정의 절차로 전환하고 가해자, 피해자,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패널 구성(미국), 검사나 판사 주도의 전환명령을 통한 회복적 정의 절차 진행(영국)

6-4. 독일의 사법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유예(독일),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조정 권장을 판단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결정사항을 소년법원에 보고(독일), 검찰이나 법원은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화해조정기관에 조정 의뢰(독일), 미국에서 들여온 제도를 독일의 법체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실무에 적용(독일), 소년법원법상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피해자 조정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규정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지시사항으로 인정(독일)

Ⅲ. 회복적 정의모델 지원체계 및 종합적인 의견

1. 회복적 정의모델의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1-1. 시설(중재센터 설치 등) :
- 1-2. 인력(중재전문가 양성 등) :
- 1-3. 예산 확보 :
- 1-4.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정 :
- 1-5. 기타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 :

2.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2-1.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른 대응과 형법 및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대응의 이원적 구조 : (헌법적 의미의 이중처벌은 아니지만 징계와 소년사건 처분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가해학생 개인적으로는 이중처벌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문제 포함)

2-2. 학교현장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 :

3.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4.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 도입방안 등에 대해 건의 및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만)	
소속 및 직위	
근무경력(년)	

♡ 감사합니다 ♡

부 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2차 조사)

ID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및 회복적 정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지에 응답해주신 의견을 취합분석하여 2차 조사에서는 선택형 질문지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조사는 정책추진을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부
록

조사관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 조사담당자 : 이상희 연구원 (02)-6913-8920
---------	--

1. 현행 회복적 정의 관련 제도에 관한 의견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약칭)에 의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표1에 답해주시시오.
- ② 아니오 → 표2에 답해주시시오.
- ③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이 경우에도 표2에 답해주시시오.

※ 다음 표1 또는 표2에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1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에 기여	
2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방식으로 진행	
3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회복적	
4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규정된 합의조정을 통해 관계회복 가능	
5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자율적 합의 가능	
6	가해학생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따른 관계개선 역할	

표 2 분쟁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손해배상이 주된 합의조정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적	
2	실제 관계회복이 되는 사례가 매우 적음	
3	갈등해결 보다는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단계로 인식	
4	분쟁조정자로서 자치위원의 비전문성	
5	합의를 통해 처분이 감경되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관계회복 어려움	
6	강제전학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7	당사자 관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문제의 경중에 따른 조치 중심	
8	취지는 회복적이지만 실제로는 회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1-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3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분쟁조정 시점은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분쟁조정이 개시되면 조치결정 보류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2	'갈등중재센터' 와 같은 분쟁조정 전담기구가 필요. 분쟁조정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제3의 기관이 담당하거나 시도교육청 내 전문기구의 형태로 운영	
3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교사 연수제도 등 회복적 정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4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가피해 학생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배치	
5	학부모에게 회복적 절차에 관해 안내하고, 경미한 사안은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행한 후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서 인준하는 학교 내 회복적 시스템 구축	
6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중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중심의 분쟁조정 개시와 중지	
7	분쟁조정보다는 화해나 갈등조정, 관계회복이라는 회복적용어로 개정	
8	현재 1개월인 분쟁조정 기간을 유연하게 개정	

1-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직간접적 사례 경험자만 응답).

표 4 회복적 분쟁조정에 성공한 요인

	개선방안	우선순위
1	분쟁조정 전문가나 갈등중재 전문가 등 전문적인 제3자의 개입	
2	가해학생의 진실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사과 등 가해학생의 태도	
3	피해자의 심리적인 회복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경우	
4	학부모가 관계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	
5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피해자 중심 대처	
6	학교의 중립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결정	
7	서로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	
8	학생·부모·교사·지역사회 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표 5 회복적 분쟁조정에 실패한 요인

요인		우선순위
1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견해차	
2	분쟁조정과 조치결정이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	
3	관계회복보다 합리적인 사건처리 치중 등 학교의 대처가 부적절한 경우	
4	사실규명에 실패한 경우	
5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시범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래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표6에 답해주십시오.
- ② 아니오 → 표7에 답해주십시오.
- ③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이 경우에도 표7에 답해주십시오.

※ 다음 표6 또는 표7에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6 또래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또래 친구의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회복에 기여	
2	학생 상호간 발달단계에 맞는 수준에서 공감과 이해를 통해 문제해결 모색	
3	갈등의 처리가 아니라 갈등의 이해 과정	
4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갈등조정	
5	또래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해결 노력	
6	학생들은 어른보다 정직하기 때문에 사실규명을 통한 회복 용이	
7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회복적 조정 가능	
8	또래의 방식으로 또래의 눈높이에서 문제해결	
9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정을 통해 관계악화 방지	

표 7 또래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또래조정으로 화해가 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음	
2	학생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정책적 지원으로 확산됨	
3	회복적으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4	학생과 지도교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많음	

2-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8 또래조정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또래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안은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2	또래조정을 또래상담, 자치법정과 연계하여 유사한 자치활동을 통합해서 운영	
3	3년간 시범운영 하는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제도의 확대 및 법제화	
4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연합세미나, 매뉴얼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조정자 교육 훈련 강화 등 또래조정자의 역량강화	
5	모범생 위주의 선발 지양 및 또래조정자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지원	
6	또래조정 제도에 대한 학교 전체의 이해 증진	

2-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직간접적 사례 경험자만 응답).

표 9 회복적 또래조정에 성공한 요인

요인		우선순위
1	또래조정자의 역량	
2	지도교사의 지도력과 전문성	
3	또래조정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4	또래조정 참여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화	
5	피해학생 중심의 결과도출 유도	

표 10 회복적 또래조정에 실패한 요인

요인		우선순위
1	조정이 이루어져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	
2	조정결과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3	조정자로부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경우	
4	책임교사가 없는 경우	
5	조정자가 일방적인 훈계를 한 경우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중에 서면사과, 학교 및 사회 봉사, 특별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표11에 답해주시시오.
- ② 아니오 → 표12에 답해주시시오.
- ③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이 경우에도 표12에 답해주시시오.

※ 다음 표11 또는 표12에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11 서면사과봉사교육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가해학생에 대한 자발적 책임 부여	
2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기회 제공을 통해 반성과 개선의지 함양	
3	피해학생의 수용을 고려	
4	사회봉사와 교육을 통해 사회와의 관계회복	

표 12 서면사과봉사교육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이 제도의 취지는 회복적 정의보다는 응보적 정의를 갖고 있음	
2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이 없음	
3	사안 발생 후 2주일 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회복적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결정이 이루어짐	
4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에게 회복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복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	

3-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13 서면사과봉사교육 조치의 개선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강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자발적 동기 부여	
2	봉사 및 교육 내용을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	
3	봉사 및 교육 시행기관의 전문성 제고	
4	담임교사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만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 지원	
5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 조치결정의 회복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 선결	

3-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직간접적 사례 경험자만 응답).

표 14 **회복적 서면사과봉사교육에 성공한 요인**

요인		우선순위
1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2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	
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대한 신뢰와 사후지도	
4	가피해학생 부모가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5	서면사과의 진정성	

표 15 **회복적 서면사과봉사교육에 실패한 요인**

요인		우선순위
1	봉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	
2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이를 지도할 전문가가 많지 않음	
3	봉사나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효과 반감	

4.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4-1.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표16에 답해주십시오.
- ② 아니오 → 표17에 답해주십시오.
- ③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이 경우에도 표17에 답해주십시오.

※ 다음 표16 또는 표17에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16 **형사조정이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제3자가 가피해자의 요구를 조정하여 충족시킴	
2	형사처벌 대신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함	
3	중립적인 조정자가 절차에 참여	
4	조정결과가 사건처리에 반영	
5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6	당사자의 입장표명 기회를 통해 치유효과	
7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	
8	피해자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하거나 형사조정을 원한 경우	

표 17 형사조정이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물질적 보상을 통한 합의에 그침	
2	형사사건 절차 간소화일 뿐임	
3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4	운영방식에 따라 회복적일 수 있지만 현재는 물질적 보상에 치우침	

4.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18 형사조정이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가해자가 합의이행을 하지않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별도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에 대한 절차안내 등 제도보완	
2	형사조정은 검찰단계의 제도이므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경찰단계에 도입하여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입건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3	조정과 화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전문가 개입	
4	조정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전문화	
5	회복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간 연장	
6	당사자 동의절차 등 형사조정 운영체계 개선	
7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조정 가능하도록 적용 확대	
8	물질적 보상 뿐 아니라 진정한 회복 필요	

4-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직간접적 사례 경험자만 응답).

표 19 회복적 형사조정에 성공한 요인

요인		우선순위
1	가해자가 진정성이 있는 반성을 한 경우	
2	합의이행 시 형벌의 감경효과가 큰 경우	
3	당사자간 관계유지 필요성이 설득된 경우	

표 20 회복적 형사조정 실패한 요인

요인		우선순위
1	이미 감정을 많이 다친 상태	
2	합의이행을 해도 형벌의 감경효과가 적은 경우	
3	사안에 대한 이견	
4	금전적 보상에만 그친 경우	
5	조정결과에 대한 검사의 고려는 임의규정이라는 점	

5.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5-1. 이 제도는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표21에 답해주십시오.
- ② 아니오 → 표22에 답해주십시오.
- ③ 회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이 경우에도 표22에 답해주십시오.

※ 다음 표21 또는 표22에 회복적이거나 회복적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21 화해권고가 회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제도 도입 취지가 회복적 정의	
2	운영 매뉴얼과 방식이 형식적인 면에서 회복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3	갈등해결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관계회복 조력을 하고 있음	
4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에 고려	
5	가피해 당사자의 대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함으로써 성행개선	
6	피해자가 안전하게 사과받을 수 있는 점	

표 22 화해권고가 회복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법원단계까지 간 사건은 심각한 범죄수준이라 피해학생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회복에 어려움이 있음	
2	화해권고 매뉴얼이나 화해권고위원회에 대한 훈련 등이 회복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3	사실상 피해자에게 화해가 강요되는 상황임	
4	단순히 손해배상이 기준이 된다면 회복적이지 않음	
5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경우에 회복적이지 않음	
6	회복적 정의모델로써 도입된 제도이긴 하지만 실제 운영은 법원이나 소년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소극적으로 운영	

5-2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23 **화해권고 제도의 개선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가정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가해학생이 화해권고에 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구비해줘야 함	
2	경찰단계에서도 화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화해 권고를 확대하고, 소년부 판사의 권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화해 절차 진행 등 화해권고 확대 실시	
3	조정 역량을 갖춘 위원 선정, 전문 조정인력 양성, 조정 전문단체에 위탁 등 화해 권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4	화해권고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 및 안내를 통해 가피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 등 절차적인 부분의 개선	

5-3. 이 제도를 통해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직간접적 사례 경험자만 응답).

표 24 **회복적 화해에 성공한 요인**

요인		우선순위
1	화해권고위원의 적극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경우 등 화해권고위원의 역량	
2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행	
3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입장인 경우	
4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한 경우	
5	적절한 피해보상	
6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감	
7	사안이 경미한 경우	

표 25 **회복적 화해에 실패한 요인**

요인		우선순위
1	금전적인 배상액에 대한 의견차이	
2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사안처리 절차를 거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경우	
3	회복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화해위원의 실수	
4	가해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화해권고 불응	

6.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현행 학교폭력 처리 및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6-1. 학교내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26 학교내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학부모위원의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	
2	교육청 산하에 전문 분쟁기구를 두고 민간단체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분쟁 조정 절차 진행	
3	교육지원청에 중재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센터를 설치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들 중재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추인하여 '처분유예' 또는 '불처분' 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4	가해학생에 대한 대안학교 위탁교육 등의 조치를 신설하여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 다양화	
5	가해학생 조치 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의무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	
6	모든 사안에 대해 무조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방법을 개정하여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에 따라 대응	
7	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재학중 중간삭제 기회부여	
8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분쟁해결을 하도록 법적 근거 규정	
9	학교폭력을 교사의 업무에서 배제하여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진행자가 학교폭력을 중립적으로 다루는 구조 마련	
10	교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적게 발생했는가 아니라 학교폭력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가를 평가지표로 삼아야 함	
11	가해학생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보다 가정에 대한 개입이 더욱 중요	
12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예방교육과 사후관리	

6-2. 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27 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사법절차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2	학교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조정에 치중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사법절차를 적용하도록 이원화	
3	형사조정은 검찰단계, 화해권고는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사법절차가 진행될수록 갈등이 깊어지므로 가장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절차 진행	
4	화해권고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화해권고보다는 중립적인 '분쟁조정' 으로 용어 일원화	
5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복적 사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	
6	보호사건에서 부모의 문제해결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직장에서도 시간배려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7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이원화로 인해 회복적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독립된 소년법원을 설치해 소년사건과 형사사건 통합 운영	
8	형사처분 결과를 민사사건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하여 판단해야 함	

II.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

1.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관련제도의 보완을 포함하여)

① 예 → 표28에 답해주십시오.

② 아니오

※ 다음 표28에 도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28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

	이유	우선순위
1	피해자의 관점에서 응보적 정의는 학교폭력을 억제할 뿐 피해학생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자발적인 사과 필요	
2	가해자의 관점에서 처벌위주 대책은 문제를 일시적으로만 억압할 수 있을 뿐 재발방지 효과가 낮음	
3	공동체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은 가정과 사회 문제가 학교 요인과 결합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체적 접근 필요	
4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균형적 접근 필요	

2.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도입이 필요한 단계부터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29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단계

도입단계		우선순위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단계	
2	학교차원의 처리 단계	
3	사법절차 단계	
4	교정처우 및 사후관리 단계	

3. 다음 회복적 정의 실무유형 중 한국형 학교폭력 해결모델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분류 각각에 대해 1개씩만 선택하여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1개 선택).

표 30 형사사법과의 관계에 따른 해결모델

해결모델		택1
1	순수론	
2	확장론	

표 31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해결모델

해결모델		택1
1	피해자-가해자 조정	
2	보상위원회	
3	양형씨클	
4	가족집단협의	
5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	
6	상담, 코칭, 중재, 조정, 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4.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가 사법적 개념이라 학교내 처리절차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내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어를 3개만 선택하여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3개 선택).

표 32 회복적 정의의 대체용어

대체용어		택3
1	‘회복적 정의’ 를 그대로 사용	
2	회복적 갈등해결	

3	회복적 실천	
4	회복적 훈육	
5	회복적생활교육	
6	회복적 절차	
7	관계회복 절차	
8	회복적 활동	
9	회복적 서클	
10	갈등회복교육	
11	교우관계회복	
12	평화적 회복절차	
13	갈등조정	
14	평화교육	
15	화해	

5. 학교폭력예방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33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개선방안	우선순위
1	학교폭력의 정의에 덧붙여 가해학생, 피해학생, 주변학생에 대한 개념을 하위항목으로 정의	
2	힘의 불균형을 학교폭력으로 정의	
3	피해학생 치유를 통한 가해행위로의 전이예방, 분쟁조정을 통한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균형있는 정의	
4	학교폭력의 정의에 회복적 과정을 명시하고, 당사자 분쟁조정이라는 개념포함	
5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폭력적이므로 '학교평화교육법' 과 같은 긍정적 용어로 바꾸어야 함	
6	'학생을 대상으로' 를 '학생간' 으로 재개정	
7	학교폭력의 범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고, 지속성과 의도성에 대한 부분 반영	
8	교육적으로 다룰 갈등과 사법적으로 다룰 폭력 구분	
9	현행 학교폭력 정의는 가해학생의 선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중립적인 개념임	
10	오히려 피해자 중심의 정의임	

6. 다음에서는 선진 외국의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34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 도입 필요성

관련제도		우선순위
1	회복적 정의에 관한 교직원 훈련(호주)	
2	사법절차에서 범죄청소년이 가해사실을 인정할 경우 회복적 사법절차로 전환(호주)	
3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회복적 정의 절차인 가족집단협의 개최(뉴질랜드)	
4	판사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처벌 및 피해회복 등의 결과를 판결에 고려하도록 규정(뉴질랜드)	
5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보상 및 회복적 정의를 통한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뉴질랜드)	
6	가해청소년도 가정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재통합적 대응(뉴질랜드)	
7	교정시설 출소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뉴질랜드)	

표 35 미국, 영국의 제도 도입 필요성

관련제도		우선순위
1	당사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 제도-형사사법기관에서는 전환결과와 가이드라인만 제공(미국)	
2	경미범죄 청소년에 대해서는 회복적 정의 절차로 전환하고 가해자, 피해자,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패널 구성(미국)	
3	비영리조직에 의한 학교에서의 회복적 문제해결(영국)	
4	검사나 판사 주도의 전환명령을 통한 회복적 정의 절차 진행(영국)	

표 36 독일의 제도 도입 필요성

관련제도		우선순위
1	상담교사가 학교에서의 가해자 피해자 조정 담당(독일)	
2	학교폭력 전담 조정사무소 및 조정전문가 상주(독일)	
3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 조정 권장을 판단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결정사항을 소년법원에 보고(독일)	
4	검찰이나 법원은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화해조정기관에 조정 의뢰(독일)	
5	소년법원법상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피해자 조정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규정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지시사항으로 인정(독일)	

Ⅲ. 회복적 정의모델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

1. 회복적 정의모델의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시설 구축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37 시설 구축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중재센터 설립	
2	청소년상담센터에 중재센터 설치	
3	회복적 커뮤니티센터의 설립	
4	위센터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	
5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공동예산으로 설립	
6	지자체와 민간단체 협업(MOU)을 통해 설립	

1-2. 인력 확충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38 인력 확충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갈등해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 및 상담 전문가 양성하여 인력풀 구성	
2	지역사회 상담, 심리, 교육, 법률 전문가를 중재전문가로 양성하여 화해권고위원으로 활용	
3	회복적 정의 관련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워크숍 및 연구집단 형성	
4	학교 교직원을 중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중재 전문과정 포함	
5	교육지원청별로 30-50개 학교당 1명씩 중재전문가 배치	
6	경찰서에 기존 선도심사위원 중에 중재위원 위촉	
7	학교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8	현행 조정위원 체제를 지양하고 상주인력 배치	

1-3. 예산 확보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39 예산 확보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국고예산을 책정하여 기본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안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학교가 비용 분담	
2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3	인식확산을 위한 민간펀드 조성	
4	학교폭력예방법에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명시적 규정 신설	

1-4.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정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40 통일된 매뉴얼 개발 및 법률 제정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위해서는 매뉴얼 필요하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열린 형태의 매뉴얼 개발	
2	화해권고와 같이 외부위원 위촉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일된 매뉴얼 개발	
3	일원화된 중재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에 조문 신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기관의 협조’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협조와 예산확보	
5	학교폭력예방법 상 ‘분쟁조정’ 용어 변경	
6	경찰단계의 선도조건부 훈방 및 분쟁조정을 통한 입건유예 등 소년법에 조문 신설	
7	경찰단계 분쟁조정을 통한 수사종결권에 관해 형사소송법 조문 신설	

1-5.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41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중요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1	교육부를 중심으로 회복적 정의 전문기관을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	
2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	
3	지역별 회복적 거점지역 형성을 통한 지역역량을 배양하는 시스템	
4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시스템	
5	학교단위로 학칙과 선도위원회규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칙 등에 대한 구성원 합의를 통한 시스템	
6	당사자와 담임교사, 전담기구, 중재센터, 학교전담경찰관, 자치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	
7	화해권고 뿐 아니라 사후프로그램과 대안교육 등의 마련으로 재범방지하는 시스템	

2.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이원적 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른 대응과 형법 및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대응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42 학교절차와 사법절차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개선방안	우선순위
1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에서 고려	
2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이수기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대체	
3	학교내의 갈등은 회복적 개입을 통한 분쟁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사안만 사법체계 적용	
4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회복적 절차로 진행	
5	갈등중재센터에서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 결정	
6	학교절차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법 및 소년법에 의한 대응 필요	
7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 있으므로 이원화 필요	

2-2. 학교현장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43 자치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개선방안	우선순위
1	비슷한 사안에 대해 두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를 통합하고 사안별 대응 매뉴얼 마련해 운영	
2	적용사안이 다르므로 이원적 운영이 바람직	
3	학교폭력은 인권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원적 운영이 필요	
4	이원적 운영은 좋지만 학교별 자치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단위로 운영	
5	별도로 운영하되 학칙위반과 학교폭력이 동시발생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원적으로 대처	

3.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로써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44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나 민간단체의 역할 중요도**

	역할	우선순위
1	가정에서 부모가 회복적 정의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안으로 직장내 부모교육 의무화, 직장에서 학부모 학교출석 보장, 아파트단위 부모연수 등 실시	
2	회복적 정의모델의 전제인 공감의 의사소통 운동을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개	
3	교사의 전근으로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지속성과 안전성이 유지되는 지역사회 역량 구축	
4	민간단체나 지역사회 전문가팀의 학교지원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5	민간단체의 분쟁조정팀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6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제3의 전문기관이 개입하여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보장	

♡ 감사합니다 ♡

부 록 3

심층면담 조사지

ID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면접 조사입니다. 정확한 의견을 개선해주시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연구에만 활용되고, 개인적인 신상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I. 담당교사에 대한 질문

1. 또래조정 담당교사(상담교사)

-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 상담선생님의 역할
- 또래조정이 가피해자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 절차인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 또래조정을 통해 화해가 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점

2. 자치위원회 담당교사

- 담당선생님의 역할
- 자치위원회가 가피해자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 절차인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치위원회를 통해 화해가 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점

II.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질문

1. 가해학생

- 갈등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평소관계)와 구체적인 사건
- 화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가피해자의 관계가 다툼 전과 같이 회복되었나?
- 부모님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또래조정 또는 선생님의 중재가 도움이 되었나?

2. 피해학생

- 갈등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평소관계)와 구체적인 사건
- 화해하게 된 이유
- 가피해자의 관계가 다툼 전과 같이 회복되었나?
- 부모님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또래조정 또는 선생님의 중재가 도움이 되었나?

III.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관계자에 대한 질문

1. 가해학생 및 부모

- 갈등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평소관계)와 구체적인 사건
- 화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화해가 되지 않은 이유는?
- 자치위원회에 대한 생각(이 절차가 화해나 반성에 도움이 되는가?)
- 또래조정이나 선생님의 중재에 대한 생각(이 절차가 있었나? 이 절차가 화해나 반성에

도움이 되는가?)

2. 피해학생 및 부모

- 갈등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평소관계)와 구체적인 사건
- 화해하지 않은 이유
- 자치위원회에 대한 생각(이 절차가 화해나 피해회복, 가해자의 반성 등에 도움이 되는가?)
- 또래조정이나 선생님의 중재에 대한 생각(이 절차가 있었나? 이 절차가 화해나 반성에 도움이 되는가?)

IV. 면접대상자 특성 : 성별, 연령, 사건에서의 위치 등

부 록 4

회복적 정의 관련 프로그램⁵⁶⁾

1.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기관명 (위탁기관)	프로그램 내용
강원지방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폭력평화물결(UN 공인 NGO)과 협력하여 대화로 갈등 해결 - 학교전담경찰관 55명 및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자 양성교육 실시 - 회복적 대화모임(Restorative Circle)은 원형으로 둘러 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두에게 평등한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참여적 갈등해결 접근법 -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갈등 당사자, 교사,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대화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아픔을 가해자가 공감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회복적 제도 • 회복적 서클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7월 교사 20명, 경찰 20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서클 워크숍 진행
남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및 갈등조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회복적 정의’를 도입한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조정센터’를 개소했으며 학교폭력갈등조정위원 양성
금천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바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금천청소년별발두레단’이 청소년의 유해 환경 노출 문제, 목표 의식 없는 청소년의 진로 문제, 가정 불화·학교 폭력 등 현재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금천청소년희망정책토론회. 논의된 내용들은 청소년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 - ‘별바라기(별들이 바라는 기대 가득한 미래 세상 만들기)’는 별(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 정책토론회라는 의미와 별(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56)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회복적 정의 관련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추천받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 S-V zero(학교폭력제로)
 - 상생 프로그램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학부모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교사,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가 함께 갈등해소모임을 구성하고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간의 화해를 중재하여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 서울학교: Wee 스쿨 '경기서울학교' 를 개교, 학교폭력 징후 등 위기학생의 One-Stop 진단·상담·치유 지원에 더욱 매진, 경기서울학교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의 3단계이며, 중학생 대상의 기숙형 대안 학교
 - 어울림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더 온전한 치유를 위한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 장기위탁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들은 경기도학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주중 합숙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학교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됨.
- 자치위 개최 전에 진행하는 화해 프로그램(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 학교의 문제가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기 전 전문 조정자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모임
-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매뉴얼 발간-민주시민교육과(2014.6)
 -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평화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
 -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은 모두 3부로 구성되며, 1부는 회복적생활교육의 정의 및 특징과 역사를 통해 회복적생활교육에 대한 이해 돕기, 2부는 학급에서 회복적생활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할 내용과 실제적인 회복적서클 운영 방법 등 소개, 3부는 학교폭력 등의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전문적인 진행자에 의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회복적대화모임' 을 소개하고 있음.
-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
 - 경기도내 장학사들, 학교장, 인권부장 등 회복적 정의(학교의 경우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말함) 소개 워크숍
- 고양/파주지역
 - 회복적 정의 학부모 모임 진행중
 - 해솔중학교: 회복적 서클 학부모 모임
 - 덕양중학교: 회복적 서클 학부모 모임
 - 고양회복적정의관계지원단 학부모 모임
 - '회복적서클' 모델과 '청소년 평화지킴이' 를 토대로 비폭력평화물결과 혁신학교연합이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지역 세우기' 과제 진행중
- 회복적 서클에 기초한 또래조정 매뉴얼 완성
 - 기존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델(회복적정의 조정자모델로 불리움)에 따른 또래조정모델이 아닌 회복적 서클에 기초한 또래조정 모델
 - 회복적 정의에 따른 생활지도영역뿐만 아니라 수업과 학생자치영역에서도 서클로 하는 다양한 진행방식이 회복적 가치와 운영원리에 따라 시도되고 있음(예: 덕양중, 일산중, 일산동중 등). 회복적 생활교육의 관점에 따른 자치서클, 돌봄서클, 의사결정서클, 공동체구축서클 등

<p>부산광역시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폭력대화 교사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의 일환인 비폭력대화라는 영역에 관심이 높았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2009년부터 공감대화를 공부해왔는데, 그것이 확대돼 부산시교육청의 교과연구회 공모사업에 뽑혀 유·무형의 지원을 받게 됨. • 회복적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원상담봉사자, 상담 및 학생생활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회복적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 - 회복적 갈등조정: 피해/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속된 학교, 학부모, 지역공동체의 일원들이 함께 아픔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간 분쟁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갈등이 공동체(가정, 학교, 지역)를 파괴하는 요소가 아니라, 함께 세우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운영 -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학교와 교육청이 협조체제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응하도록 함. - 회복조정센터에서는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또래조정자와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해 화해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p>대전시교육청 (학교폭력피해자가족 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맑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교육청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위탁운영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국 단위의 심리 예술 치유 기관. - 해맑은 미소처럼 숨겨진 자신을 회복하는 단계를 거쳐 자신만의 미래의 꿈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형 중·단기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 종합지원센터 - 교육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으로 교육기간 별로 1년과정인 장기형(중학생20명)과 2주과정인 단기형(초·중·고 10명)과정이 있고, 단기형 위탁교육과정은 적응력향상 정도와 치유정도에 따라 연장 신청 가능
<p>고양교육지원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정의 훈련을 받은 학부모를 분쟁조정위원으로 활용
<p>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조정지원단 구성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조정지원단은 최근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법적처리만을 강조하여 가피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과의 갈등으로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처벌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고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가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 교육지원청 단위의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하여 화해조정을 요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학교에 찾아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하고 화해와 조정, 합의 등을 이끌어 내는 일을 담당하며 장학사, 교감, 경찰관, 봉사단체회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
<p>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대화모임에서 응급서클 다루기 역량강화연수

<p>평택교육지원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인 회복적 서클을 진행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 이를 통해 학생에게 비폭력 대화를 전파시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기 위함. 비폭력 평화훈련센터의 전문강사가 참여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서클 모형을 갈등상황에 적용시켜 비폭력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 과정을 시연과 체험으로 구성
<p>경기도 평화교육연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교육지도사 과정에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평화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은 주요 프로그램으로 평화교육의 이해, 비폭력대화에 기초한 공감대화, 또래 조정의 이해와 실제, 갈등해결프로그램 등 운영 - 서로가 공감하고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p>부천교육지원청 (대명초등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기 모델학교 프로그램(회복적 학교) - 부천대명초등학교는 2014년 ‘부천 소나기 모델학교(회복적 학교)’ 로 지정. ‘소나기’ 는 “소중한 나와 너를 위한 기막힌 활동” 이라는 뜻임. - ‘소나기 모델학교’ 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있었으며, 평화교육 훈련원 청소년 훈련팀이 5, 6학년 각 학급에 들어가 ‘회복적 정의’ 의 기본개념을 교육. 또한 5, 6학년 41명의 학생들이 또래조정 위원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내용은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 실시

2. 민간단체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좋은교사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가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과 왕따를 포함한 학교 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1년 과정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가 양성과정 운영.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의 마음들을 고집어내는데 주력. 소통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줌. - 교육내용은 회복적 정의(강사 한국평화교육훈련원장 이재영), 비폭력대화(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강사 박숙영), 회복적 서클(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강사 신만식), 청소년 평화지킴이 프로그램(비폭력평화물결 대표 박성용) 등
좋은교사운동, 비폭력평화훈련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서클 진행자 훈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폭력 대화인 회복적 서클 진행 과정을 통해 갈등에 직면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이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교육 실시
한국평화교육훈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정의 입문과정: 총24시간교육훈련, 3일 워크숍 - 회복적 정의 심화과정: 총24시간 교육훈련, 2박3일 워크숍 - 회복적 정의 전문가과정: 총 60시간 교육훈련, 매달 15시간 4회 • 회복적 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생활교육 입문과정: 총 24시간 교육훈련, 3일 워크숍 - 회복적 생활교육 심화과정: 총 24시간 교육훈련, 2박3일 워크숍 • 학교&단체 연수(학교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을 통해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 양성 - 회복적정의/생활교육 소개 강의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회복적 생활교육 패러다임을 기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회복적 정의와 생활교육이 학교와 사회에서 적용된 사례 소개
좋은교사운동, 비폭력평화물결, 광명교육연대, 한국비폭력대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서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클에서는 경찰관, 학부모, 교사, 사춘기 청소년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 한국에서는 한국비폭력대화센터와 비폭력평화물결이 2012년 해외 진행자들을 초대하여 워크숍 개최 - 덕양중학교가 최초로 학교 차원에서 그 모델을 수용을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임. - 교사연수로 학교에 소개, 간단한 프로세스로 회복적 대화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쉽게 배울 수 있음, 간단하지만 사소한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모두 적용가능 - 갈등 당사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대화하고 경험하는 과정의 마을 공동체 회복 시스템
비폭력평화물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클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학급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대화로 풀어가 는 모델, 공동체의 평화적인 토양과 문화를 다지는데 좋은 도구 • 청소년평화지킴이 HIPP 입문/진행자 과정 진행 - 원으로 둘러 앉아 그룹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독특한 배움과 훈련의 평화 감수성 워크숍 • 협력적 갈등해결 워크숍 - 갈등 해결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직접 체득하는 프로그램. 작고 큰 갈등의 현장에서 고민이 많은 시민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공무원, 가까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관련 학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함. •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관계의 단절로 보고,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둠. - 회복적 생활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은 갈등 정도에 따라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준비>,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회복적 대화모임>,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 회복적 생활교육은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아래 영역부터 점차적으로 숙달하여 진행 경험을 쌓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평화훈련기관 여름훈련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 적대감과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외 각국을 돌며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과 각국의 군사경쟁의 결과로 군사훈련기관은 많이 있지만 평화를 가르치고 훈련받는 평화훈련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2011년부터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교육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설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비폭력대화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폭력대화에 기반한 중재훈련 - 비폭력대화(NVC):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개발한 대화훈련 프로그램으로, 학생 그대로의 모습을 공감으로 듣고 관찰하면서 비폭력대화를 통해 학생들과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대화법 • NVC 정기교육 - NVC1: 비폭력대화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18시간 내외의 교육(비폭력대화의 목적과 모델, 비폭력대화의 4요소와 솔직하게 말하기, 공감하기 등) - NVC2: NVC1을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내외의 교육(자기공감,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공감, 내면의 강요를 선택으로 바꾸기, 거절하기와 듣기, NVC 댄스(Dance Floor), 지배체제를 파트너체제로 바꾸기(Power-with와 Power-Over/Under), 감사(듣고 싶었던 감사)) - NVC3: NVC2를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내외의 교육(겁나는 진실 대면하기(Scary Honesty), 코어자칼(Core Jackal), NVC 힐링(Healing), NVC 상담, NVC 상담, 중재 I, 중재 II, 감사)
<p style="text-align: center;">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해대화모임을 위한 조정자 훈련 - 회복적 정의조정자 훈련이란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치유하는 과

한국평화교육훈련원	<p>정. 피해자는 가해 행위로 생긴 상처를 회복하고 가해자는 가해행위의 책임에 대해 대화로 해결책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자는 피해의 회복과 지원, 가해의 책임과 복귀를 통해 공동체와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조정자 지원대상에는 학교와 각급 조직, 법원 화해권고위원 등 회복적 정의조정자로 활동하거나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자라면 모두 가능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는 학교폭력을 회복적 정의에 의해 해결하는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을 2006년부터 시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화커뮤니티 활동(평화교육, 또래조정, 피해가해 대화모임) - 회복적 정의 관심있는 사람, 교사,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단위에서 의뢰하는 사안, 조정
-----------	--

부 록 5

독일의 가해자-피해자 조정일지⁵⁷⁾

1. 사건개요

17세인 라라는 버스정류장에서 16세 학생인 에밀리아를 바닥에 밀치고 넘어진 그녀를 마구 폭행했다. 이 폭행을 통해서 에밀리아는 머리를 다치고(머리피부의 일부가 터져나감) 온몸에 멍이 들게 되었다.

2. 조정의 진행과정

나는 피의자인 라라에게 서면으로 사전면담을 요청했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인 에밀리아에게 우선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태에서 무리하게 면담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면담을 진행 시키지 않더라도, 조서를 살펴봤을 때 여전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보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피해자-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면을 통해 알려주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하게끔 만드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라라는 그녀의 보호관찰인인 뮐러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당시 집중사회교육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환경은 매우 불우했다. 나는 우선 라라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부탁했다. 라라는 당시에 에밀리아가 자신을 향해“창녀”라고 했다고 했다. (어쨌든 이런 말을 라라는 다른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에밀리아를 때린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 다음날 자신은 에밀리아 앞을 지나갔고, 그때 전날의 일에 대하여 사과를 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라라는 전날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것으로 여겼다고 설명해주었다.

57) 이 자료는 제4장 외국사례 중 독일의 우수사례로 소개한 브뤼케 뮌헨(Brücke München)의 가해자-피해자 조정일지이다. 조정 진행과정의 묘사는 조정자 자신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나는 라라를 상담했고, 이에 따른 결과를 조율해 주었다. 상담하면서 보니 라라에게 있어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에밀리아를 때린 행동이 매우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았다.

우리는 두 번째 사전면담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 했다.

이 두 번째 사전면담 단계에서도 피해자인 에밀리아에 대한 가해자-피해자-조정은 실시하지 않았으면 했다. (아직까지는 그녀가 받은 상처를 재확인 시키는 일이 될 것 같아, 두 번째 사전면담에서도 배제시켰다)

그로부터 몇 주후 라라와 함께 두 번째 사전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중에 그녀는 나에게 에밀리아와 함께 상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면 사과를 할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에밀리아에게 왜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했는지 물어 보고 싶다고 했다. 라라는 에밀리아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나를 통해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라라에게 경우에 따라서 (에밀리아측으로부터) 위자료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에밀리아에게 의미 있는 보상을 전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기를 요구했다. 곧 에밀리아에게 줄 선물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선물을 전해줄 부탁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다.

나는 피해자인 에밀리아와 그녀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첫 번째 사전면담에 대해 알리고 사무실로 방문해 줄 것을 통보했다.

에밀리아의 엄마(S여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에밀리아가 첫 번째 사전면담에 올 것이라고 알려왔다. 나는 에밀리아의 엄마에게 전화상으로, 치료비를 원하는지 이에 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에밀리아가 사전면담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었다. (그녀가 그렇게 맞은 일은) 처음이 아니었고 다른 친구들도 함께 그녀를 때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단지 이것을 문제 삼아 고소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라라가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라라의 사과) 전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했다. "창녀"라고 한건 라라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녀는 라라와 함께 내가 있는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했다. 무엇보다 에밀리아는 치료비와 원상회복비용 모두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단지 라라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앞으로 그녀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그냥 자신을 가만히 놔두기만을 바랬다.

라라의 보호관찰인인 밀러여사는 나에게 자신이 라라의 조정대화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왔다. 라라는 자신의 일을 설명하거나 대질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조정대화 중에 (갑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보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나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에밀리아에게도 라라와 똑같이 조정대화에 참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데려오라고 했다. 에밀리아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오기로 결정했다.

조정이 시작되었다. 모든 관계자들이 탁자에 둘러앉았다. 인사와 함께 짧은 대화들이 오고간 후, 나는 몇개의 “행동규칙”을 설명하고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터놓도록 그대로 둔다든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른이 없이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등의)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우리가 다 함께 만날 시간을 정해 주었다. 덧붙여 나는 지금까지(조정 시작 전, 사전면담을 통해 알게 된)의 사안들을 모든 참여자들이 똑같은 배경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요약해주었다.

나는 라라와 에밀리아에게 그들의 당시 경험을 이야기 해 보도록 했다. 이 둘에게는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당시에 느꼈던 느낌들을 이야기 해 주었다. (특히 당시 느꼈던 모욕과 모멸감 등이 언급되었다.)

조정인의 역할과 기량은 다음 안에서 존재한다. 양측 당사자가 서로 마음을 움직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 개개인이 주장하는 다양한 사건 관련이야기를 양측이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되고 일치된 한가지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원활한 결과 도출을 위해 다음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했다.

- 질문 : 특히 범행동기를 묻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나타내기 : 조정인의 입장에서 (사건 당사자 개개인의 사전면담 등에서) 그들이 했던 말을 상대방에게 표현함에 있어 부각 시킬 것과 재고해 볼 것을 인지하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중화 : 예를 든다면, 내가 에밀리아의 뒤에 서서 그녀를 위하여 말하는 것으로, 내가 그녀가 대화 중 사용하는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 추측하기도 하고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표현하고자 하는 명백한 감정적 내용이나 객관적 진실을 재해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점바꾸기 : 내가 모든 참여자들에게 다른이의 입장이 되어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거나 그들의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앉는 자리를 바꿔보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라라는 에밀리아에게 사과를 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자체가 라라에게는 너무 어려워 보였다, 그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녀의 사과를 돕기 위해, 방에는 라라와 에밀리아만을 남긴 채 자리를 비켜줬다. 에밀리아는 라라의 사과를 잘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아는 여전히 라라가 진짜 다시는 갑자기 자신을 때리지 않을 건지를 의심했다. 이와 함께 그녀가 살고 있는 집근처의 상황에(라라와 에밀리아는 한동네에 산다) 대해서 화제가 돌려졌다. 에밀리아가 향후 상황(기존에 라라와 함께 괴롭혔던 아이들의 영향과 제3자를 통한 보복 등)에 대해 아직 불안 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래 문제아들 집단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녀를 위한 대안적인 또래관계를 만드는 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이야기 되어 졌다. 에밀리아의 생각은 원상회복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라라를 위해 소송절차를 중지 하는데도 동의한다고 했다. 나는 차후에 에밀리아의 엄마와 다시 한번 전화통화를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엄마는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라라에게 에밀리아가 그녀를 위해서 얼마나 큰 배려와 아량을 베풀었는지를 강조했다(합의금이나 소송절차 중지에도 동의 했다는 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라라가 에밀리아에게 작은 것이라도 선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15분 후 라라는 에밀리아에게 영화표 2장을 선물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관해서 에밀리아는 아주 좋아했다. 우리는 라라가 조정대화 후에 나에게 영화표를 주고 나는 그것을 라라를 대신해 에밀리아에게 전해주는 걸로 약속했다.

나는 조정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요약했다. 그리고는 대화가 진행됐던 방은 아직 남아 있을 문제들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그대로 내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정에 대한 내 평가를 남기고 참가자들과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라라는 나에게 영화표와 함께 에밀리아 앞으로 쓴 몇 줄의 메모를 보내왔다. 나는 표를 에밀리아에게 전해 주었다. 그리고 에밀리아의 엄마와 다시금 전화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치료비를 요구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 라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다고 했다. 이에 나는 종결서류를 작성했고 검찰 측에 조정카드를 작성해 보냈다.

3. 조정의 평가

조정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뿐 아니라, 성공적인 조정 후에 나의 평가는 만족스러웠다고 본다. 특히 두 소녀에 대한 조정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매우 긴장된 분위기에서 조정이 진행 되었으나 이러한 분위기는 이내 완화되었다. 특히 라라의 경우엔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대화나 대질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처음과 달리 스스로 억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보호관찰인인 밀러 여사는 나에게 조정을 위한 상담이 진행되는 때 마다 그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조정 진행 중에는 피해자인 에밀리아를 위해서는 (가해자인 라라와) 함께 만나는 것은 가급적 자제했다. 그러나 그녀도 대화의 마지막 즈음에는 다소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 문제는 두 소녀가 한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두 사람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충돌로 인해 피해자인 에밀리아가 다시금 겁먹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에밀리아의 경우에는 만약 앞으로 그녀가 라라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거절의 이유를 찾아내어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재판외적인 행위조정을 제공했으면 한다. 그녀는 본 조정을 통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했고 라라를 위해서는 소송절차 중지에 동의 했다.

라라의 경우에는 검찰 측과 상의 하에 본 단체에서의 중재가 조금 더 제공되었으면 한다. 또한 에밀리아에게 단순한 몇 줄의 사과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사과편지를 쓰도록 하였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용돈의 일정량을 기부금으로 내길 바란다. (이러한 생각은 조정 진행 중 참여 했던 친구가 한 이야기이다).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Restorative Justice Model as a Means to Resolve of School Violence

This study looks at the introduction of a restorative justice model designed to help students who are victims of violence at school to recover by inducing students who have assaulted other students to reconsider their actions, giving opportunities for the parties involved to seek and accept apologies, and facilitating the full recovery of victimized students through the engage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suggests how such a model can be introduced to school, the related legal systems, and how schemes can be put in place to support it. As a means of performing research, the Delphi Method was adopted when carrying out surveys to collect the opinions of experts (primary survey with 28 interviewees, secondary survey with 26 interviewees) plus in-depth discussions (with 8 interviewe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conducted by professionals, the current systems which are considered to be restorative measures include, in descending order of its effectiveness, peer reconciliation, counseled reconciliation, criminal reconciliation, and conflict reconciliation. Among the measures taken for students who commit assault, making them offer a written apology, leading them to provide services to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and offering special education programs were identified as the most effective. Of all the institutionalized systems,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was revealed to be the most restorative scheme, so its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In terms of taking judicial measures against juveniles, it was recommended that prerequisite conditions must first improve, such as the home environment of the students who bully other students. Of the school systems, the autonomous committee against school violence has been highlighted by the experts as one that has the most room for improvement.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current system of requiring all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to be reported to the autonomous committee interferes with resolving the cases in a constructive way. As suc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should be in charge of resolving school violence issues, and its rulings should be executed in conjunction with the decision made by the autonomous committee. It is also suggested that community-based reconciliation centers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alize the restorative justice model, professional coordinators to reconcile conflict be trained, and provisions on budgeting be includ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depth interviews found that in those cases where reconciliation was reached, it was mainly accomplished through the counseling teachers who intervened between the student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In cases where teachers got involved for intervention immediately after an incident took place, students tended to come to reconciliation rather quickly without engaging their parents. In addition, the involvement of counseling teachers seemed to be the main factor enabling those students to recover and maintain thei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following the resolution of conflict. On the other hand, the autonomous committee did not seem to fulfill its goals. Those cases submitted to the autonomous committee were found to take a turn for the worse while they went through all the procedures led by the committee, including those cases that had seemed to be approaching reconciliation during the previous sessions. In conclusion, the reconciliation approach taken by the counseling teachers was found to be much more restorative than the one taken by the autonomous committe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First, the goal of introducing a restorative justice model, which is presented as the model to solve school violence, should include, among other things, the requirement of recovering the damage or injury caused by school violence and rehabilitating the broken relationships among those parties involved. To be more specific, the goal of the offending students and their parents is to induce a reflection on and acknowledgement of one's conduct, and to implement remediation plans that get to the root cause.

On the other hand, the goal of victimized students and their parents is to forgive, heal and make an effort to recover self-confidence. The goal of the teachers and other peer students is to live in a peaceful school environment, while the goal of the community is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residents.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ose involved will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ultimate aim of the restorative justice model: resolution of conflict and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Second, as part of th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schools to introduce, education programs with a focus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need to be expanded and offered more frequently, and the basic curriculum for self-governing activities of the students should include a program on how to resolve conflict. In the meantime, teachers should be empowered to conclude those cases in which an amicable resolution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 peer reconciliation process, so that they need not be submitted to the autonomous committee. In addition, a 'peer reconciliation support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a peer reconciliation system can be implemented on a full scale across the country.

Once settlement i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rough conflict reconciliation, the school should be empowered to conclude those cases without having to hand them over to the autonomous committee in charge of preventing and tackling school violence. Guidelines on student records need to be revised, as the current guidelines run counter to the philosophy of restorative justice. In parallel, continued education needs to be provided to the assaulting students so that they can recognize and correct their behavior and wrongdoing. The teachers in charge need to take care of the students who were assaulted by providing counseling services and psychological support on a long-term basis.

Third, the Juvenile Act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to introduce a "restorative admonition system," and the restorative guidance program ought to be offered to the students who committed assault.

When it comes to the involvement of the prosecutor's office, school violence cases should be submitted to the agenda for criminal reconciliation, and 'restorative suspension of indictment' should be the approach. At the level of court procedures, once reconciliation is reached based on the counseled reconciliation approach, the results should be reported to the autonomous committee, and this notice should override any decisions made by such committee. "Judicial-type Group Homes" such as the center for the recovery of juveniles should be built with the aim of helping assaulting students to recover in a way that ensures they do not repeat their behavior in the future. At the stage of correction, those students who have physically attacked others should be put under protective supervision in an attempt to make sure that the outcome of the reconciliation is fully implemented. For those students on the giving end of an assault who are housed in the reformatory or community homes, a restorative program to help them reenter society should be provided.

Fourth, as part of the program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a support system, community-based 'conflict reconciliation centers' need to be established. Then, professional staff in charge of reconciliation should be trained. In addition, provisions to provide and allocate the budget required to take ac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 to Prevent School Violence. Likewise, integrated operational manuals need to be developed. Furthermore, all-out efforts need to be made with the aim of raising awareness of restorative justice in society.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욱·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욱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치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박 상 원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박사과정)

◆ 자 문 진 ◆

김 선 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소장)

김 재 근 (동수원중학교·전문상담교사)

송 창 주 (오클랜드대학교·교수)

오 성 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과장)

이 강 원 (경실련 갈등해결센터·소장)

이 승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지 영 환 (경찰청·경위)

천 중 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판사)

연구보고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02-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16-8 93330